

행정법제분석 98-2

衛星放送法制의 課題와 立法方向

1998. 7

研究者：金昌奎(首席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目次

I. 序論	5
II. 衛星放送의 概念과 特殊性	11
1. 衛星放送의 概念	11
2. 衛星放送의 特殊性	13
(1) 衛星放送의 特性	14
(2) 衛星放送의 問題點	16
III. 主要國家의 衛星放送法制	19
1. 美國	19
(1) 衛星放送事業의 現況	19
(2) 衛星放送政策과 法制	24
2. 日本	29
(1) 衛星放送事業의 現況	29
(2) 衛星放送政策과 法制	32
3. 유럽	37
(1) 衛星放送事業의 現況	37
(2) 衛星放送政策과 法制	39
IV. 衛星放送法制의 現況과 主要爭點의 分析	49
1. 概觀	49
2. 衛星放送政策 및 立法過程	50
(1) 國內衛星放送事業의 推進	50
(2) 先進放送5個年計劃(案)과 國內衛星放送政策	52
(3) 衛星放送法制를 包含한 統合放送法の 立法過程	54
3. 現行 放送關係法の 構造와 改編方向	57
(1) 現行 放送關係法の 構造	57
(2) 放送關係法 構造改編의 必要性 및 基本方向	68

4. 衛星放送法制의 主要爭點과 法的 分析	71
(1) 衛星放送과 放送法の 理念	71
(2) 衛星放送과 放送 및 放送事業者의 概念	74
(3) 衛星放送과 放送事業의 許可節次	88
(4) 衛星放送과 放送事業의 規制(所有·參與制限)	89
(5) 衛星放送과 綜合有線放送의 相互關係	98
(6) 衛星放送과 著作權의 保護	101
V. 結 論 : 衛星放送法制의 立法方向	107
※ 附 錄 : 衛星放送關係法規 및 協約	113

I. 序 論

방송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함으로써 국민에게 정확·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바, 이러한 방송의 여론형성기능은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 따라서 방송은 국가의 권력적 간섭이나 사회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사가 왜곡 또는 조작됨이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회균등하게 반영될 수 있는 다양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¹⁾

그러나 음성과 영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방송매체는 동시적이고 직접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강한 호소력이 있으며, 방송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인쇄매체 보다는 통제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방송영상의 구성, 기법, 시간 배정 또는 내용배정에 따라서는 대중조작이 가능하고, 방송매체에 대한 사회적인 의존성이 증가하는 사회현상으로부터 방송의 영향력은 그 만큼 사회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사회적 영향력). 또한 방송은 무선전파를 사용하여 행해지는데, 사용가능한 주파수대는 유한하고 희소하다(전파주파수희소성). 따라서 방송은 전통적으로 공적 매체로서 규정되고, 그 공공적 성격이 강조되어 다른 언론매체(인쇄매체)에 비하여 많은 규제를 받아 왔다.

이러한 지상파중심의 기존 방송질서는 최근 뉴미디어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일대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즉, 종합유선방송(CATV) 및 위성방송 등과 같은 뉴미디어방송의 등장은 다매체·대채널시대를 초래함으로써 기존의 지상파에 대한 방송규제의 근거가 되었던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및 '전파주파수희소성'의 타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신호라는 공통기반기술의 출현을 통하여 기존의 정보분배에 목적을 두고 있던 방송영역과 정보교환에 목적을 두고 있던 통신영역이 급속히 융합되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방송과 통신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계영역적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비교적 엄격하게 구분되고 있던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들의 사업영역도 붕괴

1) 전정환, 헌법상 방송의 개념 -독일 기본법 제5조제1항 2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25집 제4호(1997/6), 535면.

되고 있다. 2) 이것은 방송의 사회적·문화적 성격만을 강조하던 기존의 정책과 제도를 경제적·산업적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적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의 다원화 및 수용자시대에 부응하여 기존의 지상파위주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개념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더불어 방송시장의 개방화·국제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송·수신되고 있는 위성방송은 방송시장개방의 주역이 되고 있으며, 3) 기존의 지상파방송 등과 기본적으로 기술 및 발사체계를 달리하는 위성방송의 등장은 기존 방송매체가 갖고 있던 방송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이론에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4)

현행 방송관계법의 체계는 통신과 방송을 개념적으로 분리한 다음 기술적인 면(하드부분)은 통신의 관점에서, 내용적인 면(소프트부분)은 방송의 관점에서 규율하고 있다. 예컨대, 방송관계법은 방송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면서 지상파방송을 규율하는 방송법, 종합유선방송(CATV)을 규율하는 종합유선방송법의 이원적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그 밖에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등이 있다. 특히,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을 규율하면서도 다른 주요방송관계법에 대한 총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익성과 공공성의 강조에 따른 방송의 규제논리가 기초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종합유선방송(CATV)도입을 위하여 1991년에 법제화된 종합유선방송법은 방송법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방송법과 달리 방송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여 방송사업자의 개념을 도입하고, 제한적 상업성의 논리를 수용함으로써 방송이 규제의 대상만이 아니라 산업적 자원임을 인식, 방송에 대한 접근방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5)

그러나 현행 방송관계법의 체계는 방송매체별·사업자별로 구분되어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및 경계영역적 서비스의 출현

2) 권기창, 통신과 방송융합에 대한 정책적 대응, 현안분석 제137호(1997/4),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면.

3) 김대호, 방송법과 뉴미디어, 경희법학 제32권 제1호(1997/8), 경희대학교 법과대학·경희법학연구소, 309면.

4) 성낙인, 언론정보법, 나남출판, 1998, 176면.

5) 장호익, 통신과 방송의 융합촉진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연구(1997/12), 법제처, 192면.

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고, 더욱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더불어 방송시장의 개방화·국제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신방송질서에 대처하여 방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등과 같은 뉴미디어방송의 적극적 수용에 따른 방송개념, 방송사업자개념 등의 새로운 정립을 통한 변화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위성방송은 직접위성방송 이외에도 종합유선방송과 연계한 위성케이블네트워크(SCN)⁶⁾서비스의 실현 및 고화질TV(HDTV) 프로그램의 전송 등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영역의 창출, 난시성의 해소, 외국위성방송의 전파월경에 따른 저질의 외래문화침투에 대한 대응, 국경을 초월한 방송을 통한 국가이미지제고 및 방송국제화의 실현 등을 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⁷⁾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방송정책 및 방송법제에 대한 재정립이 시급한 국가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방송정책은 방송의 자유와 책임의 구현, 공공성 및 공익성의 담보를 그 일차적 목표로 삼고 있었으나, 방송의 개방화·국제화가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방송의 자유와 책임,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의 확보라는 정책기조 이외에 정보복지와 문화적 다원주의의 실현, 방송의 산업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다원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여야 할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이에 미국·일본 등의 선진외국의 방송정책은 일반적으로 공영방송의 경우에 언론의 자유와 책임,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의 확보를, 지역방송 및 민영지상파방송의 경우에 정보복지와 문화적 다원주의의 실현을, 뉴미디어방송의 경우에 방송의 산업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중점목표로 삼아 매체간의 역할분담을 추진하는 경향이다. 특히, 본 연구보고서의 논의대상인 위성방송의 도입에 있어서는 어느 국가에서든 신규방송사업자(방송사, 신문사, 대기업 등)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영향력 행사에 따른 다양한 분쟁과 갈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신규채널의 확보를 통한 방송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존 방송사, 신

6) 위성케이블네트워크(SCN : Space Cable Network, Satellite Cable Network)는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CATV)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송망체계를 의미한다. 특히, 위성을 이용하여 종합유선방송(CA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망체계중에서 통신위성(CS : Communication Satellite)을 이용하는 경우를 'Space Cable Network'로, 방송위성(BS : Broadcasting Satellite)을 이용하는 경우를 'Satellite Cable Network'로 구분하기도 한다.

7) 백진숙,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케이블뉴스(1995/2), 97면; 배희경, 위성방송 실시후 케이블TV업계의 동향, 케이블뉴스(1996/8), 42~43면.

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통한 종합정보산업체로 부상하고자 하는 신문사, 우수한 기술력과 자본력에 기초하여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정보고속도로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사회적 확산력과 영향력이 큰 방송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대기업 등의 관심이 투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⁸⁾

이러한 결과,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위성방송법제의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통합방송법(안)⁹⁾이 1995년 이래로 표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의 지연, 위성방송 수신기제조사업의 비활성화, 국내방송통신복합위성인 무궁화위성의 공전 등을 초래함으로써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위성방송사업의 위축, 위성방송정책의 차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세계적 언론재벌인 '키스 루퍼드 머독(Keith Rupert Murdoch)'의 뉴스 코퍼레이션(The News Corporation)사는 150억원을 데이콤¹⁰⁾의 DSM(Dacom Satellite Multimedia System)사에 투자하여 1999년 3월까지 컨소시엄 구성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80개의 가용채널 가운데 우선 약 50개의 채널을 가지고 본격적인 위성방송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¹¹⁾ 또한 DSM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머독의 NC사의 지분참여한도와 관련하여 1차 자본금을 1천억 원으로 책정하고, 데이콤이 그 가운데 30%를, 머독의 NC는 현행 방송법상 외국기업의 지분상한선인 15%를, 기타 국내기업이 55%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²⁾ 이와 관련하여 1998년 2월 데이콤과 위성방송운영문제를

8) 정윤식, 위성방송정책의 방향, 방송 2000년 가을·겨울 통합호(1996/12), 사단법인 21세기방송연구소, 8면.

9) 동 법안의 정식명칭은 '방송법(안)'이지만, 동 법안의 제정과 동시에 종합유선방송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이 지상파방송 뿐만 아니라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합방송법(안)'이라고 부르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도 이하 이렇게 부르기로 한다.

10) 데이콤은 디지털위성방송을 위하여 100% 출자한 DSM사를 설립하고, 미국 Orion사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 신청하여 1998년 10월 동경 139도에 발사예정인 Orion-3위성에 투자하여 중계기 8개를 임차, 80개의 채널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김우룡, 루퍼드 머독과 새로운 방송환경, 여의도클럽 제26차 토론회(1998.2.26), 11면).

11) 유의선, 통합방송법과 방송구조조정, '98 한국방송학회 제1차 쟁점과 토론 <새정부 방송정책 방향 : 종합평가와 제언>,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1998.4.10), 26면.

12) 유의선, 통합방송법과 방송구조조정, '98 한국방송학회 제1차 쟁점과 토론 <새정부 방송정책 방향 : 종합평가와 제언>,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1998.4.10), 26면.

협의를 위하여 내한한 머독은 이미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의 회담에서 데이콤의 사업허가와 관련한 약속을 받기도 하였다.¹³⁾ 이것에 대하여는 IMF시대에 있어서 외국자본의 국내방송시장진출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일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과 아직 우리 방송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자본의 국내방송시장 잠식은 문화종속 등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내위성방송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는 위성방송법제의 내용을 포함한 통합방송법의 제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때에 발맞추어 정부 여당인 국민회의가 통합방송법(안)의 시안을 마련하였다는 소식과 더불어 더 나아가 문화관광부가 8월중으로 위성방송정책의 골간을 이루게 될 '위성방송정책방향(안)'을 새로이 조정·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담은 통합방송법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는 위성방송의 도입과 관련하여 그 동안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분석을 통하여 위성방송법제의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입법정책수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13) 김우룡, 루퍼트 머독과 새로운 방송환경, 여의도클럽 제26차 토론회(1998.2.26), 10~11면.

Ⅱ. 衛星放送의 概念과 特殊性

1. 衛星放送의 概念

위성방송은 일반적으로 지상방송국에서 지상으로부터 약 36,000Km에 정지하고 있는 정지위성¹⁴⁾으로 송출한 전파를 위성에 탑재된 중계기(transponder)가 수신하여 이를 증폭한 후에 다시 지상으로 송출하는 방송을 말한다.¹⁵⁾

그러나 전통적으로 위성방송은 각종 방송프로그램의 전송을 고출력 방송위성(BS : Broadcasting Satellite)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송만을 의미하였다. 또한 위성방송은 “위성방송업무(Broadcasting Satellite Service)란 일반공중에 의하여 직접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우주국에 의하여 신호를 전송하거나 재전송하는 무선통신업무”라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¹⁶⁾의 정의에 기초한 ‘직접위성방송(DBS : Direct

14) 위성은 위성의 궤도에 따라 정지위성과 이동위성으로 대별되는데, 실용위성은 대부분 적도 36,000Km를 주회하는 정지위성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케플러의 제3의 법칙에 따라 지구를 일주하는데 24시간이 소요되는 원궤도는 약 36,000Km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지궤도상에서 위성은 연료를 가장 적게 소비하며, 북극과 남극부근(북위 및 남위 약 80도 이상)을 제외하고는 지구의 1/3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지궤도는 적도면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원주이기 때문에 이 원주상에 배열할 수 있는 정지위성은 유한하다. 예컨대, 인접하는 정지위성간의 안전한 최소간격은 지구중심에서 본 각도로 0.1도이기 때문에 전원주에 배열할 수 있는 위성은 약 3,600개에 불과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인공위성 상호간의 전파간섭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그 수는 훨씬 적어지므로 정지궤도는 주파수와 더불어 유한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정지위성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은 정지위성이 실제로 우주공간에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자전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그리고 지구의 주위를 적도와 똑같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보면 항상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불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지위성과 대비되는 이동위성으로는 극궤도위성과 주회위성이 있다. 전자는 경도선(자오선)을 따라 지구를 주회하는 위성으로서 북극과 남극의 상공을 통과하는 궤도를 취하는데, 이것은 지상에서 볼 때에 항상 일정한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위성으로 24시간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2개 내지 3개의 위성으로 운용되며, 국토의 대부분이 북쪽에 위치해 있고 동서로 광활한 러시아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반면에 후자는 위성의 궤도가 수백~1만Km, 주기가 1~10시간 이내의 위성으로서 지구 주변의 관측에 적합하여 주로 지구탐사위성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통신분야에의 도입이 활발하게 검토되고 있다.

15) 방석호, 미디어법학, 법문사, 1995, 243면; 권영설, 위성방송의 법제와 헌법문제, 방송연구 1996년 겨울호(통권 43호), 방송위원회(1996/12), 15면; 권영설, 위성방송과 방송의 자유 및 규제, 고시연구(1997/3), 77면.

Broadcasting Satellite)’만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직접수신에는 ‘개별수신’과 ‘공동수신’이 있는데, 전자는 방송위성의 우주국으로부터 수신하는 것으로서 간단한 가정용설비 특히 소형안테나설비에 의한 것이고, 후자는 대형의 안테나와 대규모의 수신설비에 의해 수신하여 유선 등을 통하여 가정에 분배하는 방식을 말한다.¹⁷⁾

현행 전파법시행령 제3조제1항도 “공중이 직접 수신(다음에 제기한 개별수신과 공동수신을 포함한다)하도록 할 목적으로 우주국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무선통신업무”를 ‘위성방송업무’로 규정함과 아울러 “간단한 가정설비 특히 소규모의 안테나를 가지는 수신설비로 위성방송업무를 행하는 우주국으로부터 발사된 전파를 수신하는 것”을 ‘개별수신’으로, “경우에 따라 복잡화될 수 있고, 개별수신용보다 큰 안테나를 가지는 수신설비로 위성방송업무를 행하는 우주국으로부터 발사된 전파를 수신하는 것과 한 장소에 있는 공중의 집단에 의하거나 제한된 지역에서의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공동수신’으로 규정하고 있다(동시행령 제18호).

따라서 종합유선방송의 프로그램공급업자(PP : Program Provider)가 통신위성을 이용하여 직접 수신자(시청자)에게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유료위성채널방송, 종합유선방송의 프로그램공급업자가 통신위성을 이용하여 종합유선방송국(SO : System Operater)을 경유하여 종합유선방송가입자에게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위성케이블네트워크(SCN)는 현행법상 방송영역이 아니라 통신영역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¹⁸⁾

그러나 최근 위성관련기술과 방송·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통신

16)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국제연합(UN)에 상설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하나로서 전기통신의 개선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유지·증진함과 동시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의 촉진·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한자원인 우주무선통신용의 주파수를 업무별, 지역별로 할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국제전기통신연합은 그 업무별로는 고정위성업무(FSS : Fixed Satellite Service), 방송위성업무(BSS : Broadcasting Satellite Service), 이동위성업무(MSS : Mobile Satellite Service)로, 지역적으로는 제1지역(유럽·아프리카·러시아동구권), 제2지역(남북미국대륙), 제3지역(아시아·오세아니아)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제3지역에 속한다.

17) 이동규·김태은(신한종합연구소 미래산업팀), 21세기 텔레컴사회와 위성비즈니스, 다은, 1995, 98면.

18) 방석호, 미디어법학, 법문사, 1995, 243면.

위성이 보다 고출력·고용량·광대역화됨으로써 방송위성과의 차이가 거의 사라졌고, 이미 수신자들 또한 방송위성과 통신위성의 구별없이 1M미만의 안테나를 통하여 위성방송의 직접수신이 가능하여 졌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허용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엄격한 구별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19)

이러한 측면에서 직접위성방송의 개념을 고출력 방송위성을 통한 프로그램의 직접수신을 의미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DBS는 물론이고, 수신자 개인이 자신의 안테나를 이용하여 통신위성을 통한 프로그램의 직접수신,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에게 위성방송 전용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의 프로그램까지도 수신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위성방송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20)

2. 衛星放送의 特殊性

위성방송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위성방송은 그 광역성·광대역성·동보성이라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지상파방송의 난시청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싸고 편리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대중매체산업이나 다른 뉴미디어산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방송관련산업들 간에 다양한 갈등과 긴장을 야기시킨다. 위성방송이 기존의 지상파방송·종합유선방송과 달리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수성으로는 다음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21) 첫째, 위성방송은 가시청범위가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종래 지역적 또

19) 최근 통신위성을 이용한 직접방송서비스가 유럽 및 아시아국가에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는데, 기존 방송위성에 의한 위성방송을 DBS(Direct Broadcasting Satellite)서비스, 통신위성에 의한 위성방송을 DTH(Direct-TO-Home)서비스라고 불러 구별하는 경우가 많다(시모세코 사치오/이이다 타카시(저), 노주현(역), 위성통신, 한국방송협회, 1996, 13면). 이러한 중출력 통신위성을 통한 DTH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방송위성의 경우에는 주파수가 계획에 따라 배정되므로 제한적이며 규제가 엄격한 반면에, 통신위성의 경우에는 지역 또는 국제위성의 위성통신사업에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 전파등록절차를 거쳐 자유로이 사업할 수 있으므로 규제가 덜 엄격하다는 국제규제에 있어서 차별적 규제 때문이다(방석호/김은기/이병섭, 방송시장개방에 따른 관련법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방송개발원(1996/12), 47면).

20) 방석호, 미디어법학, 법문사, 1995, 244면.

는 국가적 한계성을 지녔던 방송개념에서 탈피하여 방송의 초국경화를 초래한다.²²⁾ 그리하여 전파월경(Spill-Over)에 따른 정보주권의 문제나 지적재산권 등의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둘째, 위성방송은 언론매체이며, 동시에 문화매체, 산업매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위성방송사업에는 초기에 위성발사에 따르는 거대한 자본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위성방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송서비스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의 채널이 필요하며, 동시에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성방송의 도입과 관련하여 그 특성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사회문화적·기술적·경제적·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衛星放送의 特性²³⁾

(가) 社會文化的 特性

위성방송은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광역성과 지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동시에 같은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동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과 같은 난시청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위성방송 수신지역내에서는 누구나 동시에 수신할 수 있다. 또한 위성방송의 가시권역이 넓기 때문에 국내의 난시청해소 뿐만 아니라 인접국가에까지 기술적 장애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성방송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가진다.

첫째, 고화질·고음질의 방송이 가능하다. 위성방송은 위성체와 수신기 상호간에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우수한 음질 및 음향의 방송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위성방송은 다채널을 실현하여 전문편성에 적합하다. 지상파방송의 경

21) 권영설, 위성방송과 방송의 자유 및 규제, 고시연구(1997/3), 77면.

22) 이러한 측면에서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은 그 도입에 있어서 특히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위성방송은 위성궤도 및 주파수의 국제등록 등과 같은 국제규범과의 조화가 필요하지만, 종합유선방송은 국내법의 제정만으로 가능하다. 둘째, 위성방송은 그 가시청범위가 전국도에 미치지 때문에 기존 방송질서의 큰 변화를 요구하지만, 종합유선방송의 가시청범위는 특정지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다(塩野 宏, 放送法制の課題, 有斐閣, 1989, 177頁).

23) 이상훈·이만제·강태완, 뉴미디어 종합발전을 위한 매체별 정책과제 연구, 한국방송개발원(1997.11), 159~162면을 참조.

우에는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종합편성을 하여야 하지만, 위성방송은 이와는 달리 전문편성이 가능하다. 예컨대, 오페라 등의 전막공연이나 장편영화, 각종 경기의 전체중계 등과 같은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위성방송은 멀티미디어서비스와 양방향서비스 등의 새로운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디지털위성방송은 가정용 컴퓨터 등과 연계하여 주식시세, 기상정보 등의 채널을 직접수신, 데이터를 축적·가공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넷째, 위성방송은 수신자 중심의 매체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위성방송을 통한 채널의 확대는 다양한 전문채널과 소수가 관심을 가지는 채널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여 특정 수신자그룹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다. 또한 이것은 광고시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입자 지향의 유료채널서비스화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수신자의 관심이 높게 반영되는 수신자 중심의 매체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나) 技術的 特性

위성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위성방송은 기존의 지상파방송 및 종합유선방송과는 다른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위성방송에 사용되는 고출력의 주파수대는 잡음이 적고, 넓은 채널대역폭을 가진다. 또한 홍수, 지진 등의 재난발생시에도 중계소를 거치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에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방송이나 비상사태용방송으로 적합하다.

둘째, 지상파방송의 경우에는 전파가 고층건물의 반사파·도시잡음 등의 영향으로 혼신 등과 같은 장애를 발생시키지만,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전파가 우주국을 통하여 공중에서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순수한 신호를 얻을 수 있다.

셋째, 디지털전송방식의 개발과 디지털압축기술의 발전은 위성방송의 채널수를 계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특성은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연계를 통하여 다량의 정보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다) 經濟的 特性

위성방송은 광범위한 지역에 방송할 수 있는 광역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그 전송비용은 지상파방송 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또한 위성방송은 전송거리에 관계없이 전송비용이 일정하다. 즉, 방송프로그램전송자가 위성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송신하고, 수신자는 위성을 통하여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공중에서 직접 수신하기 때문에 전송로의 설치비 등과 같은 부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신자측에서는 수신기의 설치비 등과 같은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위성방송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저렴한 위성방송수신기의 개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衛星放送의 問題點

위성방송은 이상과 같은 특성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다양한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위성방송에는 선행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예컨대,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한 인공위성의 발사, 그 자체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며, 위성발사의 실패위험성 및 위성수명이 일반적으로 10년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에 이에 따른 추가비용 및 대체비용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의 기술수준과 관련하여 위성방송은 악천우시 지상에서의 수신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위성방송의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수신기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실은 위성방송의 보급을 저해할 수 있다.

셋째, 위성방송은 위성시스템운용, 그 자체의 비용이 과다하고, 그 기술을 일부 선진국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기술종속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위성방송은 그 가시청범위가 국경을 초월하므로 전파월경의 문제를 야기하지만, 기술적으로 이것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국간의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성궤도의 유한성과 이에 따른 주파수대의 제한으로 관련국간의 분쟁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위성방송사업에 있어서 그 하드(Hard)부분에 해당하는 인공위성체의 발사에는 전파법과는 다른 별개의 국제규범이 적용되고, 발사주체에는 국가기관이 아닌 비정부단체도 허용되는데, 이것에 대하여 국가는 국제적인 책임을 진다.²⁴⁾

예컨대,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²⁵⁾ 제14조(회원국의 권리 및 의무) 제(e)항은 <어느 당사국²⁶⁾ 정부나 서명자²⁷⁾ 또는 그 당사국의 관할하에 있는 기타의 자가 국내 또는 국제특수전기통신역무²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INTELSAT 우주부분²⁹⁾ 시설과 별개의 우주부분시설을 설치, 취득 또는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 당사국 정부 또는 서명자는 그러한 시설의 설치, 취득 또는 이용에 앞서 이사회를 통하여 당사국총회에 모든 관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국총회³⁰⁾는 이사회 의 자문을 고려하고 그 시설의 기술적 타당성과 현존하거나 또는 계획되어 있는 INTELSAT 우주부분의 무선주파수스펙트럼 및 궤도공간의 사용에 관한 운영에 관하여 그 조사사항을 권고형식으로 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³¹⁾에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상호 다른나라의 무선국간에 유해한 혼신을 피하기 위하여 무선주파수스펙트럼 대역의 배분과 무선주파수의 분배, 그리고 할당된 무선주파수의 등록 및 정지위성 궤도상에 있는 임의의 관련 궤도의 위치를 등록시키는> 활동을 행한다(동 헌장 제1조제2항 <가>)고 규정함과 아울러 <회원국은 필요한 업무를 만족할 정도로

24) 국가는 “자국이 실시하거나 자국의 관할권하에서 실시된 국제직접위성방송분야의 활동”에 대하여도 국제적인 책임을 진다(UN의 국제직접위성방송을 위한 인공위성의 국가이용에 관한 규제원칙(Principles Governing the Use by States of Artificial Earth Satellites for International 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 1982.12.10) 제8조).

25) 동 협정은 1971년 8월 20일 워싱턴에서 채택, 1973년 2월 12일 우리나라에서 발효되었으며(조약제456호), 1996년 10월 17일 개정되었다(외무부고시제1996-297호).

26) ‘당사국’이란 “동 국가에 대하여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였거나 또는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국가를 말한다”(제1조제(f)항).

27) ‘서명자’란 “운영협정(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1971년 8월 20일 워싱턴에서 정부 또는 정부가 지명하는 전기통신사업체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협정과 그 부속서를 말한다(제1조제(b)항))에 서명하였고, 동 국가에 대하여 동 운영협정이 효력을 발생하였거나 또는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정부 또는 당사국이 지명한 전기통신사업체를 말한다”(제1조제(g)항).

28) ‘특수전기통신역무’란 “위성에 의하여 제공 받는 전기통신업무중 본 조(k)항(공중전기통신역무)에서 정의된 것 이외의 것을 말하며, 무선항해업무, 일반공중수신을 위한 방송위성업무, 우주연구업무, 기상업무 및 지하자원업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제1조제(i)항).

29) ‘INTELSAT 우주부분’이란 “INTELSAT가 소유하는 우주부분을 말한다”(제1조제(i)항).

30) 당사국총회는 모든 당사국으로 구성되며, INTELSAT의 최고기관이고, 일반규칙 또는 특별 결정에 의하여 INTELSAT 우주부분의 사용과 본 협정 제3조제(d)항 및 제(e)항제3호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특수전기통신역무를 위하여 INTELSAT 우주부분과 별도의 위성 및 동 부대시설의 제공을 인가한다(제7조제(a)항, 제(c)항제(iv)호).

31) 동 헌장은 1994년 8월 5일 우리나라에서 발효되었다(조약제1237호).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주파수의 수와 스펙트럼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노력하며,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가능한 한 최신 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고(동 헌장 제44조제1항), 더 나아가 회원국은 전파통신업무를 위하여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때에는 무선주파수스펙트럼과 정치위성궤도가 유한한 천연자원이라는 점과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수요와 특정 국가의 지리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나 국가군이 양자에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통신규칙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경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한다(동 헌장 제44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부단체의 인공위성체 발사행위에 대하여는 정부규제가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것을 법기술적으로 어떻게 수용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또한 현행 방송법에 있어서 방송국은 전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행하는 무선국을 말하기 때문에 당해 방송법인이 방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드(Hard)부분의 소유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위성방송에 제공되는 인공위성으로부터는 복수채널의 송신이 가능하고, 또한 인공위성에 대하여는 전파법과는 달리 국제규범에 근거한 정부의 특별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드(Hard)부분과 소프트(Soft)부분의 소유분리, 즉 개별 사업체에 이것을 위임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 하드부분과 소프트부분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구분할 것인지, 그 가운데 프로그램송신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제가 필요할 것인지, 하드부분과 소프트부분의 소유주체 상호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의 다양한 법적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³²⁾

32) 우리나라 국내위성인 무궁화위성의 경우에도 위성의 발사 및 운영주체가 위성방송사업의 주체와 분리되어 있는 특수성을 안고 있다. 즉, 현재 무궁화위성은 국가정책적으로 일반방송사업자가 아닌 한국통신이 소유·관리·운영하고 있다.

Ⅲ. 主要國家의 衛星放送法制

1. 美國

(1) 衛星放送事業의 現況

미국의 위성방송은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주로 저출력 또는 중출력의 국내 통신위성(CS)을 이용한 종합유선방송(CATV)시스템에 의하여 프로그램이 배급되고 있었으며, CATV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통신위성의 직접수신장치를 통한 개별수신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DTH : Direct-To-Home 방식). 즉, 개별가입자에 의한 직접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위성방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종합유선방송(CATV)시스템과 결합한 위성방송만이 실용화되고 있었다.³³⁾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디지털송출기술의 발전과 케이블프로그램사용에 관한 법률³⁴⁾이 변화함으로써, 1980년대 위성방송사업의 발전을 저제한 제한요소³⁵⁾들이 제거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위성방송의 성공적인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위성방송사업의 추진현황 및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초기 위성방송은 1980년대에 이루어 졌는데, 그 당시 종합유선방송(CATV)은 이미 사업적으로 상당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위성방송의 프로그램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33) 미국의 FCC규칙(47 C.F.R. Sec. 100.3)에 의하면, 직접위성방송(DBS)은 "우주국에 의하여 송신 또는 재송신되는 신호가 일반공중에게 직접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통신서비스"로 정의된다.

34) 이것은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보호와 경쟁에 관한 법(Cable Television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on Act of 1992)'을 말한다. 이 법률에 따라 종합유선방송(CATV)의 프로그램공급업자(PP)가 위성방송사업자에게도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35) 1980년대 미국의 위성방송사업이 실패하게 된 주요원인으로는 비효율적인 저출력 또는 중출력 주파수의 송출기술과 유용가능한 방송프로그램의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Ted Carlin, "Direct Broadcast Satellite, DBS", in August E. Grant(ED), Communication Technology Update, 5th ed.(Boston : Focal Press), 박조원(역), 미국의 전파매체, 한국방송협회(1997), 147~148면).

않았으며, 위성방송의 수신을 위한 수신기의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³⁶⁾

예컨대, 1940년대 말에 지상파방송의 난시청해소를 목적으로 지상파방송의 수신이 곤란한 지역에서 인근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재송신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탄생한 종합유선방송(CATV)이 1960년대에는 중소도시로 진출하여 대도시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받아 재송신하였고, 이것이 1970년대에는 대도시로 확대되었다. 이에 1972년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종합적인 규칙을 제정하였고, 1970년대 후반에는 저출력 또는 중출력의 국내 통신위성이 등장하여 이것을 이용한 SCN이 늘어나게 되었다.³⁷⁾ 이와 더불어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³⁸⁾으로써 1980년대 이후 종합유선방송 사업은 급성장하게 되었다.³⁹⁾

이에 반하여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1960년대 처음으로 논의된 이래로 1970년대에 미국의 'Open Skies'정책과 '텔레비전전용위성수신기(TVRO : Television

36) 방석호·김은기·이병섭, 방송시장개방에 따른 관련법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방송개발원(1996/12), 48면.

37) 이러한 중계서비스(SCN)를 위하여 FCC는 고정위성서비스(FSS) 주파수대역의 두부분을 할당하였다. 즉, 저출력주파수대역(low-power C-band, 3.7~4.2GHz)과 중출력주파수대역(medium-power Ku-band, 11.7~12.2 GHz)이 바로 그것이다(Ted Carlin, "Direct Broadcast Satellite, DBS", in August E. Grant(ED), Communication Technology Update, 5th ed.(Boston : Focal Press), 박조원(역), 미국의 전파매체, 한국방송협회(1997), 148면).

38) 이것은 '케이블 커뮤니케이션 정책법(Cable Communication Policy Act of 1984)'의 제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소유규제, 프랜차이즈, 요금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소유규제와 관련하여서 지상파 방송국이나 지역전화사업자가 자사 구역내에서 CATV사업을 경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프랜차이즈 부여 및 매출액의 5%를 상한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요금(franchise fee)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요금규제와 관련하여서 지상파 방송국과의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규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사실상 독점과 비규제가 인정되어 종합유선방송(CATV)사업은 급속히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독점적 시장의 출현은 기본서비스요금의 인상과 전송프로그램의 품질저하를 초래하게 되었다(한국언론연구원, 21세기 한국 언론정책·법제연구 - 한국과 외국의 매스미디어 산업·정책·법제 비교 -, 1997.12, 133면).

39) 이동규·김태은(신한종합연구소 미래산업팀), 21세기 텔레컴사회와 위성비즈니스, 다은, 1995, 231면.

Receive Only)'의 개발에 힘입어 저출력 위성방송(DTH)이 시행되었다.⁴⁰⁾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위성방송사업자들은 새로운 DTH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의 중출력 위성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 결과, 중계위성(relay satellite)에 사용하지 않던 중계기(transponder)를 사용하여 TVRO보다 작은 수신용접시안테나를 이용하는 중계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높은 가입비, 악천우에 의한 잠재적 수신방해현상, DTH시스템의 제한된 채널 수용도, 케이블프로그램 수신한계 등으로 인하여 중출력 DTH시스템도 실패하고 말았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FCC 정책입안자들은 DTH서비스에만 사용할 수 있는 별개의 새로운 위성주파수대를 할당하고자 계획하였고, 1979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세계무선통신주관회의(WARC : World Administrative Radio Conference)는 다채널 위성방송서비스를 위하여 서반구에 고출력 주파수대(Ku-Band, 12.2~12.7GHz)를 할당하였다.⁴¹⁾ 이것들을 직접위성방송(DBS : Direct Broadcast Satellite)서비스라 부르고 있으며, 이러한 고출력 주파수를 송신하기 위한 위성궤도 및 각 국가의 구체적인 주파수지정은 1983년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지역회의에서 결정되었다.

미국의 FCC는 DBS서비스를 위하여 서경 30~170도 사이에 위성궤도 8개를 할당하였으며, 각 궤도당 32개의 채널을 지정함으로써 총 256개의 아날로그 방송채널을 할당하였다. 다만, 8개의 위성궤도중 3개만이 미국 전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몇몇의 DBS사업희망자에 대하여 2개의 궤도에서 채널을 제공하였다. 1983년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는 DBS궤도와 채널할당을 위하여 사업자 공고를 통하여 지원자들로부터 접수를 받았고, 그 가운데 8개사⁴²⁾가 조건부 시설허가⁴³⁾(Construction Permit)를 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초기의

40) 이 당시 위성방송은 케이블 텔레비전 네트워크인 HBO(Home Box Office)의 저출력 위성방송이 실시되고 있었다. 예컨대, HBO는 Westar위성을 통하여 24시간 프로그램을 전송하였다.

41) Setzer, Franca, & Cornell, Policies for regulation of direct broadcast satellites, FCC, Office of Plans and Policy(Washington, DC : 1980), p.1.

42) CBS, DBSC, GSC, RCA, STC, USSB, VSS, Western Union 등이다.

43) 이러한 신청허가는 신청자들이 DBS시스템의 실시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다는 조건하에서 발급된 것인데, 신청자들이 FCC의 '상당한 주의요건'이라는 조건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성제작을 시작하거나 제작계약을 완료하여야 하고, 위성제작 계약후 6년 이내에 위성의 운용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47 C.F.R. Sec. 100.19b).

위성방송사업자들은 모두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직접위성방송사업은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없었다. 첫째, 그 당시 저출력 및 중출력 통신위성의 이용에 따른 수신용안테나의 대형화 및 설치비용의 고가로 인하여 시청자수가 확대되지 못하였다. 둘째, 1980년부터 1985년에 걸쳐 종합유선방송의 다채널화가 실현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VTR과 비디오대여가격이 저렴화됨으로써 종합유선방송과 비디오시장을 중시한 프로그램공급자들이 직접위성방송사업자 보다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선호하였다. 셋째, 프로그램공급자로부터 종합유선방송국에 통신위성을 경유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의 신호가 당시에는 거의 암호화되지 않아 무료시청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유료 위성방송에 의한 시청자들을 보호하지 못하였다. 넷째, 개별가정에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의 소형화 및 위성의 중계기출력을 최대화하는 기술이 그 당시에는 발전하지 못하다. 이 결과, 1980년대까지의 위성방송은 수신자가 위성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직접수신하는 직접위성방송 보다는 종합유선방송의 프로그램을 전국에 퍼져있는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분배방식이 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위성방송은 상당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 새로운 방송 서비스에 대한 기대, 그리고 프로그램공급과 관련한 시장구조의 동요 등으로 위성방송의 영역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1988년 8월 미국의 FCC는 기존의 직접위성방송의 상황을 재점검하고, 새로이 신청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새로운 신청자 그룹에는 최초의 지원자였던 DBSC와 USSB, 그리고 어드밴스드 커뮤니케이션, 콘티넨탈 새털라이트, 다이렉트, 도미니언 비디오 새털라이트, 에코스타 새털라이트, 휴즈 커뮤니케이션 등의 신규사업자가 참여하였다. 또한 1992년의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보호와 경쟁에 관한 법'의 제정을 통하여 직접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도 케이블 프로그램공급업자(PP)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DBS사업자들의 방송프로그램 확보원이 보장되었고, 1993년대에는 '디지털 비디오 압축기술'(digital video compression standard)의 개발로 다채널화가 실현되어 1994년 6월 휴즈 커뮤니케이션(Hughes Communications)⁴⁴⁾과

44) 휴즈(Hughes)사는 DBS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회사 DirecTV를 설립하였고, 곧이어 공동으로 직접위성방송시스템에 대한 재정지원, 마케팅 등을 위하여 USSB와 함께 일할

USSB가 DBS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하였다.

DirecTV와 USSB의 출범이후, 미국의 FCC는 다른 직접위성방송 신청자들에게 그들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종용하였으며, 1995년 말과 1996년 초에는 이들 신청자들이 '상당한 주의요건의무'를 준수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재평가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어드밴스트 커뮤니케이션(Advanced Communications)'사와 '도미니언 비디오 새털라이트(Dominion Video Satellite)'사에게 할당되었던 채널들은 1996년 1월 FCC의 경매에 의하여 전자는 MCI/News Corporation 사에게 넘어갔으며, 후자는 EchoStar사가 접수하여 채널을 증가시켰다. 또한 EchoStar사는 1995년과 1996년의 합병을 통하여 다른 신청자인 Direcsat와 DBSC의 채널도 획득하였다. 콘티넨탈 새털라이트(Continental Satellite Corporation)사의 채널도 예정된 DBS위성발사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Loral-DBS사에게 넘어갔다.

현재 미국에서 고풍력 위성방송(DBS)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회사는 USSB, DirecTV, EchoStar(DISH Network)⁴⁵⁾ 등이다.⁴⁶⁾ 이러한 직접 위성방송(DBS)사업의 확장과 더불어 그들의 잠재적 가입자들을 잠식당하고 있는 MSO(복수종합유선방송국 : Multiple System Operators)들이 아무런 대안없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콘티넨탈 케이블비전(Continental Cablevision)은 케이블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는 수신자들을 위한 공중케이블방송국(cable headend in the sky)을 설립하기 위하여 5개의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Comsat, Cox Cable, New-house, TCI, Time Warner)의 지원을 받아 1994년 초에 중출력 DTH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프라임스타(Primestar)'로서, 오늘날의 디지털 압축 및 송출기술의

것에 동의하여 양사는 합병하였다.

45) EchoStar는 1개의 중계기를 Dominion Satellite사에 임대하고 있으며, Dominion Satellite사는 이것을 이용하여 기독교종교채널인 SkyAngel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세계적인 언론재벌 머독의 NC사가 EchoStar사의 지분 50%를 확보함으로써 EchoStar가 제공하는 DISH Network를 인수하였다(류춘렬·이병섭, 위성방송의 전망 : 시장과 기술, 국내위성통신 및 방송서비스 활성화방안에 관한 세미나,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1997.11.4), 46~47면).

46) Ted Carlin, "Direct Broadcast Satellite, DBS", in August E. Grant(ED), Communication Technology Update, 5th ed.(Boston : Focal Press), 박조원(역), 미국의 전파매체, 한국방송협회(1997), 167면.

발전이 힘입어 1980년대에 예상했던 중출력 DTH서비스의 완전한 실현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Primestar는 DBS위성을 통하여 수신되지 않기 때문에 FCC는 準DBS(quasi-DBS)서비스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의 하늘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⁴⁷⁾ 최근 캐나다에 기반을 둔 중출력 위성방송인 알파스타(AlphaStar)의 서비스 제공에 이어 계속적으로 익스프레스뷰(Expressvu), 텔퀘스타(TelQuest) 등의 서비스운용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위성방송사업에의 신규진출은 전체 방송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⁴⁸⁾

(2) 衛星放送政策과 法制

미국의 경우 우주기술의 개발과 연구는 국가기관인 항공우주국(NASA)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위성방송서비스의 판매는 자유화되어 있다. 즉, 미국의 위성방송정책은 1972년부터 추진된 Open Skies정책에 의하여 위성방송서비스시장에의 진입제한을 폐지하고, 자금과 기술이 뒷받침되는 사업자에게는 누구든지 사업을 허가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 있어서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누구든지 미국내 위성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 위성을 제조·구입하여 보유하고, 채널을 프로그램공급업자에게 임대하거나 외부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자체 방송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은 규제에 의한 것 보다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 위성분야 자체의 발전에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위성분야의 조속한 발전이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이 이와 같이 지상파방송과 달리 위성방송분야에 대하여 그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방송 신호를 전송하는 위성과 그 위성에서 발사되는 전파를 위성방송사업자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유재적 성격이 강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둘째, 지상파방송은 불특정다수가 아무런 제약없이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적 성격이 강한 반면에, 위성방송은 유료방송이기

47) Jessell, H.A., The growing world of satellite TV, Broadcasting & Cable 126(6), 1996, p.59.

48) Ted Carlin, "Direct Broadcast Satellite, DBS", in August E. Grant(ED), Communication Technology Update, 5th ed.(Boston : Focal Press), 박조원(역), 미국의 전파매체, 한국방송협회(1997), 167면.

때문에 위성방송사업자와 가입자간의 계약체결에 의하여 수신이 가능하므로 사적인 통신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 것이다. 셋째, 위성방송이 기술적으로 첨단분야이므로 현재 지속적인 발전단계에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는 것이다. 또한 첨단기술개발에는 항상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따른 이익을 사업자가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간섭을 제한하고, 더 나아가 자율적인 사업을 보장함으로써 우주분야에서의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것이다.⁴⁹⁾

이러한 미국의 위성방송정책은 종합유선방송(CATV) 보다 후발주자인 위성방송이 경쟁력을 갖추고 방송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초기 위성방송의 정상궤도진입을 어렵게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방송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위성방송사업자들이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에 인접한 해외시장의 개척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의 위성방송사업자는 위성채널의 임대와 그 운영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⁵⁰⁾와 이들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사업자⁵¹⁾로 구분되고 있으며, 또한 후자의 경우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방송국시설을 갖추고 위탁방송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방송사업자⁵²⁾와 방송국시설을 갖추지 않고 단지 수탁방송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⁵³⁾로 구분되어 행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에 있어서 1984년 제2차 직접위성방송 사업신청자들이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프로그램의 구입 및 편성과 전혀 무관한 사업자라는 점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도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⁵⁴⁾ 이 처럼 미국의 위성방송은 그 유통경로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미국의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법체계 및 법적 규제내용을 구체적으로

49) 류춘렬·이병섭, 위성방송의 전망 : 시장과 기술, 국내위성통신 및 방송서비스 활성화방안에 관한 세미나,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1997.11.4), 49면.

50) 이러한 사업자를 '위성채널임대사업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1) 이러한 사업자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2) 일본에서는 '수탁방송사업자'라고 한다.

53) 일본에서는 '위탁방송사업자'라고 한다.

54) 방석호, 미디어법학, 법문사, 1995, 247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최초의 방송법은 1927년의 무선법(Radio Act of 1927)이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전파자원은 개인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에 따라 배분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방송국의 허가권을 행사할 기구로서 5명으로 구성된 FRC(Federal Radio Commission)을 설립하였다.⁵⁵⁾ 이후, 1934년 미국 연방의회는 '무선법'을 '통신법(Communication Act of 1934)'⁵⁶⁾으로 개정하고, 기존 FRC의 권한을 확대하여 방송·전화·통신을 관장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로 확대·개편하였다.

미국의 연방의회는 통신법 이후에도 새로운 통신기술이 등장하거나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통신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였다. 예컨대, 상업통신위성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1962년에 통과된 '통신위성법(Communications Satellite Act of 1962)'⁵⁷⁾은 상업통신위성의 설립, 소유권, 운용, 규제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1982년 세계최대의 전화회사인 AT&T사를 분할시켰던 이른바 '수정최종판결'⁵⁸⁾은 영상서비스시장과 통신서비스시장을 분리하여 각각의 사업체가 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방송과 통신을 준별하는 법체계를 제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1984년 '케이블 커뮤니케이션 정책법(Cable Communications Policy Act of 1984)'은 지역전화회사와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사업간의 겸영금지, 지방자치단

55) 방석호·정영철·최우석,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방송통신관계법정비방안연구, 한국방송개발원(1997.12), 38면.

56) 미연방법전 제47편 제5장 유선 또는 무선통신에 해당한다.

57) 미연방법전 제47편 제6장 통신위성시스템(Communications Satellite System)에 해당한다.

58) 1982년 8월 24일, United States v. Western Electric(Civil Action No.82-0192) 사건의 결정을 말한다. 예컨대, 1982년 1월에 독과점행위로 문제가 된 AT&T사와 이를 기소한 법무부, 그리고 이를 심판한 사법부가 독과점법위반을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 합의를 만들었는데, 이 동의안에 따라 AT&T사는 7개의 지역전화회사로 분할되는 대신에 정보서비스업 등의 새로운 영역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1982년 8월에 지역전화회사들이 기기제조업, 장거리서비스, 그리고 전자출판과 같은 정보서비스업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정동의안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수정최종판결(Modified Final Judgement, MFJ)'이다 (김은기, 미국 1996통신법의 주요내용, 법제현안 제96-12호(통권 제40호),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1996.7.12), 1면). 또한 1982년 8월 24일 이후, '수정최종판결'과 같은 유형의 판결 및 명령을 'AT&T Consent Decree'라고 한다.

체의 프랜차이즈 부여 및 프랜차이즈요금 상한선 5%로 제한, 종합유선방송료의 비규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다만, 종합유선방송의 채널관리, 소유제한 등의 권한에 대하여는 FCC가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1992년의 '케이블 커뮤니케이션의 소비자보호 및 경쟁에 관한 법(Cable Communications Protection and Competition Act of 1992)'은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공급업자가 프로그램판매에 있어서 DBS사업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시함과 아울러 지상파방송 의무송신 및 재송신 등의규정을 담고 있었다.⁵⁹⁾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근 1996년 2월에 통과된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은 그 동안의 통신 및 방송환경의 변화, 즉 통신시장구조의 변화, 하나의 통신망을 통한 복합서비스제공 및 정보고속도로구축의 촉진,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 등을 반영하여 1934년의 통신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방송서비스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AM·FM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의 경우에 소유할 수 있는 상한선을 없애는 동시에 한 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TV방송국의 수를 미국 전체 시청자의 35%를 커버하는 범위로 확대(증진 25%)함으로써 방송에 대한 소유규제를 완화하였다. 둘째, 종합유선방송과 지역전화회사는 전화, 비디오, 고속데이터 전송 등의 모든 분야에서 상대방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화회사가 자신의 서비스지역에서 영상서비스를 공개된 영상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규제상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반면에, 동일 지역내에서의 상호간 주식 내지 지분의 소유를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영업구역 및 프랜차이즈구역이 동일할 경우에 종합유선방송과 지역전화회사는 해당 시장내에서 비디오프로그램 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합작 또는 제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⁶⁰⁾

미국의 위성방송사업도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통신법 및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받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통신법(Communication Act of 1934,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은 제151조에서 “-- 본 위

59) 이 규정은 최근의 '텔레커뮤니케이션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하에서는 동법을 1996년 '통신법'이라 부른다.

60) 방석호·정영철·최우석,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방송통신관계법정비방안연구, 한국방송개발원(1997.12), 47면; 김은기, 미국 1996통신법의 주요내용, 법제현안 제96-12호(통권 제40호),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1996.7.12), 4면 이하 참조.

원회(연방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이 법을 시행·집행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제152조에서 "이 법은 주간 및 외국과의 모든 유·무선 통신에 적용되며, -- 무선국의 허가 및 규제에 적용된다"고 규정한다(제151조·제152조). 특히, 미국의 위성방송사업에 대하여는 FCC의 규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47 C.F.R. 100, DBS : Direct Broadcast Satellite Service). 이것은 총칙, 행정절차, 기술요건, 운영요건, 경매절차 등의 다섯 부분으로 구분하여 직접위성방송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⁶¹⁾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칙부분에서는 동 규정의 근거와 목적, 직접위성방송서비스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 규정은 무선주파수스펙트럼이 잠정적인 직접위성방송서비스의 발전에 이용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100.1), 동시에 '직접위성방송서비스'를 우주국에 의하여 송신 또는 재송신되는 신호가 일반공중에게 직접수신(개별수신과 공동수신을 포함)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통신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100.3).

둘째, 허가취득의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동 규정은 신청자격(100.11), 신청요건(100.13), 허가부여절차(100.15), 허가기간(100.17), 상당한 주의요건(100.19)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 규정은 이 규정이 적용되는 비방송시설에 대한 허가발급기간을 10년, 방송시설에 대한 허가발급기간을 5년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직접위성방송의 허가를 발급받은 모든 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직접위성방송시스템의 건설에 임하여야 하고, 건설허가를 부여받은 자는 그 건설허가의 부여로부터 1년 이내에 위성방송국의 건설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또한 위성방송국은 건설허가가 부여된 때로부터 6년 이내에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기술요건과 관련하여 동 규정은 위성방송서비스에 관한 1983년 지역무선통신주관청회의 이전의 잠정적인 직접위성방송시스템은 1977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3지역의 11.7~12.2GHz와 제1지역의 11.7~12.5GHz 주파수대에 있어서의 위성방송시스템의 기획을 위한 세계무선통신주관청회의의 최종의정서 부칙 제8조와 제9조에 포함된 공동의 할당기준과 기술특성에 따라 운행되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최종의정서에 규정

61)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

된 것과는 다른 기술특성을 사용하는 시스템은 최종의정서 부칙 제9조에 따라 결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운영시스템 또는 계획된 시스템에 대한 방해를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 운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00.21).

넷째, 운영요건과 관련하여 동 규정은 평등한 고용기회(100.51), 지리적인 서비스요건(100.53)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직접위성방송의 경쟁입찰절차와 관련하여 동 규정은 경쟁입찰대상(100.71), 직접위성방송건설허가의 경쟁입찰방식(100.72), 경쟁입찰메카니즘(100.73), 입찰의 철회, 불이행 및 자격상실에 대한 변상금(100.74), 입찰신청서 서식 및 공탁(100.75, 100.76, 100.77), 담합행위금지(100.79), 위성방송허가의 양도공개(100.80)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 日本

(1) 衛星放送事業의 現況

일본은 국가적인 우주개발계획의 일환으로 1980년부터 국내위성방송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먼저, 1984년 5월에 방송위성 2호인 BS-2a에 의한 위성방송이 최초로 NHK 지상파방송의 난시청해소를 주목적으로 1개의 채널을 통하여 개시되었고, 1986년에는 BS-2b를 발사하여 NHK가 2개의 채널로 위성방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위성방송체제는 NHK라는 공영방송의 독점체제라고 할 것이다. 즉, 이들 위성의 제작 및 발사비용은 국가기구인 우주개발사업단이 40%, NHK가 60%를 부담하였고, 또한 NHK만이 위성체의 소유자로서 위성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위성방송은 성공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지상파방송사인 NHK가 위성방송을 독점운영하면서 지상파방송의 프로그램을 병행 송출하였고, 위성방송을 지상파방송의 보조수단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신자들의 입장에서 위성방송의 장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고도화·다양화하는 국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BS-2에 의한 방송위성의 면허방침"을 수정하여 난시청해소 이외에 본격적인 위성방송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한 위성방송의 독자적인 프로그램 제공을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NHK는 1987년 7월부터 위성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는 방송과 지상파의 종합방송 및 교육방송의 혼합편성에 의한 방송을 개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위성방송의 수신자수도 순조롭게 증가하여 1989년 6월에 시험방송에서 본방송으로 이행하였고, 동년 8월에는 위성수신료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 8월에 방송위성 3호인 BS-3a가 발사되면서 기존의 NHK에 의한 위성방송 이외에 일본 최초의 민간위성방송사업자인 (주)일본위성방송(JSB)에 의한 위성방송 및 (주)위성디지털음악방송(SDAB)에 의한 PCM음성방송(초단파방송)이 1991년 4월과 동년 9월에 각각 유료방송으로 개시되었다. 유료방송(PPV : Pay Per View)은 위성방송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신료를 지불하는 가입자에 한하여 수신할 수 있는 '스크램블(Scramble)방식'⁶²⁾에 의한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때문에 수신자의 요구가 직접 프로그램제작에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꿈의 영상'이라는 '차세대 고선명TV(HDTV)⁶³⁾'인 '하이비전(Hi-Vision)'의 보급·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하이비전추진협회'가 방송위성의 중계기를 임차하여 1991년 11월부터 세계 최초로 하이비전 시험방송을 실시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일본의 위성방송체제는 공민영혼합체제로 전환되었고, 아울러 기존의 방송들과 정상적인 경쟁관계에 돌입하게 되었다.

1992년 4월부터는 방송위성(BS)을 이용한 방송과 더불어 통신위성(CS)을 이용한 방송 및 PCM음성방송이 개시되었다. 이것은 다음의 이유에 기인하고 있다.⁶⁴⁾ 첫째, 최근 통신위성의 기술혁신에 의하여 통신위성의 신호도 비교적 소형의 수신기로 수신이 가능하여 각 가정에서 수신이 용이하다는 점, 국민의 정보욕구가 고도화·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점 등에 따라 통신위성에 의한

62) 이것은 원래 통신의 도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송신자측에서 신호를 특수처리하고, 수신자측에서 이에 대응하는 역처리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방송사업자와 계약하여 Decoder를 설치한 수신자 이외의 자가 불법으로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주로 유료방송에 이용되고 있다.

63) 이것은 화면을 구성하는 주사선을 현행 TV의 2배이상인 1,125개로 하고, 화면의 세로와 가로의 비율을 현행의 3:4에서 9:16으로 확장하여 35mm영화 수준의 고화질을 실현한 차세대형 고품위TV이다. 이것은 현재의 TV로는 느낄 수 없는 임장감이나 박진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송 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전자출판, 패션, 영화 등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영상문화를 창조,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동규·김태은(신한종합연구소 미래산업팀), 21세기 텔레컴사회와 위성비즈니스, 다은, 1995, 102면).

64) 이동규·김태은(신한종합연구소 미래산업팀), 21세기 텔레컴사회와 위성비즈니스, 다은, 1995, 221~222면.

방송실현의 요망이 고조되었다. 둘째, 통신위성을 이용한 방송은 궤도위치 및 주파수에 있어서 국제적인 조정을 받은 위성에 의하여 실시되지만, 이용가능한 주파수나 궤도위치가 방송위성만큼 제약을 받지 않으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방송실시가 가능하다는 특징에 따라 통신위성에 의한 방송이 출현한 것이다. 셋째, 통신·방송제도의 측면에서 무선국의 면허주체와 방송프로그램의 편집주체를 분리하는 방송제도의 도입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반영하여 일본 정부는 1988년 6월에 방송법 및 전파법 일부를 개정하여 '수탁방송'과 '위탁방송'으로 구성되는 하드와 소프트 분리의 새로운 방송제도를 탄생시켰다. 즉, 프로그램(소프트)을 제작·공급하는 사업자(위탁방송사업자)와 방송설비(하드)를 보유하여 전파를 송출하는 사업자(수탁방송사업자)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통신위성을 이용한 방송에 있어서는 위탁방송사업자인 프로그램배급회사가 수탁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설비의 운용관리 및 전파의 송출을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1992년 일본통신위성주식회사(JCSAT)와 우주통신주식회사(SCC)에 대하여 TV방송과 PCM음성방송의 수탁국내방송용 방송위성국 면허를 부여하였고, TV방송 6사와 PCM음성방송 6사의 위탁방송업무에 관한 유료방송계약약관을 제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위탁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유료방송의 계약대행, 수신료의 징수대행 등과 같은 고객관리를 공동으로 하는 공동고객관리센터가 JCSAT 및 SCC에 의하여 각각 설립됨으로써 통신위성유료방송의 실시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즉, TV방송은 1992년 4월부터 Super bird-B에 의한 (주)일본케이بل텔레비전 및 (주)스타채널이, 동년 5월부터는 JCSAT-2에 의한 (주)스페이스 샐워 및 (주)재팬스포츠채널이 각각 위탁업무를 개시하였고, PCM음성방송은 동년 4월부터 Superbird-B를 통하여 (주)PCM재팬이, 동년 6월부터는 JCSAT-2를 통하여 (주)PCM지팡커뮤니케이션이 각각 위탁방송업무를 개시함으로써 본격적인 통신위성방송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정부는 1994년부터 방송사업의 국제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것은 방송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위성을 통한 일본방송의 아시아지역내의 전파월경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 결과, 1994년 11월에는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sia-Pacific Broadcasting Union : ABU)'에 의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경을 넘는 위성

방송을 위한 지침(Guidelines for Transnational Satellite Broadcasting in the Asia-Pacific Region)'이 성립되었고, 1995년 3월에는 '국제위성TV방송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관련국회의(Asia-Pacific Meeting on International Satellite TV-Broadcasting)'에 의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위성TV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지침(Guideline on the Program Contents of International Satellite Television Broadcasting in the Asia-Pacific Region)'이 마련되기도 하였다.⁶⁵⁾

1998년 현재, 일본에 있어서 방송위성은 2기(BS-3a, BS-3b)가 운용되고 있으며, BS-4가 발사되어 올해 활용될 예정인데, 대표적인 사업자로서는 NHK와 Wowow가 있다. 통신위성은 현재 3기(JCSAT-2, JCSAT-3, Superbird-B)가 운용되고 있으며, JCSAT-4·Superbird-C가 발사되어 올해 활용될 예정인데, 대표적인 사업자로서는 JCSAT를 이용하는 Japan Satellite System 및 Superbird를 이용하는 우주통신주식회사(SCC)와 같은 수탁방송사업자, JCSAT를 이용하여 5개의 채널을 방송하는 CS BAAN 및 Superbird를 이용하여 9개의 채널을 방송하는 Skyport가 있다. 또한 통신위성을 이용하는 위탁위성방송의 14개 채널은 모두 CS 디지털 다채널방송인 PerfectTV를 통해서도 방송되고 있는데, 이러한 디지털 위성방송은 1996년 최초의 PerfectTV의 등장 이래로 DirecTV Japan, JSkyB 등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위성방송방식은 디지털방식과 아날로그방식이 혼재하고 있으며, 위성방송사업자의 형태 또한 일본의 국내위성 및 외국위성을 이용하여 일본내에 방송 프로그램을 송신하고 있는 사업자, 외국의 위성을 이용하여 해외로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고 있는 사업자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다채널방송인 PerfectTV의 등장으로 인하여 아날로그방식의 위성방송 해약률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에 디지털 다채널방송이 본격 경쟁체제로 돌입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아날로그방송은 모두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2) 衛星放送政策과 法制

일본의 위성방송사업은 국가전략적 산업으로 추진되었다. 즉, 미국의 우주정책에 영향을 받아 기술개발정책의 일환으로 방송기기산업의 육성에 그 초점을

65) 양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

맞추어 추진된 것이다. 이 결과, 기존의 방송에 대한 단순보완적 매체로서의 위성방송이 아니라 하나의 경쟁적 새로운 방송서비스 매체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에 입각하여 집행되어 왔다.

1984년 초기의 일본 위성방송정책은 지상파방송의 난시청해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NHK에 의한 지상파방송의 단순재송신에 머물렀으나, 이것이 결과적으로 수신자확보의 실패를 초래함으로써 1990년 이후부터는 민간위성방송사업자를 참여시키게 되었다. 즉, 일본의 위성방송정책은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그 기반을 다진 이후에 민영화를 허용하는 단계로 나아갔던 것이다.

또한 일본의 위성방송정책은 그 사업성확보를 위하여 통신위성을 통한 방송(CSTV)을 허용함과 동시에 그 위성운영업자와 방송사업자를 분리하는 방식을 제도적으로 채택하였다. 즉, 수탁방송사업자와 위탁방송사업자 개념의 도입이 그것이다. 예컨대, 종래의 방송법은 방송설비를 가진 자만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통신위성의 중계기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989년 방송법을 개정하여 통신위성을 이용한 직접위성방송에 한하여 수탁방송사업자와 위탁방송사업자를 구분, 방송국시설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위탁방송사업자도 방송법에 의한 규율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본은 HDTV관련 기술의 조속한 실용화를 위하여 위성방송 채널중 하나를 HDTV 시험방송용으로 확보·운용하고 있으며, SMATV설치를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위성방송의 확산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위성방송사업은 통신·방송기구법과 방송법, 그리고 전파법의 규율 및 우정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일본의 통신·방송기구법은 1979년 6월 12일 통신·방송기구의 설립 및 위성운영 자체를 규율하기 위하여 법률 제46호로 제정·공포되어 현재 다섯 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총 8장 46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⁶⁶⁾ 특히, 동법은

66) 이것은 "통신위성 및 방송위성의 위치, 자세 등을 제어하고, 이들 인공위성에 탑재된 무선설비를, 이것을 이용하여 무선국을 개설하는 자에게 이용시키는 것 등을 효율적으로 행함으로써 우주에 있어서의 무선통신의 보급발달과 전파의 유효한 이용을 도모하고, 아울러 고도통신·방송연구개발의 실시업무 및 고도통신·방송연구개발을 행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행함으로써 통신·방송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조).

통신위성을 “무선통신을 수신하여 그 재송신을 행하기 위한 무선설비 및 이것에 부속하는 설비만을 탑재한 인공위성(고정지점에서 무선통신을 수신하여 고정지점으로 그 재송신을 행하기 위한 무선설비를 주로 탑재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방송위성 이외의 것”으로(제2조제1호), 방송위성을 “방송법 제2조제1호에 규정한 방송을 행하기 위한 무선설비 및 이것에 부속한 설비만을 탑재한 인공위성”으로(동조 제2호) 규정한다.⁶⁷⁾ 동시에 무선설비 및 무선국의 정의에 대하여는 전파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3호·제4호)⁶⁸⁾.

또한 일본의 방송법은 1950년 5월 2일(법률 제132호) 제정·공포되어 시행되었는데, 그 내용중에 위성방송사업(CS 포함)은 1989년 6월 28일(법률 제55호)의 개정방송법에 처음으로 반영되었다. 특히, 동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무선국면허주체인 수탁방송사업자와 방송프로그램의 편집주체인 위탁방송사업자의 분리를 규정함과 동시에 위탁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수탁방송사업자와 달리 허가제가 아닌 인정제를 채택하고 있다. 1993년 12월에는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 대한 소유규제가 대폭 완화되었고, 1994년 3월부터는 일반방송사업자의 위성방송사업에 관한 방송시간의 유료비율 상한선 50%가 폐지됨과 동시에 위성방송은 소유집중억제조치에서도 제외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방송법 및 방송사업관련 전파법규정 가운데 위성방송에 관계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방송법은 방송종류를 수신지역에 따라 국내방송⁶⁹⁾, 수탁국내방송⁷⁰⁾(국내전용)과 국제방송⁷¹⁾, 중계국제방송⁷²⁾, 수탁협회국제방송⁷³⁾(국외전

67) 전파법시행규칙 제4조(무선국의 종류 및 정의) 제20의11호에서 방송위성을 “방송업무를 행하는 인공위성국(방송시험위성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8) 전파법상의 무선국 및 무선설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즉, 무선국이란 무선설비 및 무선설비의 조작을 행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전파법 제2조제5호). 또한 무선설비란 무선통신, 무선전화 기타 전파를 송신 또는 수신하기 위한 전기적 설비를 말한다(동법 동조 제4호). 여기에서 무선통신은 전파를 이용하여 부호(신호)를 송신 또는 수신하기 위한 통신설비를 말한다(동법 동조 제1호).

69) 국내방송이란 국내에서 수신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으로서 수탁국내방송 이외의 것을 말한다(방송법 제2조제1의2호).

70) 수탁국내방송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수신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대로 송신하는 방송으로서 인공위성의 무선국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방송법 제2조제1의3호).

71) 국제방송이란 외국에서 수신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으로서 중계국제방송 및 수탁협

용), 수탁내외방송⁷⁴⁾(국내외공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수탁국내방송·수탁협회국제방송·수탁내외방송을 인공위성의 무선국에 의하여 행해지는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방송사업자와 관련하여서는 “전파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위탁방송사업자 및 위탁협회국제방송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본방송협회”로 규정함(방송법 제2조제3의2호)과 동시에 일반방송사업자,⁷⁵⁾ 수탁방송사업자, 위탁방송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 수탁방송사업자를 전파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방송(수탁국내방송, 수탁협회국제방송, 수탁국내외방송)을 하는 무선국의 면허를 받은 자(동법 동조 제3의4호)로, 위탁방송사업자를 전파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국내방송 또는 수탁국내외방송을 하는 무선국의 면허를 받은 자(수탁방송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을 방송시키는 업무(위탁방송업무)에 관하여 방송법의 규정에 따라 우정대신의 인정을 받은 자(동법 동조 제3의5호)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탁방송사업자와 위탁방송사업자의 구분은 통신위성(CS)을 이용하는 방송사업에는 적용되지만, 방송위성(BS)을 이용하는 방송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기존 지상파방송과 마찬가지로 방송국운영주체와 프로그램편집주체가 일치하여야 한다는 ‘하드·소프트동일체원칙’이 방송위성을 이용하는 방송사업자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방송법상의 많은 규제를 받게 되지만, 통신위성을 이용하는 방송사업자에게는 이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탁방송사업자와 위탁방송사업자로 구분되어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수탁방송사업자는 우정대신의 면허가 필요하지만, 위탁방송사업자는 우정대신의

외국제방송 이외의 것을 말한다(방송법 제2조제2호).

72) 중계국제방송이란 외국방송사업자(외국에서 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동일하다)의 위탁에 의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수신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대로 송신하는 방송을 말한다(방송법 제2조제2의2호).

73) 수탁협회국제방송이란 일본방송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위탁에 의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수신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대로 송신하는 방송으로서 인공위성의 무선국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방송법 제2조제2의2의2호).

74) 수탁내외방송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을 국내 및 외국에서 수신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대로 송신하는 방송으로서 인공위성의 무선국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방송법 제2조제2의2의3호).

75) 일반방송사업자란 일본방송협회 및 방송대학학원 이외의 방송사업자를 말한다(방송법 제2조제3의3호).

인정만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1997년 3월 일본의 BS-4b위성을 위한 정책수립과정에서 전파감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바, 여기에서 방송위성을 이용하는 방송사업에 있어서도 위성을 운영하는 수탁방송사업자와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위탁방송사업자를 구분하는 제도의 도입이 확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NHK와 민간방송국들이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방송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에서도 '하드·소프트동일체원칙'이 곧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⁷⁶⁾

셋째, 위성방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정대신이 전파감리위원회의 답신을 얻어 방송보급기본계획 및 방송용주파수사용계획을 변경하고, 여기에 어떠한 종류의 방송,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인가, 또한 어떠한 주파수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결정하여 공시한다(방송법 제2조의2, 전파법 제7조 등). 이 경우에 위성방송의 실시를 희망하는 자는 이러한 계획에 기초하여 방송위성국의 면허신청이나 위탁방송사업의 인정신청을 하고, 우정대신으로부터 그 면허 및 인정을 받으면 위성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전파법 제6조 및 제8조, 방송법 제52조의13 등). 예컨대, 방송위성(BS)에 의한 방송에 있어서는 위성방송 실시희망자가 전파법에 근거하여 면허를 신청하면, 신청서의 심사, 예비면허의 발급, 공사낙성의 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 면허를 발부하고, 면허를 취득한 위성방송사업자는 스스로 편집한 방송프로그램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방송위성을 통하여 방송하게 된다. 통신위성(CS)에 의한 방송에 있어서는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통신위성의 소유자로서 무선국의 면허를 취득한 수탁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의 규정에 따라 위탁방송업무에 관하여 인정을 받은 통신위성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위탁방송사업자가 스스로 편집한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방송하게 된다. 따라서 수탁방송사업자는 방송용설비를 중심으로, 위탁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필요한 규율이 행해지고 있다.

넷째, 위성방송의 소유제한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현재, 지상파 방송, 신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의 참여에 대하여는 일부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또한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면허를 받아야 실시가 가능한 위성방송사업의 면허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인정을 받아

76) 류춘렬·이병섭, 위성방송의 전망 : 시장과 기술, 국내위성통신 및 방송서비스 활성화방안에 관한 세미나,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1997.11.4), 57면.

야 실시가 가능한 위탁방송사업은 5년마다 갱신을 받아야 한다(전파법 제13조, 방송법 제52조의15).

3. 유럽

(1) 衛星放送事業의 現況

1980년대 방송위성에 의한 위성방송이 향후 방송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 유럽의 각 국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앞다투어 방송위성을 개발, 적도 상공에 위성을 발사하였다. 특히, 1989년 프랑스의 고출력 방송위성인 TDF-1의 발사 성공을 기점으로 하여 독일·영국 등의 TV-SAT 2, Marcopolo 1, Olympus 등이 연속적으로 발사되었다. 이것이 유럽의 제1세대 고출력 방송위성(BS)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기술개발에 수반되는 시스템의 불안정과 지상파방송과 호환성이 없는 위성 독자적 전송방식(MAC방식)을 고집한 EC의 방침이 역효과를 초래하여 결국 사업의 실패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중출력 통신위성(CS)으로 다채널방송의 실현을 지향하면서 지상파방송과 같은 PAL방식을 채택한 룩셈부르크의 Astra위성은 실용화 초기의 난제를 마케팅으로 극복하면서 유럽의 위성방송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굳히게 되었다. 이것은 통신위성에 의한 DTH를 포함한 위성방송서비스의 비약적인 진보를 초래하였고, 또한 제2세대 통신위성의 고출력화의 성공은 유럽의 지역 위성통신인 '유텔샤프트'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텔레콤2' 시리즈 등의 국내위성도 독자적으로 DTH를 실현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유럽의 위성방송서비스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방송위성시대에서 통신위성을 이용한 DTH시대로 이행하게 된 것이다.

유럽에 있어서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위성방송의 수신범위가 여러나라에 걸쳐 있지만, 각 국가별로 위성관련기술과 기존의 방송제도 및 법체제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위성의 통일된 운영체계를 갖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 각 국가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정책에 따라 위성방송의 운영과 규제를 가하고 있으면서도 국제적인 방송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위성방송 및 위성통신분야의 상호 협력에 의한 발전만이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 미국·일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정보통신망의 고도화를 위하여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유럽의 각 국가들이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마련된 것이 유럽공동체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의 '녹색백서(Green Paper)'이다. 이것은 각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시장독점적인 허가체제를 폐지하여 지상파방송부분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우주부분의 용량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을 허용하며, 이에 따라 우주부분의 상업적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유럽공동체 전 지역의 서비스설비와 그 이용을 촉진하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것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유럽공동체의 각 국가들은 이를 존중, 그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유럽공동체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전파유통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유럽평의회에 의하여 1989년 5월 5일에 '국경을 초월하는 TV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Transfrontier Television)'이 채택되었고, 유럽공동체에 의하여 1989년 10월 3일에 '국경없는 텔레비전'지침('Television Without Frontiers' Directive)이 채택되었는데, 후자는 다시 1997년 6월 30일에 개정되었다.⁷⁷⁾ 이것을 통하여 유럽은 위성방송에 대한 공동의 규제틀을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유럽의 위성방송사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위성방송의 전송방식이 기존의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변환되고 있으며, 또한 각국의 위성방송사업자들간에 상호 연합이 모색되고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예컨대, 유럽의 디지털위성수신방식은 아직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유럽차원에서 통합수신기기의 개발이 사업자들간에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모든 방송매체의 디지털화에 통일적인 방식을 적용하여 매체간의 호환성을 유지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즉, 개별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전송방법은 다르지만, 그 안에 실려있는 방송프로그램의 신호는 동일하도록 기술표준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전송시스템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이 한 매체에서 다른 매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은 위성방송을 통하여 방송된 프로그램이 SMATV를 통하여 재전송되는 과정에서도, 그 효과가 발휘되게 되는 것이다. 유럽의 DVB전송시스템은 아래의 표와 같다.

77) 동 협약과 지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

〈유럽의 DVB전송시스템〉

구 분	매 체	비 고
DVB-S	위성방송	위성의 주파수대역에 적용
DVB-C	CATV(중합유선방송)	38.5 Mbps(8MHz)채널
DVB-T	지상파방송	OFDM
DVB-SMATV	SMATV	위성공동수신
DVB-MC	MMDS	10GHz이하 대역
DVB-MS	MMVS	10GHz이상 대역
DVB-SI	-	Service Information

이러한 통합된 디지털방송기술표준을 추진하는 DVB는 유럽의 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가전제품제조업자, 정책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디지털TV도입에 있어서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1993년 9월에 창설되었다. 또한 DVB는 상업적인 목표를 추구하면서 기술적으로 MPEG-2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기술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디지털 TV도입에 있어서 상호 협력한다는 취지에 동조하는 기관은 누구나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현재 28개국 약 200여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⁷⁸⁾

(2) 衛星放送政策과 法制

(가) 英國

영국의 위성방송정책은 초기부터 순수한 민간위성방송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한 UNISAT계획을 추진하였다. 즉, 자체위성을 개발·제조함으로써 위성사업을 진흥시키되, 위성의 개발·제조는 물론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운영 등에 있어서도 민간기업위주로 추진함으로써 BBC와의 경쟁구도를 구상한 것

78) 류춘렬·이병섭, 위성방송의 전망 : 시장과 기술, 국내위성통신 및 방송서비스 활성화방안에 관한 세미나,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1997.11.4), 52~53면.

이다.

그러나 위성발사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1980년대 초 위성방송을 처음으로 추진하였던 BBC가 자금난을 이유로 위성방송사업에서 철수함으로써 이러한 계획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한 영국은 저렴한 가격의 다른 나라 위성의 수입을 승인하는 한편, 새로운 민간위성방송사업자를 모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그 당시 상업적 지상파방송과 인공위성을 통한 직접방송의 허가권한을 가졌던 상업방송감독기관(Independent Broadcasting Authority : IBA)은 영국계 자본인 Granada, Person 등의 미디어기업에 의하여 설립된 영국위성방송회사컨소시엄(British Satellite Broadcasting Consortium : BSB)을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 1986년 및 1989년에 걸쳐 5개의 허가를 내주었다⁷⁹⁾. 이것은 영국을 대상으로 1989년 2월부터 룩셈부르크의 중출력 Astra위성을 이용하여 SCN방송을 하고 있던 머독의 Sky채널의 경쟁자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그러나 1990년 4월부터 BSB의 위성방송은 실시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Sky채널과의 경쟁에 따른 적자의 누적을 견디지 못하고, 1990년 10월 Sky채널에 흡수·합병되어 BSkyB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처럼 영국의 BSB가 실패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⁸⁰⁾ 첫째, BSB의 전송방식을 둘러싼 기술적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BSB는 기존 방송의 화면 보다는 양질의 프로그램과 음성전송이 가능하고, HDTV로의 기술 이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MAC방식의 전송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 경우에 수신자가 이를 통하여 프로그램과 음성의 수신을 위해서는 별도의 칩이 내장된 수신기를 구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파라볼라안테나 보다는 기능이 우수한 고가의 안테나를 추가로 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신자의 부담이 늘어 가입자의 확보에 실패하게 된 것이다. 둘째, 수신자들의 인식부족에 따른 직접위성방송의 외면 및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없는 시장구조 속에서 BSB가 직접위성방송이라는 차별적 매체를 지탱할 프로그램의 원활한 공급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영국의 위성방송정책은 자유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위성방송사업은 민간

79) IBA는 1990년 영국 방송법의 개정에 의하여 Cable Authority와 함께 '독립상업방송위원회(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 ITC)'로 흡수되었다.

80) 방석호, 미디어법학, 법문사, 1995, 252~253면.

주도로 넘기고, 정부는 자유로운 경영여건조성을 위한 제도설정과 감독에만 주력하고 있다. 즉, 영국의 위성방송에 대하여는 지상파방송과 달리 외국인의 투자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위성방송을 산업적 측면에서 발전시키기 위하여 규제를 최소한으로 완화하고 있음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결과, 영국의 위성방송은 현재 비국내위성서비스인 BSkyB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BSkyB의 지분률은 머독의 NC사가 대주주로서 40%를, Granada, Person 등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BSkyB는 대형스포츠중계권의 확보, 뉴스의 강화, 미국의 위성 및 CATV 채널들의 적극적인 유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아울러 영국 CATV 채널의 주된 프로그램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수신안테나 및 디코더 가격의 지속적인 인하에 힘입어 그 전망은 밝은 편이다.

이러한 영국의 위성방송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기본적으로 방송법 및 문화부(National heritage Secretary)산하 독립상업방송위원회(ITC)의 규제를 받고 있다. 예컨대, 영국의 방송체계는 1990년 방송법(Broadcasting Act 1990) 개정 이후, 영국 여왕의 특허장(Royal Charter)과 정부와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면허협정서(License and Agreement)에 의하여 설립된 공영방송 BBC(BBC1, BBC2)와 방송법 및 ITC에 의하여 허가된 상업방송, 즉 상업적 지상파방송(Ch.3, Ch.4, Ch.5), 국내위성방송, 비국내위성방송(BSkyB), 종합유선방송, 기타 특수방송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영국의 방송체계에 있어서 공영방송인 BBC의 운영과 규제에 관하여는 성문법에 기초하기 보다는 면허조건과 BBC가 스스로 제정한 내부지침에 근거한다는 것이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방송의 자유는 헌법 또는 법률(영국은 불문법국가이다)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비추어 보면, 영국의 경우에 BBC에 대한 일정기간의 면허장과 정부와 체결하는 면허협정서, 더욱이 면허협정서에 부여된 조건을 위반하면 면허장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BBC의 지위는 방송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제도적 측면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에 의하지 않고 국왕의 특허장에 의하도록 한 것은 오히려 입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직성 및 의원내각제하에서의 의회의 간섭배제를 고려한 정치적 선택이라는 점⁸¹⁾에서 그 나라의 정치·문화적 측면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⁸²⁾

81) Barendt, E.M., Broadcasting Law, Clarendon Press(1995), p.67.

또한 영국은 1996년 디지털방송도입과 관련하여 방송시장에 대한 자유경쟁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직접위성방송실시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방송법을 개정하였다. 이것은 1990년 방송법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⁸²⁾ 첫째, 디지털지상파방송산업에 대한 경쟁구조를 마련하였다. 둘째, 미디어소유제한의 개편을 통하여 미디어산업의 통합을 허용하였다. 셋째, 올림픽·월드컵축구 등과 같이 국민의 관심을 끄는 주요 이벤트에 대하여 유료채널에서만 방송되지 않도록 하였다. 넷째, 방송내용에 대한 기준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다섯째, BBC송출네트워크를 민영화하였다.

이러한 영국의 방송법에 있어서 위성방송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의 위성방송서비스는 국내위성서비스, 비국내위성서비스, 외국위성서비스로 구분되고 있다. 국내위성서비스는 그 서비스에 편성된 TV프로그램이 영국내의 어느 장소로부터 위성에 의하여 영국에 할당된 주파수를 사용하고, 영국내에서의 일반적 수신을 위하여 송신되는 경우의 TV방송서비스를 말한다(동법 제43조제1항). 비국내위성서비스는 그 프로그램이 영국밖의 어느 장소로부터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경우, 그 TV프로그램의 송신이 영국에 할당된 주파수에 의하지 않고, 영국내 또는 소정의 국가에서의(또는 양자 모두에서의) 일반적 수신을 의도하는 내용의 서비스와 그 서비스에 어떠한 것이 편성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영국내의 자가 제공하는 자료로 그 서비스의 프로그램이 구성된 경우에 그 한도내에서(그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방송서비스가 구성된 한도내에서) 그 TV프로그램이 영국내 또는 소정의 국가내에서도 아닌 장소로부터 송신되고, 영국내 또는 소정의 국가에서의(또는 양자 모두에서의) 일반적 수신을 의도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말한다(동법 동조 제2항). 또한 비국내위성서비스에 있어서 후단부의 서비스는 그 프로그램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전단부의 서비스는 후단부와 같이 자료를 제공한 자가 있든 없든 불문하고 그 서비스를 송신한 자가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며(동법 동조 제3항), 여기에서 '할당된 주파수'는 위성방송을 위

82) 방석호·정영철·최우석,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방송통신관계법정비방안연구, 한국방송개발원(1997.12), 13면.

83) 방석호·정영철·최우석,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방송통신관계법정비방안연구, 한국방송개발원(1997.12), 8면.

하여 영국에 할당된 주파수를 말하고, '소정의 국가'란 문화부장관이 제정한 명령에 명시된 국가를 말한다(동법 동조 제4항). 외국위성서비스는 영국밖의 장소로부터 영국에서 수신될 수 있는 TV 또는 음향프로그램을 전적으로 또는 주로 구성하여 위성을 통하여 송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동법 제177조제6항).

둘째, 국내위성서비스의 허가에 관하여는 지상파상업방송과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동법 제44조제3항·제4항). 또한 독립상업방송위원회는 허가를 부여함에 있어서 허가서에 명시된 서비스 또는 그와 유사한 서비스제공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까지 다른 주파수에 의한 상이한 프로그램의 동시전송을 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허용할 수 있다. 허가기간은 지상파상업방송과 마찬가지로 15년이다.

셋째, 비국내위성서비스의 허가신청은 독립상업방송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행해지고, 그러한 신청이 적법하게 행해진 경우에는 위원회는 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될 서비스의 프로그램이 선량한 취미 또는 예의에 반하거나, 범죄를 조장 또는 선동하거나, 무질서를 초래하거나, 공중의 감정을 거슬리는 것, 뉴스가 부정확하고 불편부당하지 않게 표현된 것, 정치적 분규 또는 노사분규, 당면한 공공정책에 관한 서비스가 불편부당하지 않는 것, 종교적 프로그램인 경우에 그 프로그램의 어떠한 내용과 관련하여 수신자의 감수성의 부당한 이용, 특정한 종교 또는 종파에 속하는 종교적 견해와 신념에 대한 매도적인 취급, 수신자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에게 짧은 순간의 이미지를 이용하거나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중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용하는 기술적 장치를 포함한 것(동법 제6조제1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독립상업방송위원회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동법 제45조제1항, 제2항). 그 밖에는 국내위성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독립상업방송위원회는 허가를 부여함에 있어서 허가서에 명시된 서비스 또는 그와 유사한 서비스제공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까지 다른 주파수에 의한 상이한 프로그램의 동시전송을 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허용할 수 있다. 허가기간은 10년이다. 특히, 1996년의 방송법은 비국내위성서비스 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독립상업방송위원회의 특별한 권한을 추가적으로 신설·부여하고 있다(동법 제45A조). 즉, 비국내위성서비스의 면허소지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그램에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

하는, 또는 무질서를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45A(1)(a)), 그것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a)의 요건을 따르지 못한 경우(45A(1)(b)), 그리고 그것이 면허의 취소를 정당화할만한 경우(45A(1)(c))로 된다면, 독립상업방송위원회는 동 위원회가 제1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판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45A(2)(a)), 그 면허소지자가 동조 제1항(b)에 언급된 바와 같은 조건을 불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관점을 명시하고(45A(2)(b)), 통지서가 면허소지자에게 송부된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45A(2)(c)), 이의제기된 사항에 관하여 21일 이내에 위원회에 소명할 수 있는 권리를 면허소지자에게 고지하고(45A(2)(d)), 통지서가 면허소지자에게 송부된 때부터 취소가 효력을 발생하거나 또는 위원회가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까지 면허가 정지된다(45A(2)(e))는 내용의 통지서를 면허소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면허소지자가 45A(2)(c)에 언급된 기간 이내에 위원회에 행한 이의제기된 사항에 관한 소명을 검토하여 문제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허취소의 통지서를 면허소지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45A(3)), 그 통지서는 면허소지자에게 송부된 날부터 28일까지는 효력이 없다(45A(4)). 아울러 동법 제45조제5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동법 제42조는 45A(1)에 의거한 통지에 따른 면허취소와 관련해서는 효력이 없다(45A(5)).

넷째, 외국위성서비스는 그 프로그램이 동법 제6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독립상업방송위원회는 허용하여야 한다(동법 제177조제3조). 다만, 영국내에서 소정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운영과 관련한 장비 또는 물건을 공급하는 행위, 송신되는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행위, 타인에게 프로그램공급을 권유하는 행위, 프로그램의 일정을 공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프로그램수신을 위한 암호해독장비를 공급하는 행위 등을 행하는 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문화부장관은 명령을 제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동법 제177조, 제178조).

(나) 프랑스

프랑스의 위성방송사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민간사업자들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다. 즉, 위성방송은 1989년 프랑스의 방송위원회(CSA)가

6개의 TV방송서비스 위성주파수이용을 민간사업자들에게 허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위성방송은 주로 방송프로그램의 전송과 개인의 직접수신에 이용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의 위성방송은 1995년의 경우, 프랑스의 Telecom위성을 수신자 2/3가, TDF위성, Astra위성, Eutelsat위성 등을 수신자 1/3이 수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1996년에 이르러서는 Canal Plus가 Canal Satellite를 이용하여 유료채널을 운영함과 동시에 디지털 위성방송시대를 개시하였다. 그 후, 공영방송사인 France TV, 민영방송사들이 투자한 TPS, ABSat가 각각 위성디지털방송을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의 위성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전송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Telecom 1, Telecom 2, Eutelsat, Astra위성과 개인의 직접수신에 이용되고 있는 TDF 1, TDF 2, TV Sat, Olympus위성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위성방송사업에 관하여는 통신자유법(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국참사원(Conseil d'Etat)의 규칙 및 방송위원회(CSA)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⁴⁾

첫째, 위성방송주파수부여와 관련하여, 위성을 통한 라디오 및 TV방송에 속하는 방송주파수의 사용은 국참사원의 심의를 거친 규칙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허가한다. 이 경우, TV방송은 10년, 라디오방송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통신자유법 제31조제1항). 또한 이러한 허가부여는 허가신청자와 방송위원회간의 협정체결에 의한다(동법 제28조제1항). 이 협정은 정보 및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다양성, 동법에 의하여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유럽영화와 시청각제작물 60%, 프랑스어로 된 영화와 시청각제작물 40%비율로 방송하여야 한다는 의무 등에 대한 국참사원이 심의하여 정하는 일반원칙을 존중하여 광고시장의 서비스측면에서 볼 때의 가치지역의 범위, 다른 방송국과의 균등한 대우존중, 각 방송국에 적합한 경쟁조건을 고려한 방송국에 적용할 특별규칙을 정한다(동법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그리고 이 협정은 고유한 프로그램의 기간 및 일반적 특징, 프랑스에서 제작된 방송작품의 방송할당시간,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의 방송, 최대 광고할당시간 등을 그 대상으로 하며, 협약의

84) Charles Debbasch, LE DROIT DE L'AUDIVISUEL ET LES SATELLITES, 97년도 학술세미나 <21세기 방송매체와 방송법>,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1997.6.2), pp.4~9.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위원회가 보유하는 계약상의 제재를 정한다(동법 제 28조제3항, 제4항).

둘째, 허가취득요건과 관련하여 위성TV방송에 있어서 회사만이 허가대상자가 될 수 있고(동법 제31조제1항), 동일 자연인 또는 법인은 직간접적으로 위성TV방송사업 허가소유회사의 50%이상의 자본이나 의결권, 제1회사 1/3이상의 자본 또는 의결권을 소유한 경우에 제2회사 1/3이상의 참여, 동일 유형의 두 회사에 있어서 이미 자본 또는 의결권을 5%이상 소유한 경우에 다른 위성TV방송사의 5%이상의 참여는 금지된다(동법 제39-II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방송위원회는 사전에 신청된 방송주파수사용에 대하여 통신자유법 제 29조 및 제30조에 의거하여 허가를 부여한다.

셋째, 허가심의회와 관련하여 방송위원회는 사회문화의 다원성, 운영자의 다양성과 지배적 지위의 남용방지, 경쟁의 자유로운 실현을 가져오는 관행, 허가신청자와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정해진 규칙의 준수 등과 같은 우선적 필요성과 공익을 고려·평가하여 허가를 부여한다(동법 제29조제8항).

넷째, 위성방송의 허가 또는 허가거부에 대하여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경우에 따라 방송기술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와 사상 및 의견의 표현분야에 대한 정상적 통제를 행하게 된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허가에 부여된 조건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동법 제32조).

다섯째, 위성방송사업자는 위성방송허가를 취득하면 자유롭게 방송을 실시할 수 있지만, 국참사원에 의한 규칙과 방송위원회에 의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예컨대, 위성TV방송사는 보도 및 프로그램의 품위와 복수주의를 보장하여야 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평등과 아동·청소년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 공공질서, 미풍양속과 국가안보에 반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해서는 안되고, 방송프로그램이 아동·청소년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형태로 시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광고방송은 시간당 12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일 평균 1시간당 9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행정적 및 형사적 제재를 동시에 받게 된다.

(다) 獨逸

독일의 연방헌법은 방송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문화주권의 범위내에서

방송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방송주권을 각 주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통일된 방송정책의 목표와 과제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다.⁸⁵⁾

따라서 독일의 방송사업은 각 주에서 독자적으로 제정하는 방송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다만, 각 주간의 협력과 조율을 위하여 각 주간의 협약인 '방송국가계약(Rundfunksstaatsvertrag)'이 존재한다. 현재, 독일의 각 주는 공영방송을 관할하는 법과 민영방송을 관할하는 법을 갖추고 있으며, 공영방송에 대하여는 방송국내의 방송평의회와 경영위원회가 규제하고, 민영방송에 대하여는 주정부의 미디어청이 규제하는 2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방송사업자의 허가절차와 관련하여 민영방송의 경우에 주미디어청의 방송허가위원회가 그 주체이며, 허가기간은 5년이다.

독일의 위성방송사업은 1986년 독일연방재판소의 제4차방송판결이 민영방송을 공영방송과 대비하여 규제의 차별화를 인정한 이래로 직접위성방송을 상업적 성격의 채널로 허용함으로써 지상파방송과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위성방송정책은 위성방송사업을 종합유선방송의 보완적 매체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즉, 위성방송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공급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독일은 연방정부주도하의 종합유선망건설에 힘입어 유럽의 몇

85) 독일은 최근 통신과 방송의 경계영역적 서비스의 등장에 대처하여 독일내의 뉴미디어서비스분야에 있어서 기업활동의 지원과 이용자의 자율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예컨대, 1996년 12월 18일에 독일연방수상과 주정부수상들은 미디어기술발전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통일된 법규범을 헌법상의 소관권한내의 연방법과 주간의 조약형태로 제정하기로 하고, 이것을 1997년 8월 1일부터 발효시키도록 연방과 주는 각각의 의회에 비준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연방차원에서는 연방입법권한에 기초한 '정보통신서비스법(luKDG)'이 1997년 6월 13일에 연방의회를 통과, 1998년 1월 1일 발효되는 Artikel 7(저작권법 개정)을 제외하고는 1997년 8월 1일부터 발효하였다. 이것은 텔레서비스법, 텔레서비스정보보호법, 디지털서명법 및 관련법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주차원에서는 1997년 2월에 주정부수상들의 서명이 완료된 '미디어서비스에 관한 주간 조약'이 채택, 1997년 8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것은 일반조항, 서비스제공자의 특별한 권리와 의무, 정보보호, 감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 규범의 제정으로 현재 텔레커뮤니케이션, 멀티미디어, 방송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범영역들을 향후 어떻게 독일은 통일시켜 나아갈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 되게 한다. 특히, 이들 규범의 전문번역 및 해제는 "이우승, 독일의 멀티미디어법, 한국방송개발원(1997.12)"을 참조.

나라를 제외하고는 높은 종합유선방송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위성방송용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을 통하여 종합유선방송가입자에게 방영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개별수신 보다는 종합유선망을 통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의 공동수신(SMATV)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성방송프로그램의 제작자들도 개별수신자 보다는 종합유선방송국을 주된 고객으로 인식하여 그들로부터 프로그램전송료를 징수할 뿐만 아니라 위성방송전용프로그램의 제작 보다는 종합유선방송과의 공동방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독일은 1986년부터 가입자의 크기에 따른 차등요금제를 실시하여 직접위성방송을 수신하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기존 지상파방송인 ZDF, ARD의 Astra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을 허용하여 직접위성방송에의 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위성방송사업은 8개 정도의 통신위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위성방송사업자는 각 주간의 협약인 방송국가계약에서 확정된 소유제한 또는 집중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바, 특정한 소유제한은 없지만, 시청자점유율 3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시청자점유율모델'이 적용되고 있다.

IV. 衛星放送法制의 現況과 主要爭點의 分析

1. 概 觀

위성방송은 1965년 6월 <인텔샤프트 1호>에 의하여 지구상에서 최초로 실시된 이래로 오늘날 위성통신기술의 눈부신 발달과 더불어 뉴미디어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는 통신·방송위성 2기(주위성과 예비위성)를 95년내에 발사하여 본격적인 국내 위성통신·방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21세기 정보산업선진국으로의 발판을 마련하고,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방송품질향상을 위한 직접 위성방송서비스를 비롯한 화상회의, 저·고속 데이터통신 등과 같은 첨단정보서비스보급의 촉진 뿐만 아니라 1995년 위성확보시까지 위성체·발사체·관제시설 도입과 병행한 첨단기술의 전수, 국산화가 가능한 지상장비의 국내개발을 통한 산업육성과 기술력 향상 등을 이룩하여 제2세대 무궁화위성사업을 위한 기반기술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국책사업으로서 국내위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1995년 7월에 중장기방송청사진으로서 <선진방송5개년계획(안)-1995년~1999년->을 수립·발표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을 단일법으로 규율하는 통합방송법의 제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위성방송법제의 내용을 포함하게 될 통합방송법제정이 지연됨으로써 국내위성인 무궁화위성의 방송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현재 1996년 7월 1일부터 시험위성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KBS를 제외한 위성방송사업의 참여희망사들은 실질적 준비 보다는 타당성의 검토와 참여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이 통합방송법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게 지적될 수 있지만, 특히 기존의 방송법 내용에 위성방송관련조항만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종합유선방송정책의 전면적인 제도수정, 방송사업자허가정책의 변화, 더 나아가 향후 정부가 지향할 방송정책의 방향을 담고자 하는 과정에서 관계집단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계속적으로 통합방송

법의 제정을 방치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방송산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자본 및 프로그램의 국제적인 유통, 방송기술의 발전에 따른 수백여개의 위성채널이 국경을 초월하여 방송되고 있는 국제적인 방송환경의 변화속에서 외국 선진국들은 자국의 위성방송을 문화수출의 첨병으로 인식,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우리의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 衛星放送政策 및 立法過程

(1) 國內衛星放送事業의 推進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정부의 독자적인 위성 보유구상⁸⁶⁾은 1989년 8월 24일 '통신·방송위성사업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2788호)'의 제정·공포로 구체화되었다.⁸⁷⁾

그 당시 주무부처인 체신부는 위성체 제작과 발사용역 계약을 분리시켜 국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추진하되, 업체 선정시에 최대의 기술전수 효과 및 최적의 가격을 확보한다는 방침 아래 한국전자통신연구소로 하여금 위성망의 규모, 서비스, 추진체계 등을 연구하도록 하였으며,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86) 우리나라 위성보유구상의 역사는 1977년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1977년 ITU로부터 동경 110° 상공의 정지궤도에 2개의 위성좌표와 11.7~12.2GHz주파수대에 있는 6개의 채널을 위성방송의 목적으로 배정받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그 당시 일본은 위성방송에 대한 실험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1986년부터 본격적인 위성 방송시대에 돌입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전역이 일본의 위성방송가시권에 놓이게 되고, 이에 따라 정부와 학계는 일본의 위성방송을 통한 문화침투에 우려를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위성방송도입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한 것이다.

87) 동 규정의 제정목적은 21세기 우주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도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통신·방송위성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체신부장관산하의 기구로서 <통신·방송위성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에 있었으며(제1조), 그 위원회의 기능은 ①통신·방송위성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②통신·방송위성의 보유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③통신·방송위성운용기구의 설립에 관한 사항, ④통신·방송위성의 구조·기능 등 통신·방송위성의 기본방식에 관한 사항, ⑤통신·방송위성의 설계·제작·시험 등에 관한 기술의 도입과 이에 관한 기술인력의 양성·확보에 관한 사항, ⑥위성발사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⑦통신·방송위성 지구국의 설계·설치에 관한 사항, ⑧기타 통신·방송위성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의 심의에 있었다(제2조). 또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체신부장관이 되었다(제3조).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통신·방송위성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신·방송위성사업종합추진계획(안)을 1989년말에 확정하였다.

1990년 7월 한국통신의 위성사업단발족과 더불어 구체적인 사업추진단계로 접어들었는데, 이러한 기준에 따라 동년 12월에 한국전자통신연구소와 프랑스의 SATEL CONSEIL사 및 캐나다의 TELESAT사가 공동연구를 통하여 위성의 규모와 성능의 기준이 되는 무궁화위성설계기준(안)이 작성되었으며, 1991년 12월에는 미국의 GE(General Electric)사와 무궁화위성 제1호기 및 제2호기의 제작에 관한 최종계약이 체결되었고, 88) 1992년 8월에는 미국의 McDonnell Douglas사와 발사용역에 관한 최종계약이 체결되었다. 그후, 무궁화위성의 직접위성방송 전송방식과 관련하여 1993년 7월에 국제방송기술의 발전추세에 부합하고, 중계기의 이용효율을 극대화시키며, 선 아날로그전송방식에서 후 디지털전송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국가적 자원낭비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기술의 조기확보를 통하여 차세대 미디어의 핵심기술확보를 도모함과 아울러 관련산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이유로 중전의 아날로그전송방식에서 디지털전송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추진과정을 거쳐 1995년 8월 5일에 국내 최초의 통신·방송복합위성인 무궁화위성(KOREASAT)의 제1호기가 미국의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었다. 그러나 로켓의 자체 결함으로 인하여 위성이 정지궤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자체연료를 과다하게 소모하여 위성의 수명이 설계수명 10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년 4개월로 단축되었다. 그래서 한국통신은 무궁화위성 제1호기를 전손처리하여 보험사로부터 위성체와 발사체에 대한 보험금 831억원을 전액 보상받은 후, 이를 3,950만 달러에 재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편, 1996년 1월 14일에 미국의 동일 장소에서 예비위성인 무궁화위성 제2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무궁화위성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것이다. 89) 또한 무궁화위성 제3호가 1999년, 제4호가 2005년에 각각 발사될 예정이다. 90)

88) 1993년 11월에 미국의 GE사의 항공우주부문인 GE Astro사가 로켓과 인공위성 등을 주로 생산하는 미국의 군수장비 전문회사인 MM(Martin Marietta)사로 합병됨으로 인하여 1994년 4월에 한국통신은 제작과 기술이전에 관한 승계작업을 완료하였다.

89) 김명중, 위성방송시대의 개막과 지상파방송과의 관계, 방송문화(1996/6), 한국방송협회, 14면.

(2) 先進放送5個年計劃(案)과 國內衛星放送政策

무궁화위성 제1호기 및 제2호기는 각각 출력 14W(와트)급 통신용중계기 12개와 120W(와트)급 방송용중계기 3개를 탑재한 통신·방송복합위성이며, 위성방송전송방식은 디지털방식이므로 한 개의 중계기로 4개의 디지털 TV채널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 24개의 TV채널방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궁화위성은 'NTSC디지털' 전송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주변국인 중국·러시아(북한 포함)의 'PAL아날로그' 전송방식, 일본의 'NTSC아날로그' 전송방식 등과 서로 상이해 그 국가에서의 수신에 곤란하므로 외국위성들이 국제방송의 성격을 가짐에 비하여 국내용방송에 머물고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⁹¹⁾

이러한 무궁화위성의 운용계획 및 정책은 1995년 7월, 그 당시 공보처가 작성·발표한 '선진방송5개년계획(안)-1995년~1999년-'에 포함되어 있다.⁹²⁾

90) 이원호, 무궁화위성 서비스 현황과 과제, 신문과 방송(1996/6), 한국언론연구원, 120면.

91) 또한 무궁화위성의 특수성으로서 조건부접근을 위한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류춘렬·이병섭, 위성방송의 전망 : 시장과 기술, 국내위성통신 및 방송 서비스 활성화방안에 관한 세미나(1997.11.4),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64~65면). 이것은 조건부접근을 위한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크램블이 걸리지 않고, 이로 인하여 누구나 수신기만 보유하면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료방송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 위성방송이 대부분 유료방송을 행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할 때에 국내위성방송의 사업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여지를 가지고 있고, 또한 무궁화위성을 통한 위성방송은 유료방송이 어렵기 때문에 광범위한 수신자를 확보하여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것에 대하여 현재 무궁화위성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통신 위성사업본부의 조진영 전임연구원과 전화통화로 확인한 결과, 이러한 특수성은 현재의 시험방송단계에 한정된 것이고, 위성방송의 본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조건부접근을 위한 시스템을 부착하여 스크램블방식을 이용한 유료방송이 가능하다고 한다. 아울러 그는 다른 지면을 통하여 위성방송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그 운영방식을 광고수익에 의존하는 기존의 매체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신자의 수용욕구의 정도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유료방송채널의 확대 등 다양한 요금체제의 운영체제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조진영, 위성사업자의 국내방송서비스사업 활성화 전략, 국내위성통신 및 방송서비스 활성화방안에 관한 세미나(1997.11.4),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86면).

92) 그 당시 공보처는 <중장기 방송청사진을 제시하여 일관적·체계적으로 방송정책을 추진, 국민들이 방송정책방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21세기 고도정보화 사회에 대처하도록 하고, 방송기술의 급속한 발달 및 방송시장개방 등의 급변하는 국내외방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방송체제를 구축하며, CATV·지역민방·위성방송 등의 동시도입에 따른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매체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하에 1994년 방송위원회가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상파방송의 바람직한 발전

이것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채널운용과 관련하여 그 기본원칙은 중계기별로 허가하고, KBS가 시험방송을 선도한 다음 단계별로 확대하며, 전문편성방송을 원칙으로 하되, KBS만 종합편성을 허용하고, 보도전문채널은 불허하며, 대기업과 언론사의 비보도전문채널참여를 허용한다. 이러한 원칙아래 채널배정은 1995년중 중계기 1대를 지상파방송사용으로 배정하고(제1단계), 1996년중 중계기 1대를 유선방송프로그램공급업자용으로 배정하며(제2단계), 1997년중 본위성 중계기 1대와 예비위성 중계기 1대를 민간용으로 배정한다(제3단계).

둘째, 위성방송의 수신방식과 관련하여 개별수신, 유선방송연계시청(SCN), 공동안테나를 통한 공동수신(SMATV)을 모두 허용하며, 현재 지나치게 고가인(약 80만원) 수신기를 2000년까지 약 20만원대로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셋째, 국내의 위성방송실시와 병행하여 무궁화위성과 외국위성을 이용한 국제방송을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먼저 국제위성방송에 관한 전략협의기구로 <국제미디어교류협회>를 설립하고, 프로그램 공급주체로는 방송광고공사의 자회사인 <(주)방송영상>을 <국제영상>으로 확대·개편하여 활용한다.

넷째, 위성방송의 광고는 종합유선방송과 같이 총량허용제도를 적용하며, 위성방송실시에 따라 양적으로 늘어날 프로그램공급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위성방송프로그램공급자의 자체제작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시킨다(1999년 30% 목표).

다섯째, 위성방송실시를 계기로 현재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로 양분되어 있는 방송관련기관을 통합방송위원회로 단일화하는 한편, 이 위원회와 방송법에서 위성방송에 관한 사항도 다루도록 한다.

여섯째, 방송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위성방송을 종합유선방송의 경우에 준하여

방향"을 제시(공영방송발전방안연구보고서)하도록 함과 아울러 방송개발원이 '2000년 방송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상파방송 뿐만 아니라 CATV·위성방송 등의 방송전반을 포괄하는 방송정책"을 제시(2000년 방송환경의 변화와 한국방송정책)하였다. 이러한 양 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보처는 향후 5년간 실현가능한 방송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최종연구보고서를 제출(선진방송발전정책연구보고서, 1994)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 동안 제기된 방송관계자 및 단체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1995년 7월에 발표한 중장기방송청사진이 바로 <선진방송5개년계획(안)-1995년~1999년->이다.

점진적으로 개방하되, 1997년 이후 시행을 검토하고, 개방은 문화정체성 유지를 감안하여 우선 자본투자를 개방하고, 점차 방송소프트웨어를 개방한다.

(3) 衛星放送法制를 包含한 統合放送法の 立法過程

위성방송법제의 내용을 수용하기 위한 근거법 마련과 관련하여 그 근거법의 형태로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상정될 수 있다. 첫째,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에 대비하여 현행의 통신관계법 및 방송관계법의 체계를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법이다. 둘째, 현행과 같이 통신관계법 및 방송관계법의 체계를 분리하되,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개념이 등장할 때마다 그 서비스를 방송의 영역이나 통신의 영역으로 판단,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에도 세가지의 방법이 있다. 예컨대, 현행과 같이 방송매체별로 나누어진 사업영역을 그대로 존중하여 별도로 위성방송법을 제정하는 방법, 현행 방송법을 개정하여 지상파방송과 뉴미디어방송의 공통사항을 규정한 기본법적 성격을 부여하되, 방송매체별로 세부내용을 규정한 별도의 위성방송법을 제정하는 방법, 현행 방송법 및 종합유선방송법 등을 실질적으로 통합하고, 그 가운데 위성방송법의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한 통합방송법을 제정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⁹³⁾

우리 정부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통신관계법과 방송관계법의 체계를 통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우리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방송매체별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는 현행 방송관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통합하는 통합방송법의 제정방향으로

93)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유선과 무선의 구분을 전제로 지상파방송·위성방송 대 종합유선방송의 규제구조를 법제화하는 방법, 기존의 미디어(지상파방송) 대 뉴미디어(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의 대칭구조로 규제구조를 법제화하는 방법이 지적되기도 한다(방석호, 미디어법학, 법문사, 1995, 410~411면). 또한 그는 첫 번째의 방법은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이 모두 전파자원을 이용한다는 점, 정도의 차이는 별론하고 불특정다수에 대한 방송으로서의 동일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공통점을 논리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지만, 기존의 방송법내에 병존하는 양사업자의 경제적 이해가 쉽게 충돌하기 때문에 하나의 법률로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의 방법은 자본의 논리, 경쟁의 논리를 담고 있는 위성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양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산업적 성격을 살리고, 양자의 협력관계강화를 통하여 뉴미디어산업전체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종합유선방송망과 영상프로그램시장이 잘 발달하지 못한 우리의 상황에서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고 있다.

예컨대, 위성방송법제와 관련하여 1993년 그 당시의 공보처는 체신부가 제안한 '위성통신법(안)'에 대응하여 '위성방송법(안)'을 제안함으로써, 처음에는 기존의 방송관계법과 다른 별도의 위성방송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자 하였다.⁹⁴⁾ 즉, 1993년 7월에 공보처는 기존의 방송법을 모태로 하여 위성방송의 사업자허가 및 방송편성 등의 위성방송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위성방송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청회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공청회의 지배적인 의견은 공보처가 제안한 '위성방송법(안)'의 전반적인 내용이 기존 방송법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기존의 방송법을 개정하여 그곳에 명시된 방송의 정의에 위성방송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유사한 내용의 법을 공보처와 체신부가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두 법안은 모두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였다. 그 다음해인 1994년, 공보처는 위성방송법의 제정을 통한 방송법개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초기의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방송관계법의 전면적인 개정이라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보처는 방송관계법의 개정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따른 사회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 방송개발원 등의 참여를 통한 방송정책의 수립 및 방송관계법의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하였다. 즉, 그 당시의 공보처는 방송위원회, 방송개발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실현가능한 방송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그 동안 제기된 방송관계자 및 단체의 의

94) 이것은 통신방송관할기관의 2원체제하에서 전파정책 및 행정을 수행하는 당시의 체신부(현재 정보통신부)와 방송정책 및 행정을 수행하는 공보처의 부처간 의견대립에서 파생한 현상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통신과 방송의 관할에 대한 이원적 구조는 1961년 '전파관리법'을 제정하면서 그 당시 무선국 개설시에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요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공보부가 방송국 개설의 허가를 공보부장관의 관할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이후, 전파행정은 현재의 정보통신부의 소관으로, 방송행정은 공보처의 소관으로 유지되다가 최근 정부조직법의 개정에서 문화관광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현재, 신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공보처가 폐지됨으로써 종래 공보처의 방송행정사무가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어 있으나 여야합의에 따라 개정된 정부조직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방송행정에 관한 사무는 방송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이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설치되면 그곳으로 이관되도록 되어 있다).

건을 종합·정리하여 1995년 7월에 국가의 중장기방송청사진인 <선진방송5개년계획(안)-1995년~1999년->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공보처는 이 계획안을 토대로-1995년 9월에 통합방송법(안)을 마련, 동년 10월 한달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동년 11월에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전의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을 통합하여 이를 단일방송법체제로 하며, 규제완화를 통하여 뉴미디어·멀티미디어시대에 부응하는 한편,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취지로 하는 방송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각 기관의 공식의견을 개진하였고, 종합유선위원회 노동조합 또한 위원회의 공식의견과는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한국프로듀서연합회 역시 나름대로의 입장을 공개세미나(1995.9.25)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동년 12월 4일에는 통합방송법의 국회통과저지를 위한 방송4사의 파업찬반투표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또한 입법예고의 시점을 전후하여 정당측에서도 많은 관심이 표출되었는데, 동년 10월 9일에 국민회의 소속 정상용 의원의 명의로 방송법쟁점에 대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었고, 당시의 야당인 국민회의·민주당·자민련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동년 11월 22일에 단일 방송법(안)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통합방송법과 관련한 여러차례의 공청회 개최 및 관련단체의 의견청취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토대로 한 방송법 초안을 마련하고, 47개의 시민단체·종교단체·노동조합·직능단체 등의 연대모임인 방송개혁국민회의, 한국프로듀서연합회, 방송위원회 등과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법안을 확정된 것이다.⁹⁵⁾

결국, 야당의 단일 방송법(안)의 제출과 더불어 그 심의과정에서의 여야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공보처의 1995년 방송법(안)은 폐기되었다. 그래서 공보처는 그 다음 해, 1996년 11월 종전의 방송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를 허용하고,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법안을 정부안으로 최종 확인하여 입법화시키려 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주된

95) 이상식, 케이블TV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폐기된 통합방송법을 중심으로-, 연세커뮤니케이션즈 1996 No.4(1996/4),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32면.

이유는 방송이념의 대립(공영모델과 산업모델의 대립)과 뉴미디어방송 도입과정의 복잡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⁹⁶⁾ 즉, 이것은 기존의 방송에 대한 사회적 논쟁의 핵심이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상업방송의 도입에 따른 '방송의 공공성 확보'라는 사회적 가치관의 갈등에 머물렀으나 다채널 다미디어 시대의 방송은 기존의 사회적 가치관 이외에도 방송의 경쟁력 및 다양성 확보, 방송산업의 육성 등과 같은 상호 양립되기 어려운 사회적 가치관의 조화를 요구하고, 또한 정부의 정책과정의 개방화로 인하여 기존에는 정책형성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이해집단들(예컨대, 재야언론단체 및 방송노동조합 등)이 이제는 정책결정과정과 집행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존의 방송관련이해집단들(예컨대, 정치인, 방송종사자) 이외에도 신문사, 일반기업 등이 새로이 조직화되어 그들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 통합방송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정에 기인하고 있다.⁹⁷⁾

3. 現行 放送關係法の 構造와 改編方向

(1) 現行 放送關係法の 構造

현행 방송관계법은 방송매체별·사업자별로 구분되어 별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즉, 지상파방송을 규율하는 방송법 및 전파법, 종합유선방송을 규율하는 종합유선방송법, 중계유선방송을 규율하는 유선방송관리법으로 존재하고, 위성방송을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 그리고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은 문화관광부(구 공보처)가, 전파법과 유선방송관리법은 정보통신부가 각각 관할하고 있다.

(가) 地上波放送(放送法과 電波法)

방송법은 방송의 공공성과 규제를 중심으로 지상파방송을 규율하고 있으며,

96) 정용준, 바람직한 위성방송의 정책방향을 위한 제언, 위성방송추진협의회 1회 세미나 <바람직한 위성방송 정책> : 세미나자료 및 녹취록(1997.2.12), 위성방송추진협의회, 71~72면.

97) 황상재, 문민정부 방송정책의 문제점과 교훈 -통합방송법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여의도클럽회보 통권 제15호(1997/12), 여의도클럽, 67~68면. 황상재 교수는 이외에도 통합방송법 통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그 당시 공보처의 입법의도에 대한 불신, 공보처와 정보통신부간의 부처이기주의 등을 지적하고 있다.

전파법은 무선국의 일종인 방송국의 허가와 관련하여 지상파방송을 규율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법은 '방송'을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과 교양·음악·오락·연예등을 공중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방송국이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동법 제2조제1호)으로 규정하여, 방송의 개념을 그 내용물과 무선통신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방송법은 '방송국' 개념에 대하여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의 정의를 그대로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동조 제3호), 이러한 방송국의 경영과 사업의 주체는 '방송법인'이라는 별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동법 동조 제4호). 예컨대,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전파법 제2조 제5호)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의 사회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 설비중심의 개념이다. 또한 무선국의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공사설계가 전파법 제3장이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주파수의 할당이 가능할 것, 당해업무를 유지할 만한 재정적 기초가 있을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개설기준에 합치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전파법 제6조제3항). 특히, 방송업무(또는 위성방송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의 방송국은 연주소를 갖추어야 한다(전파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 여기에서 '연주소'란 "방송사항의 제작·편성·조정"에 필요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전파법시행령 제2조제98호). 결국, 지상파방송은 무선국허가와 연주소, 즉 하드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갖춘 자만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지상파방송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추천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허가를 부여한다(전파법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6호). 허가유효기간은 3년이다(전파법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 그리고 지상파방송의 운영과 편성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회의장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3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으로 구성된 방송위원회가 심의·결정한다(방송법 제12조, 제17조). 또한 외국에서 제작된 방송순서를 방송의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방송국은 보도에 관한 방송순서를 제외하고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한다(방송법 제40조의2).

넷째, 지상파방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특

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방송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이외에는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동일한 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그 총수의 30/10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방송법 제6조제1조).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그 계열기업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사, 통신사는 방송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방송법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더 나아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49/100를 초과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무선국의 개설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을 할 수 없다(전파법 제5조제1항).

다섯째, 지상파방송을 통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국에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방송법 제41조), 이에 대한 분쟁의 중재 및 그 절차, 심판 등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해결된다(방송법 제42조).

(나) 綜合有線放送(綜合有線放送法)

종합유선방송법은 지상파방송을 규율하는 방송법과 달리 제한적 상업성의 논리를 수용하여 종합유선방송을 규율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유선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은 "영상(문자 및 정지화상을 포함한다)·음성·음향등을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다채널방송"을 말하는데(동법 제2조제1호), 이것은 종합유선방송국, 프로그램공급업자, 전송망사업자라는 3종류의 사업자로 구분되어 독점적인 상호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예컨대, 종합유선방송국(SO : System Operator)은 종합유선방송을 편성·운영·송출하기 위한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공급업자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종합유선방송을 송출하고, 프로그램공급업자(PP : Program Provider)는 종합유선방송국(SO)에게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며, 종합유선방송을 전송하는데 필요한 선로설비(전송설로시설)의 설치·운영은 전송망사업자(NO : Network Operator)가 담당하

고 있다. 또한 이러한 종합유선방송의 운영 및 프로그램편성 등에 대하여는 방송관계전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둘째, 종합유선방송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허가한다.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의 목적과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국가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종합유선방송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종합유선방송국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을 것,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의 설치계획이 합리적이고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며,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출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동법 제7조). 허가유효기간은 3년이다(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0조).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국허가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종합유선방송구역을 전담하여 운영하는 권리(지역사업권)를 부여할 수 있으며(동법 제8조제1항), 이 경우에 문화관광부장관은 연간 총수익의 10%범위내에서 종합유선방송국의 재정상태·수신자의 수 및 수신료 등을 참작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사업권료로 징수할 수 있다(동법 제8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또한 종합유선방송국의 채널은 방송분야의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구성·운영되어야 하며, 특정분야에 편중되어서는 안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채널을 비치하여야 함과 아울러 지역채널을 운영할 수 있다(동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 그리고 종합유선방송국은 외국에서 수입한 방송프로그램이 전체 방송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편성비율을 매주 전체방송시간 또는 매주 채널별 전체방송시간의 30/100(과학기술·교양·스포츠프로그램의 경우에는 50/1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에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동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방송국인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방송법에 의한 교육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이 종합유선방송국을 통하여 방송을 동시재송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방송구역이 당해 종합유선방송국의 방송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유선방송국은 동시재송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무선방송국이 가지는 저작권법 제69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아울러 종합유선방송국은 정당한 이유없이 관할종합유선방송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의 역무제공을 거부할 수 없고, 수신료 등의 역무제공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법 제28조).

셋째, 프로그램공급업자(PP)는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문화관광부장관이 허가한다. 이 경우, 프로그램공급업의 목적과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프로그램공급업자는 종합유선방송국에 공급하는 방송프로그램의 20/100의 범위내에서 방송프로그램 분야별로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이상(동법 제1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3조)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동법 제13조).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은 프로그램공급업자의 허가시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그 전문성과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공급분야를 지정할 수 있으며(동법 제14조), 프로그램공급업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에 공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동법 제15조제1항). 또한 프로그램공급업자가 외국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을 수입하거나 외국의 방송을 중계(재편집하여 중계하는 경우도 포함)하고자 할 경우, 외국의 프로그램제작업자와 공동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 그러나 전자의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그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 또는 이익을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음란·퇴폐·폭력 등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국제적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입 또는 중계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외국의 방송프로그램공급시장의 여건 등을 참작하여 특정국가의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이 집중적으로 수입 또는 중계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기간 계속하여 방송되는 외국의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은 수회로 나누거나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프로그램공급자와 공동제작상대국의 프로그램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하고, 우리나라의 프로그램공급자가 당해 공동제작프

로그래밍의 제작비용의 30/100이상을 출자하며, 공동제작프로그램이 외국의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에 대한 그 수입 또는 중계의 불승인요건(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만 승인을 할 수 있다.

넷째, 전송망사업자(NO)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는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전송망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국의 방송구역에 전송선로시설을 설치하여 종합유선방송국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동법 제18조), 종합유선방송국은 전송망사업자가 설치한 전송선로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제1항). 그리고 전송망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전송선로시설의 설치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년 이내(동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이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그 기간내에 전송선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의 범위내에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시설설치기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전송망사업자가 전송선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은 그 확인결과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 아울러 전송망사업자는 전송선로시설이용료 등의 이용약관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료가 적정한지, 전송망사업자와 전송선로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공평하고 명확한지,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아니한지를 검토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송선로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

다섯째, 종합유선방송법은 방송의 수평적·수직적 겸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종합유선방송국·프로그램공급업·전송망사업의 상호겸영(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포함), 종합유선방송국의 상호겸영, 종합유선방송국과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지상파방송국)의 상호겸영이 금지된다(동법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그리고 일간신문사와 통신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 특정이념 또는 사상을 지지·옹호하는 정당·종교단체도 종합유선방송국을 경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동법 제4조제4항 내지 제6호). 또한 종합유선방송국(SO), 프로그램공급업자(PP), 전송망사업자(NO),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일간신문사·통신사,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종합유선방송국을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동법 제4조제9항).

여섯째, 프로그램공급업중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동일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은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그 총수의 30/10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동법 제4조제7항).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법인(지상파방송국)의 주식 또는 지분을 5/100이상 소유한 자는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법인을 경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으며(동법 제4조제8항), 이러한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도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법인을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동법 제4조제9항). 또한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법인의 이사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그 총수의 1/3을 넘지 못한다(동법 제4조제11항).

일곱째, 위 다섯째와 여섯째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동법 제4조제10항).

여덟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종합유선방송국·프로그램공급업·전송망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동법 제5조제1항). 또한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기부금·찬조금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상의 출연 또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 제외한 프로그램공급업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15/1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산상의 출연 또는 출자를 할 수 있다(동법 제6조).

아홉째, 종합유선방송을 통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종합유선방송국에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분쟁의 중재 및 그 절차, 심판 등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해결된다(동법 제45조).

(다) 中繼有線放送(有線放送管理法)

유선방송관리법 또한 지상파방송을 규율하는 방송법과 달리 제한적 상업성의 논리를 수용하여 중계유선방송을 규율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선방송관리법상 '유선방송'은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문자 및 정지화상 포함)을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것으로서 중계유선방송과 음악유선방송"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중계유선방송'은 "전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하는 무선국(방송국)의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것"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제1호, 제2호).

둘째, 유선방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3조제1항).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동법 제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유선방송사업자의 지위는 승계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예컨대, 이러한 지위는 유선방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유선방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허가를 받음으로써, 유선방송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 및 양수자가 연명으로 양도·양수허가를 받음으로써 승계되는데, 이 경우 상속 또는 양도에 의하여 유선방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 규정들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셋째, 유선방송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방송사업허가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신청을 받은 정보통신부장관은 유선방송시설설치계획이 타당한지, 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있는지, 유선방송사업의 지역적·사회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당해 유선방송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동법 제5조제1항, 제2항), 그 심사결과 당해 유선방송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선방송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유선방송사업의 구역, 유선방송시설의 준공기한, 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사용할 채널, 운용허용기간을 지정하여 임시허가를 한다(동법 제7조제1항). 그리고 유선방송사업의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준공기한내에 유선방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신고를 하여야

하고, 준공신청을 받은 정보통신부장관은 준공검사를 하며(동법 제8조), 준공 검사결과 유선방송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하여야 하고, 동시에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넷째, 유선방송사업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약관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유선방송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수신료가 적정한지, 수신료가 정률 또는 정액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유선방송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취급을 하는 내용은 아닌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동법 제13조). 또한 유선방송사업자는 허가내용 및 이용약관에 따라 성실하게 유선방송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구역안에서 유선방송역무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동법 제14조). 아울러 유선방송사업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공지사항등을 송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계유선방송의 경우에는 방송국의 방송에 한한 중계송신(녹음·녹화하여 중계송신하는 경우 포함), 음악유선방송의 경우에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매·배포되는 음반(영상 제외)의 송신에 한하여 송신하여야 하고(동법 제15조), 국가의 안녕질서를 위해하거나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 특정한 이익·집단·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옹호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보도·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방송국의 방송중계 제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경시하거나 불법행위를 고무·선동하는 내용, 건전한 국민의 정서와 가정생활의 순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어린이 및 청소년의 선도에 유해한 내용, 국어순화 및 건전한 언어생활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사치성 소비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하여 공연이 금지된 음악 등을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다섯째, 외국인,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나 외국정부는 기부금·찬조금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출연을 하지 못한다. 다만, 유선방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동법 제16조).

여섯째, 유선방송사업자 또는 그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유선방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동법 제20조). 아울러 정보통신부장관은 동법에서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특히 유선방송시설의 검사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 또는 무선국관리사업단에 위탁할 수 있다(동법 제26조).

(라) 衛星放送(電波法上の 關聯規定)

위성방송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은 없지만, 방송위성업무, 우주국 등과 관련하여 전파법이 규율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파법상 '무선국'은 "방송청취를 위하여 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 무선전신·무선전화 기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인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동법 제2조제4호, 제5호). 그리고 전파법시행령은 무선국이 행하는 업무의 분류와 관련하여 방송업무와 위성방송업무를 구분한다(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제18호) 즉, '방송업무'는 "공중이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를, '위성방송업무'는 "공중이 직접 수신(개별수신과 공동수신 포함)할 목적으로 우주국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무선통신업무"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개별수신'은 간단한 가정설비 특히 소규모의 안테나를 가지는 수신설비로 위성방송업무를 행하는 우주국으로부터 발사된 전파를 수신하는 것을, '공동수신'은 경우에 따라 복잡화될 수 있고, 개별수신용보다 큰 안테나를 가지는 수신설비로 위성방송업무를 행하는 우주국으로부터 발사된 전파를 수신하는 것과 한 장소에 있는 공중의 집단에 의하거나 제한된 지역에서의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무선국의 분류와 관련하여 방송국, 우주국, 지구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제26호, 제27호). 즉, '방송국'은 "방송업무 또는 위성방송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을, '우주국'은 "지구대기권의 주요부분밖에 있거나 밖으로 나갈 목적이거나 또는 밖에 머물러 있었던 물체상에 설치되어 무선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을, '지구국'은 "지구의 표면이나 지구대기권에 개설하여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을 말

한다.

둘째,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자(시설자)는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영하거나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동법 제29조의6). 이러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시설자는 정보통신부장관령이 정하는 무선설비임대승인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받은 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신청이 무선설비의 효율적인 이용에 적합한지, 전파이용질서의 유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승인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특히 필요한 때에는 그 임대기간 및 사용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60조의2). 그리고 이러한 무선국의 무선설비중 위탁운영 또는 공동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선국의 공중전주 및 전원설비, 송신설비, 시설자가 동일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 기타 공공의 안전을 위한 무선국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만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 전파가 능률적으로 방사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이미 시설된 무선국 또는 가허가를 받은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무선설비로부터 방사되는 전파가 인근 주택가의 방송청취 등에 전기적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무선설비를 위탁운영하거나 공동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합의서 또는 공동사용계약서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신청이 동법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의 요건(무선설비의 임대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60조의3).

셋째, 무선국의 허가신청은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송신설비의 설치장소별로 하여야 하고, 우주국 또는 지구국에서 종별 2 이상의 무선국의 업무를 함께 행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종별 2이상의 무선국의 업무를 함께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무선국으로 허가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항). 특히, 방송국의 허가신청은 위 규정이외에도 표준방송 등의 종별에 따라 주파수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주파수로

다수의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표준방송 등에 대하여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21조제5항). 그리고 위성방송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의 방송국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위성방송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파수의 합리적 배분 등 기술적 조건을 붙일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무궁화위성을 통한 위성방송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현재 무궁화위성(우주국)을 전기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이 소유·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선설비(중계기)를 임차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다. 결국, 현행 방송관계법의 구조하에서는 위성방송을 위한 새로운 방송사업자 개념의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다.

(2) 放送關係法 構造改編의 必要性 및 基本方向

(가) 放送關係法 構造改編의 必要性

오늘날의 방송환경은 기존의 방송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현행 방송관계법의 구조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뉴미디어의 발달과 방송·통신의 융합화 등은 방송개념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등과 같은 뉴미디어의 등장과 방송·통신의 융합화는 종합유선방송망 및 위성방송망을 이용한 공중 이외의 분배방식, 쌍방향의 방송신호를 전달하는 방식 등을 창출함으로써, 이들을 새로운 방송개념에 수용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공중을 대상으로 방송신호를 전달하는 무선통신, 일방적 전송을 특징으로 하는 기존의 방송개념에 대한 확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보화사회의 확장, 방송시장의 개방화·국제화에 따라 기존의 방송개념은 문화적, 정치적 함의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경제적, 기술적, 산업적 함의를 가진 사회적 단위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방송서비스산업의 발달, 방송의 다원화현상은 그 규제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다매체·다채널시대의 도래는 기존의 사전규제에 대한 정당성을 상실케 하고 있다.

넷째, 새로운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매체의 등장, 그리고 이에 따라 등

장하는 다양한 방송사업자 상호간 및 수신자와의 관계에서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 향후 예상되기 때문에 방송법치주의관점에서 그것들을 정책적으로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는 방송법제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방송관계법 구조개편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에 궁극적으로는 통신관계법과 방송관계법을 통합한 법제의 마련이 필요하지만, 과도기적 변혁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방송현실을 고려할 때에 방송매체별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는 현행 방송관계법을 우선적으로 통합하는 입법방식을 채택하였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즉, 우리 정부는 1995년부터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을 포괄하는 통합방송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통합방송법은 뉴미디어의 도입에 따른 방송의 이념, 방송사업자의 개념, 방송사업자의 허가절차, 방송산업의 소유와 참여, 방송규제기구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이해대립에 봉착하여 지금까지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특히 위성방송과 관련하여 그 근거법이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위성방송사업자의 선정 및 채널배분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1995년 8월과 1996년 1월에 각각 발사된 무궁화위성 제1호기·제2호기의 공전, 위성방송관련산업의 발전을 위축시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예컨대, 사업자측면에서 무궁화위성 제1호기·제2호기의 방송중계기를 공전시킴으로써, 하루 평균 2,100만원(기회비용환산의 경우 4,800만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하고 있다.⁹⁸⁾ 그리고 방송산업의 국가경쟁력측면에서도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이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이미 고성능 통신위성을 통한 고품질·고음질의 다채널위성방송서비스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2,000년대에는 700여개의 위성채널이 출현할 예정이고, 아울

98) 예컨대, 그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궁화위성 제1호기·제2호기의 방송중계기에 대한 투자비는 전체투자비 1,474억원의 46%에 해당하는 678억 4백만원이고, 이를 연간 투자비로 환산하면 96억 2백만원이다. 그리고 무궁화위성 24개의 방송중계기중 상용화가가능채널은 20개, 그 중에서 KBS와 EBS가 각 2개의 채널을 시험방송으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미활용상용화가가능채널은 16개이기 때문에 하루 평균 2,100만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미활용상용화가가능채널의 채널임대료(기회비용)를 고려하면, 하루 4,800만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하게 된다(조진영, 위성사업자의 국내위성 방송서비스사업 활성화전략, 국내위성통신 및 방송서비스 활성화방안에 관한 세미나(1997.11.4),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69면).

러 국제적으로 방송시장의 개방화도 거세게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지털위성방송 수신기시장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며, 무차별적으로 대량 유입되고 있는 외국위성방송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무궁화 위성 방송사업의 정상케도진입을 위한 통합방송법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放送關係法 構造改編의 基本方向

오늘날의 급변하는 방송환경을 수용하고, 동시에 뉴미디어의 도입에 따른 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련하게 될 통합방송법은 그 제정시에 다음의 정책사항이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⁹⁹⁾

첫째, 기존의 뉴미디어정책은 방송하드웨어중심에서 방송제작과 유통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뉴미디어정책은 기존의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에서의 하드웨어중심의 산업적인 논의와 함께 뉴미디어의 네트워크나 서비스규정에서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뉴미디어정책은 디지털 다매체·다채널하에서 방송영상물의 육성차원을 넘어서서 영상물과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및 육성의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즉, 새로운 미디어기술의 다원적인 서비스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방송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뉴미디어간의 상호연계방안은 경쟁 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설정하여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예컨대, 뉴미디어의 정책담당자는 주파수할당, 방송인허가 등의 측면에서 디지털 위성방송간,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간 등에 보다 상호조정적인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뉴미디어 전반을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기구의 단일화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뉴미디어정책은 공공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예컨대, 디지털 지상파방송에 있어서 공영방송은 공익성의 유지·강화를 위한 운영재원의 마련이 중요하고, 민영방송은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프

99) 이상훈·이만제·강태완, 뉴미디어종합발전을 위한 매체별 정책과제연구, 한국방송개발원 (1997.11), 201~204면을 참조.

로그그램 제작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의 마련이 중요하다. 그리고 종합유선방송에 있어서는 방송영상물의 주요한 유통시장으로서 양질의 프로그램 확보, 지역매체적 특성의 최대한 활용, 멀티미디어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개발·육성을 위한 방안의 마련이 중요하고, 위성방송에 있어서는 다채널이라는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방송영상물의 제작, 유통산업의 발전을 유인하는 정책과 이를 통한 국내의 문화정체성 보호 및 대외적인 영상시장의 개척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의 마련이 중요하다.

4. 衛星放送法制의 主要爭點과 法的 分析

이러한 뉴미디어정책의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통합방송법 제정시에 제기되는 위성방송법제의 주요쟁점을 이하에서 분석한다. 특히, 1996년 구 공보처가 마련한 정부입법안으로서의 통합방송법(안)과 박계동의원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의원입법안으로서의 단일방송법(안), 그리고 최근 1998년 정부여당인 국회의가 공개한 통합방송법(안)을 중심으로 고찰한다.¹⁰⁰⁾

(1) 衛星放送과 放送法の 理念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규율하는 기존의 방송법은 '전파의 희소성'과 '사회적 영향력'에 기초하여 방송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념의 제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방송사업자의 선정, 운영방법, 프로그램의 편성 및 수급, 규제기관에 이르는 방송의 전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 위성방송을 수용하고자 하는 통합방송법의 제정에 있어서는 기존의 '공익성'이라는 이념, 그 이상의 것을 담아야만 할 것이다.¹⁰¹⁾

이러한 뉴미디어의 도입과 관련하여 그 동안 통합방송법의 입법과정에서는 방송이념에 대하여 크게 세가지의 모델이 제시되었다.

100) 이하에서는 통합방송법의 명칭과 관련하여 1996년 공보처가 마련한 법안은 '공보처(안)'으로, 박계동의원 등이 마련한 법안은 '의원단일입법(안)'으로, 1998년 국회의가 마련한 법안은 '국민회의(안)'으로 통일한다.

101) 황상재, 위성방송관련 법조항의 문제점 검토-공보처가 제안한 「방송법(안)」을 중심으로-, 연세커뮤니케이션즈 1996 No.4,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1996.4), 25면.

첫째, 공영모델론이다. 이것은 방송환경이 아무리 급변해도 여전히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공영모델론은 90년대에 접어들어 지역민방,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의 시작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증가하는 다채널이 초래할 저질 방송프로그램의 양산, 외화수입의 급증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공영모델론의 대표적 입장인 '공영방송발전연구회'의 보고서(1994)는 방송의 기초를 공영방송으로 가져 가고, 시장개방과 기술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시장원리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른바 '공영적 공민영모델'을 주장하였다.

둘째, 산업모델론이다. 이것은 뉴미디어의 도입을 통하여 그 동안 수세적이었던 방송프로그램의 수출이나 국내영상산업의 진흥 등의 적극적인 전략으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특히, 산업모델론의 대표적 입장인 '2000년방송정책연구위원회'의 보고서(1994)에서는 이를 위하여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등의 뉴미디어방송은 물론이고 지상파방송까지 포함한 방송전반을 산업적 가치로 인식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즉, 방송전반을 민영모델로 가져 가고, 일부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는 '민영적 공민영모델'을 주장하였다.

셋째, 이중적 공민영모델론이다. 이것은 지상파방송, 뉴미디어방송 모두에 기본적으로 공영성이 전제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상파방송은 공영적 가치위주로,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등의 뉴미디어방송은 산업적 가치위주로 운영할 것을 강조한다. 아울러 이것은 시청자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상파방송의 소유규제, 프로그램의 심의, 허가 및 허가갱신 등에 대하여는 엄격한 공영적 규제를 유지하되, 개인매체적 성격이 강한 뉴미디어방송에 대하여는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강조한다.¹⁰²⁾ 현재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¹⁰³⁾

그러나 그 동안 제시된 통합방송법(안)들은 그 목적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하였다는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그 내용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102) 정용준, 바람직한 위성방송의 정책방향을 위한 제언, 위성방송추진협의회 1회 세미나 "바람직한 위성방송 정책" 세미나자료 및 녹취록, 위성방송추진협의회(1997.2.12), 74~76면.

103) 방송연구소, 제14차 방송토론회 결과보고서 "새방송정책 종합워크숍 -방송정책 현안문제 종합정리-"(1998.4.17~4.18), 111면.

〈방송법의 이념〉

구 분	내 용
현행 방송법	-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방송법 제1조).
공보처(안)	- 이 법은 방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안 제1조).
국민회의(안)	-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안 제1조)
의원단일입법(안)	-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기능을 신장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안 제1조).

위성방송의 도입목적은 크게 방송문화적 측면과 산업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방송문화적 측면에서는 지구 상공으로부터 전파가 발사되는 위성방송서비스의 특성상 위성방송은 우리나라의 방송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 즉, 국내방송의 해외송출, 종합유선방송망이 부설되지 않았거나 난시청지역에 종합유선방송·지상파방송을 전송함으로써 보편적 방송서비스의 보급을 통한 방송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업경제적 측면에서는 위성방송 관련산업에 미치는 전후방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위성방송은 디지털 다채널로 인하여 기존의 지상파방송을 규율하고 있는 공공성 논리의 근거로서의 '전파의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문화적 상품을 파는 하나의 비즈니스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위성방송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투자를 유도하고, 소프트웨어 등의 영상산업의 기반조성과 이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관련기기산업의 진흥과 고용창출,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21세기의 중요한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이 독점하던 방송환경하에서 허가 및 심의제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방송전반에 적용되던 기존의 공공성 이념은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과 같은 뉴미디어가 공존하는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방송 이념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방송의 공공성 이념을 포기할 수는 없는 바, 이러한 측면에서 통합방송법상의 방송 이념은 공공성과 산업성이 동시에 공존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2) 衛星放送과 放送 및 放送事業者의 概念

현행 방송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방송'을 프로그램의 성격(종합편성), 이용자의 특성(공중), 매체의 성격(방송국이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에 기초하여 규정하고(동법 제2조제1호), '방송국'을 전파법상의 '무선국' 개념으로 정의함과 동시에 방송국의 경영 및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방송법인'이라는 별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동법 동조 제3호, 제4호). 그리고 방송업무(또는 위성방송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의 방송국은 연주소를 갖추어야 한다(전파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 아울러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자(시설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영하거나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전파법 제29조의6). 결국, 현행 방송관계법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은 물론이고 위성방송의 경우에도 무선국허가와 연주소, 즉 하드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갖춘 자만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무궁화위성의 경우에 위성체소유자인 한국통신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자들은 한국통신으로부터 시설임차계약을 통하여 위성방송무선국을 갖추어야만 위성방송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무선국(우주국)소유자가 직접 방송사업을 하는 형태, 무선국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그 중계기를 임차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하는 형태, 중계기임대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위탁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하는 형태 등 다양한 사업자의 유형이 존재할 수 있고, 종합유선방송의 경우에는 무선통신이 아니라 유선통신이기 때문에, 통합방송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현행 방송법상의 방송 및 방송법인의 개념은 그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현행 방송관계법상 방송 및 방송사업자의 개념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방송관계법상 방송 및 방송사업자의 개념〉

구 분	내 용
방 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과 교양·음악·오락·연예등을 공중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방송국이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방송법 제2조제1호). - 종합유선방송이라 함은 영상(문자 및 정지화상을 포함한다)·음성·음향등을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다채널방송을 말한다(종합유선방송법 제2조제1호).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 전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하는 무선국의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것을 말한다(유선방송관리법 제2조제2호). ※방송 :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등을 송신하는 것(차단되지 아니한 동일구역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송신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제8호).
방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법인이라 함은 방송국을 경영하는 법인을 말한다(방송법 제2조제4호). - 종합유선방송국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공급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종합유선방송을 송출하는 사업체를 말한다(종합유선방송법 제2조제5호). ※프로그램공급업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국에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종합유선방송법 제2조제6호) ※전송망사업이라 함은 전송선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종합유선방송법 제2조제7호).

이것에 대하여 그 동안 제기된 법안들은 방송, 방송사업, 방송사업자의 구도를 다음과 같이 상정하고 있다.

첫째, 공보처(안)은 상위개념으로서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의 공통적인 특성에 기초하여 '방송'을 정의하고, 그 하위개념으로서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규정함과 동시에 방송사업자를 일반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일반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의 운영·관리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종합유선방

송의 운영·관리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일반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프로그램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보처(안)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이 볼 수 있는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전광판방송과 그 사업자를 인정하고 있으며(동법안 제2조제4호, 제5호, 제6호),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수신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전송·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전송망사업과 그 사업자를 인정하고 있다(동법안 제2조제7호, 제8호). 이 경우, 일반방송사업자는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문화관광부장관(구 공보처장관)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을, 전송망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동법안 제8조제1항 내지 제5항). 그리고 공보처(안)은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행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국내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국내·외 수신자가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방송프로그램을 기획·제작 또는 편성하여 외국의 인공위성의 무선국(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을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내위성방송사업과 별개로 외국위성채널사용방송사업을 인정하고 있다(법안 제8조제6항). 그 내용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공보처(안)상 방송 및 방송사업자의 개념〉

구 분	내 용
방 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제작 또는 편성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신자'라 한다)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법안 제2조제1호). 가. 지상파방송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 나. 위성방송 :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 다. 종합유선방송 :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행하는 다채널방송

구 분	내 용
방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할 목적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법안 제2조제2호). 가. 일반방송사업 : 전파법에 의한 방송국을 운영·관리하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종합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조정·송출하기 위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관리하며 제1호 다목의 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방송채널사용사업 : 일반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기획·제작 또는 편성하여 이를 일반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방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법안 제2조제3호). 가. 일반방송사업자 : 일반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전파법에 의한 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

둘째, 국민회의(안)은 공보처(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공보처(안)을 일부 수정·보완하고 있다. 예컨대,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의 상위 개념으로서 '방송'을 정의함과 동시에 그 하위개념으로서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방송'의 개념요소로서 '수신자'를 '시청자'로,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의 삭제, 그리고 위성방송의 정의를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에서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으로 규정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를 기존의 '일반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구분,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을, 위성방송사업자는 위성방송사업을 각각 관리·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들과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방송사업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공보처(안)의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을 함께 운영·관리할 수 있는 일반방송사업자 개념을

버리고,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을 각각 관리·운영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광판방송과 그 사업자를 인정하고 있으며(동법안 제2조제4호, 제5호, 제6호), 전송망사업과 그 사업자도 인정하고 있다(동법안 제2조제7호, 제8호). 이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에 등록을, 전송망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방송프로그램을 기획·제작 또는 편성하여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을 관리·운영하는 자로부터 채널을 임차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외국위성채널임차방송사업을 인정하고 있다(법안 제8조제1항 내지 제5항). 이것은 기존의 공보처(안)과 비교할 때에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의 허가에 대한 방송위원회 추천권의 부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은 방송위원회의 승인제, 그 밖의 것은 방송위원회에의 등록제로, 전광판방송사업자의 경우는 방송위원회에의 등록제로, 전송망사업자의 경우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내용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회의(안)상 방송 및 방송사업자의 개념〉

구 분	내 용
방 송	-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제작 또는 편성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시청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법안 제2조제1호). 가. 지상파방송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 나. 종합유선방송 : 전송·선로시설을 이용하여 행하는 다채널방송 다. 위성방송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

구 분	내 용
방 송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법안 제 2조제2호).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제1호 가목의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종합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조정·송출하기 위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제1호 나목의 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위성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제1호 다목의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방송을 하는 사업
방 송 사 업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법안 제2조제3호).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전파법에 의하여 지상의 무선국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전파법에 의한 인공위성의 무선국허가를 받은 자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자

셋째, 의원단일입법(안)은 방송을 공중파방송, 유선방송, 직접방송으로 구분하여 정의함과 동시에 그 상위개념으로서 '방송'을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방송사업자와 관련하여 기존의 하드·소프트동일체원칙을 벗어 던지고, 하드와 소프트웨어부분을 분리·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하드부분인 '방송국'은 무선설비개념에 입각하여 공중파방송국(특수방송국 포함), 종합유선방송국, 위성방송의 지상국으로 구분함과 동시에 그 경영주체를 '방송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부분인 '방송사업자'를 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승인을 받은 자로 규정함과 동시에 '방송사업'을 전파법에 의한 방송국을 관리·운영하지 아니하고 국내외의 방송국에게 방송프로그램의 송출을 위탁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종합유선방송국에 채널단위로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 방송광고영업을 대행하는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무선국으로서의 방송국(공중파방송국, 중

합유선방송국, 위성방송의 지상국)을 운영하는 방송법인과 무선국을 갖지 않고 방송사업(위탁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프로그램공급업, 방송광고영업대행사업)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방송법인은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에 따른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설허가를 받아야 하고, 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8조제1항, 제2항 전단). 이와 더불어 외국의 인공위성중계기를 임차하여 국내외를 대상으로 방송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내위성방송사업자와 별개로 외국위성중계기임차방송사업자를 인정하고 있다(동법안 제8조제2항 후단). 그 내용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의원단일입법(안)상 방송 및 방송사업자의 개념〉

구 분	내 용
방 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이라 함은 영상(문자, 기호 및 정지화상 포함)·음성·음향등을 기획·제작 또는 편성하여 공중에게 송신 또는 전파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법안 제2조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중파방송 : 지상의 무선국 또는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 °유선방송 : 전송선로시설이나 마이크로웨이브등을 통해 행하는 방송 °직접방송 : 공공장소에서 전광판등 다중이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통해 행하는 방송 ※ 특수방송이란 종교방송, 교통·기상방송, 대외방송등과 같이 전문적 방송을 수행하기 위해 허가받은 방송을 말한다(법안 제2조제2호).
방 송 국 (방송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국이라 함은 전파법에 의해 허가를 받고 '방송'을 행하는 공중파방송국(특수방송국을 포함한다), 종합유선방송국, 위성방송국의 지상국을 말한다(법안 제2조제3호). - 방송법인이란 방송국을 경영하는 법인을 말한다(법안 제2조제4호).
방 송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업이란 전파법에 의한 방송국을 관리·운영하지 아니하고 국내외의 방송국에게 방송프로그램의 송출을 위탁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종합유선방송국에 채널단위로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 방송광고영업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법안 제2조제5호).
방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업자란 방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허가·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법안 제2조제6호).

이상의 법안들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성방송과 같은 뉴미디어의 도입에 따른 방송 개념의 새로운 정립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의 방송법이 방송을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과 교양·음악·오락·연예등을 공중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방송국이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으로, 종합유선방송법이 종합유선방송을 “영상·음성·음향등을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다채널방송”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각 방송법안들은 하나의 정의를 통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통합방송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현행 방송법과 같이 내용물의 열거를 통한 방송 개념의 파악은 그 자체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열거대상의 과다로 인하여 새로운 미디어를 수용할 때 마다 또 다른 정의를 내려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고, 또한 뉴미디어의 도입에서 나타나게 되는 무선·유선부분의 결합된 방송영역을 고려할 때에 ‘무선통신의 송신’만을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행 방송법상의 방송 개념에서 보면, 종합유선방송과 같은 ‘유선통신의 송신’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에 따라 각 방송법안들은 통합방송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방송 개념의 정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송 개념의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에 세 가지 유형이 상정되었다.¹⁰⁴⁾ 예컨대, ‘프로그램의 전송’이라는 포괄적으로 규정한 정의, ‘무선에 의한 프로그램의 전송’이라는 기술적으로 전송방식을 무선에 한정하여 규정하는 정의, ‘일반 공중에 의한 직접수신’ 목적을 강조하여 규정하는 정의 등이 그것이다. 첫 번째의 방식은 프로그램의 전송수단이 지상파방송이든, 위성방송이든, 종합유선방송이든 구분없이 모두 방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한다. 두 번째의 방식은 무선에 의한 것만이 방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유선방송은 방송이 아니고, 또한 위성방송의 경우에도 수신기를 통한 직접수신은 방송에 해당하지만, SMATV·SCN방식의 위성방송은 방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게 된다. 세 번째의 방식은 지상파방송·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구분없이 일반 공중의 직접수신을 목적으로 제공되면 방송에 해당하지만, 유료방송의 경우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전송방식을 택하든지 방송으로 볼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방송 개념은 그 적용상 많

104) 정윤식·한진만·김국진, 방송발전장기전략수립, 통신개발연구원(1993.12), 40~41면.

은 변수를 가지고 있고, 또한 새로운 방송서비스영역의 등장은 더욱 방송개념의 모호성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괄하는 통합방송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방송법안들은 이러한 사정에 기인하여 진지한 노력을 경주한 흔적이 보인다.

공보처(안)과 국민회의(안)은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의 상위개념으로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제작 또는 편성',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시청자) 포함)이 직접수신하도록 할 목적',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송신'을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국민회의(안)은 두 번째 구성요소중 '직접수신하도록 할 목적'을 삭제함). 이것은 기존의 공중, 송신이라는 구성요소에다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제작 또는 편성'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함으로써 단순 통신행위와 구별함과 동시에 방송 개념의 확장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방송·통신을 분리, 권장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이것은 그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에 현행 방송관계법의 입법취지를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법안들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라는 부분을 추가로 삽입함으로써 방송서비스의 전달경로를 제한한 것은 기술발달에 따른 매체의 다양화, 즉 정보전달방법 자체의 변화를 생각할 때에 다소 특이하게 생각되고,¹⁰⁵⁾ 아울러 방송의 범주로서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과 동시에 현재 통신영역에 해당하는 전광판방송만을 추가적으로 국한함으로써 기타 유사방송, 즉 경계영역적 서비스(인터넷방송 등)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그 법적 적용이 유연하지 못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시법적 성격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다.¹⁰⁶⁾

의원단일입법(안)은 공중파방송, 유선방송, 직접방송의 상위개념으로서의 방송 개념을 "영상·음성·음향 등을 기획·제작 또는 편성하여 공중에게 송신 또는 전파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현행 저작권법상의 방송 개념에 "기획·제작 또는 편성"이라는 방송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가미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것은 공보처(안) 및 국민회의(안)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공중, 송신이라는 구성요소에다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제작 또는 편성'이라는 메시지를

105) 방석호, 방송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들의 재검토, 입법조사연구 통권 제240호(1996.8), 32면.

106) 유의선, 통합방송법과 방송구조조정, '98 한국방송학회 제1차 쟁점과 토론 "새정부 방송정책 방향 : 종합평가와 제언", 한국방송학회(1998.4.10), 11면.

강조함으로써 단순 통신행위와 구별함과 동시에 방송 개념의 확장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방송·통신을 분리, 관장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전광판 등 다중이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통하여 행하는 방송, 즉 직접방송을 그 하위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그러나 동법안은 기존의 '지상파방송'과 차원이 다른 '위성방송'을 달리 정의하지 않고, 지상파방송과 공통하는 무선전송방식에 기초하여 '공중파방송'으로 묶어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위성방송사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보처(안) 및 국민회의(안)과 달리 '공중(불특정다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유료방송의 경우에 방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통합방송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국내외 관련법규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107) 통신·방송의 융합에 대비한 경계영역서비스에의 적용상 유연성을 유지하며, 기술발전에 따른 통신위성과 방송위성의 구분필요성이 상실되고 있는 국제적 상황을 반영함과 동시에 통합방송법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그 '방송' 개념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작권법상의 방송개념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방송의 특성인 '기획·제작·편성'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여 단순통신행위와 구별함과 동시에 그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발전에 대비한 매체전송수단의 다양화를 도모하며, 방송·통신의 융합에 대비한 유사방송의 수용가능성과 뉴미디어의 도입에 따른 유료방송에 대비하여 상위개념으로서의 방송을 정의하고, 그 하위개념으로서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유사방송을 정의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유사방송은 방송과 통신의 경계영역으로서 방송과 통신에 대하여 분리·규율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 범위결정은 방송·통신규제기구 상호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위성방송과 같은 뉴미디어의 도입에 따른 방송사업 및 방송사업자 구

107) 유럽의 '국경없는 텔레비전'지령('Television Without Frontiers' Directive)은 TV방송을 "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TV프로그램을 암호화하거나 암호화되지 않은 형태로 위성을 포함하여 케이블 또는 전파송신매체를 이용하여 최초로 송출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공중에게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방송사간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동도 포함된다. 그러나 텔레카피, 전자정보뱅크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처럼 개인의 요구로 정보나 다른 메시지를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a)).

도의 새로운 정립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를 연주소가 있는 무선국 개념으로 파악하여 송신과 프로그램 제작활동을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방송법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편성, 그리고 편성된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하는 업무가 동일한 조직체에서 행해지는 기존의 지상파방송과는 달리 위성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송출을 담당하는 사업자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는 사업자가 분리되기 때문에 통합방송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방송사업자 개념의 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공보처(안)은 무선국을 소유하면서 방송프로그램의 송출과 그 제작·편성을 담당하는 사업자로서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을 포괄하는 일반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설정함과 동시에 이들과 특정채널의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송출을 이들에게 일임시키고, 이들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새로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회의(안)은 공보처(안)의 일반방송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로 분리·구분함과 아울러 공보처(안)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개념을 기존의 종합유선방송법상의 프로그램공급업자(PP)와 달리 단순한 프로그램공급업자가 아니라 채널편성권을 가지지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의 성격을 강조한 것에 대비하여, 국민회의(안)은 위의 무선국 소유자들과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방송을 행하는 위탁방송사업자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방송법안은 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국위성채널 사용 및 임차방송사업자를 새로운 방송사업자로 추가하고 있다. 결국, 이들 방송법안은 약간의 뉘앙스상 차이는 있지만,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상의 종합유선방송국(SO)과 프로그램공급업자(PP)의 개념을 유추하고 있음에 특색이 있다고 할 것이다. 즉, SO개념을 살려 매체별로 일반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유형화하고, 동시에 PP개념을 확대하여 전매체에 공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통일화하고 있으며,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에 한하여 전송망사업자(NO)개념을 그대로 살리고 있는 것이다.

의원단일입법(안)은 무선국으로서의 방송국(공중파방송국, 종합유선방송국, 위성방송의 지상국)을 운영하는 방송법인과 무선국을 소유하지 않고 방송사업(위탁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의 프로그램공급업, 방송광고영업대행사업)을 행

하는 방송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하드·소프트동일체원칙을 벗어나 하드와 소프트웨어부분을 분리·규정하고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기존의 종합유선방송법상의 프로그램공급업자(PP)를 인정하여 새로이 설정된 위탁방송사업자와 구분하고, 동시에 방송광고영업대행사업자·외국위성중계기임차사업자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송사업 및 방송사업자의 구분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지만, 각각 몇 가지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공보처(안)의 경우에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을 포괄하는 일반방송사업자의 개념을 무선국중심으로 설정함으로써 무선국을 갖지 않은 방송사업자는 일반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를 구분·정의하고 있는 국민회의(안)도 마찬가지이다. 즉, 현행 전파법은 무선국을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동법 제2조 제5호)로 규정함과 동시에 무선국의 분류와 관련하여 동법시행령이 방송국, 우주국, 지구국을 규정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이에 따라 위성방송업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방송국, 우주국, 지구국을 모두 갖추고, 모든 무선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우주국과 지구국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한국통신만이 일반방송사업자(또는 위성방송사업자)로 되고, KBS 등을 포함한 모든 방송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전파법에 의거하여 무선국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통신으로부터 임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성방송무선국을 갖추고서 일반방송사업자(또는 위성방송사업자)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동법 제29조의6). 즉, 한국통신으로부터 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시설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위성방송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시설임차계약에는 우주국을 비롯한 송출지구국에 대한 모든 임차를 포함하는 바, 현재 디지털방식의 위성에 있어서는 채널단위의 지구국은 불가능하고, 최소한 중계기단위의 지구국이 상정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별도의 백업용 지구국의 소유에 따른 사회적 자원의 손실, 개별사업자의 별개 운용에 따른 우주국인 위성체의 기계적 부하 등과 같은 위험이 예상되어 현실적인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¹⁰⁸⁾

108) 조진영, 위성사업자의 국내위성 방송서비스사업 활성화전략, 국내위성통신 및 방송서비스

또한 위성방송시장은 현재 WTO기본통신협상의 결과, 해외지역 및 범세계위성의 합작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자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즉, 미국의 DirecTV·USSB, 일본의 PerfecTV 등과 같이 정부 또는 규제기관으로부터 위성서비스사업을 위한 주파수획득과 허가를 얻은 뒤, 그들의 재량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수많은 채널을 운용하는 형태의 사업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데이콤의 경우에도 오라이온 위성사업에 참여하여 중출력 통신위성(CS)을 통한 위성방송을 실시할 예정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내위성방송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위성방송사업자의 구도를 프로그램 공급사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개별 채널의 성격에 이르기까지 정부로부터 규제되는 형태로 구성하여 실제 시행상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될 소지가 높고, 외국위성을 통하여 국내위성방송사업을 행할 경우에는 정부 또는 규제기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사업자들의 위성방송사업이 추진된다든지, 해외사업자들의 통신위성을 이용한 국내시장대상의 방송실시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전개에 대하여는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의원단일입법(안)의 경우에 기존의 하드·소프트동일체원칙을 벗어나 하드와 소프트웨어부분을 분리·규정하고 있음은 높이 평가되지만, 프로그램공급업자의 지위를 기존의 종합유선방송법상의 프로그램공급업자(PP)와 같이 제한하고 있으며, 위성방송사업자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위성방송의 성패와 영상산업의 국제경쟁력확보의 여부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유통기반의 강화에 달려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성방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종합유선방송의 프로그램공급업자(PP)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제작자들이 자유롭게 위성방송에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프로그램유통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 법안은 기존의 종합유선방송국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프로그램공급업자(PP)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여 모든 방송국에 송출을 위탁하여 방송하는 위탁방송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종합유선방송국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자(PP)의 사업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영상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동시에 위성방송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법안도 또한 위성방송의

스 활성화방안에 관한 세미나(1997.11.4),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75면.

다양한 사업전개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는 공보처(안) 및 국민회의(안)과 동일하다.

따라서 통합방송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위성방송의 개방화, 위성방송사업자의 다양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위성방송사업의 구조를 고려한 방송사업 및 방송사업자의 개념이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위성방송사업자를 단순히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재송신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다수의 프로그램공급업자들로부터 공급되는 방송프로그램을 다양한 패키지형태로 수신자에게 제공하고, 통합적인 가입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신료를 징수·분배하며, 위성용수신기를 임대·보급하고, 프로그램공급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해외로 수출하며,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지원하는 등과 같은 통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구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에도 위성방송사업자가 직간접적으로 채널을 운영하거나 프로그램공급사업을 병행하는 경우(BSkyB, PerfecTV), 위성방송사업자의 출자사가 프로그램공급업을 운영하는 경우(DirecTV Japan, JSkyB), 직접 프로그램공급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기금을 조성하여 프로덕션 및 프로그램공급업자들을 지원하는 경우(소프트뱅크) 등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통합방송법은 국내위성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외국위성을 통하여 국내위성방송사업을 행하는 경우,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사업자들의 위성방송사업, 해외사업자들의 통신위성(CS)을 이용한 국내방송 등과 같은 다양한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로그램공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프로그램의 제공범위를 지상파방송·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모두에 가능하도록 확대함과 동시에 사업요건을 등록사항으로 완화하고, 뉴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이 방송통신망사업자의 개념을 신설하여 이들에게 기존의 전송망사업자의 지위에 추가로 위성체의 소유주체로서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는 지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사업요건을 이 법에 의한 허가사항으로 통일하고,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사업자와 인공위성 중계기의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직접적으로 위성방송을 하거나 부대사업을 하는 형태(위성방송서비스사업) 및 이들과 특정채널의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간접적으로 위성방송을 하는 형태(위성방송채널사용사업) 모두를 인정함과 동시에 사업요건을 이 법에 의한 승인사항으로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국내위성방송 뿐만 아니라 비국

내위성방송과 외국위성방송에 대한 규정을 허가절차 등에서 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3) 衛星放送과 放送事業의 許可節次

현행 방송관계법은 지상파방송의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이 허가를 부여하고, 종합유선방송의 경우, 종합유선방송국(SO)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허가를, 프로그램공급업자(PP)는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문화관광부장관이 허가를, 전송망사업자(NO)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 법안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공보처(안)은 일반방송사업자(지상파 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는 전파법에 의한 방송국 허가(정보통신부장관의 무선국 허가)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을, 전송망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외국위성채널사용방송사업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8조). 국민회의(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할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에 등록을,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에 등록을, 외국위성채널임차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9조). 그리고 의원단일입법(안)은 방송국을 경영하는 방송법인과 방송사업자를 구분하여 방송법인은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에 따른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설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즉 공중파방송국, 종합유선방송국, 위성방송의 지상국에 대한 전파법에 의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외국위성중계기임차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8조).

이상의 법안들은 각각 방송사업 및 방송사업자의 개념에 입각하여 허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사업 및 방송사업자의 개념에 대하여는 그 문제점 및 대안을 이미 제시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에 따른 결론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넷째, 외국인공위성의 무선국(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을 관리·운영하는 자로부터 중계기 또는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방송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섯째, 외국인공위성의 무선국(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을 관리·운영하며 국내방송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여섯째, 방송통신망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수신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무선 전송·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곱째, 프로그램공급사업자는 방송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여덟째, 이러한 추천·허가·승인 및 등록의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衛星放送과 放送事業의 規制(所有·參與制限)

현행 방송관계법은 방송의 수평적·수직적 겸영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 및 신문사·통신사의 방송시장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자본의 참여 또한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지상파방송과 같이 한정된 자원인 방송이 대기업이나 언론사, 외국인에게 허용될 경우,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 방송프로그램의 저질화, 언론독점에 따른 폐해를 초래하여 방송의 공공성이 침해된다는 이유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뉴미디어의 경우, 특히 위성방송은 주파수가 한정된 지상파방송과 달리 채널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방송채널 하나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상파방송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성방송사업에의 참여를 개방하더라도 방송의 공공성이 크게 위협받을 위험성은 없고, 뉴미디어의 특성상 설비투자비용의 부담이 큰 반면에 그 이윤창출효과는 상당한 기간동안 불확실한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자금력과 전문성을 확보한 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며, 아울러 외국의 위성방송이 국내의 방송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방송환경의 개방화에 직면하여 국내방송시장의 보호와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기술과 자본력, 그리고 프로그램제작능력 면에서 역량을 갖춘 신규참여자의 위성방송참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먼저, 공보처(안)은 방송의 소유 및 참여제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일반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 1인(특수관계인을 포함)은 당해 일반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30/10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법안 제13조제1항, 제2항).¹⁰⁹⁾ 둘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특수관계인을 포함)은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일반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위성방송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일반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사업을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법안 제13조제3항). 셋째,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은 종합유선방송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제외하고는 제13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법안 제13조제4항). 넷째, 위성방송의 일반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 1인(특수관계자를 포함)은 당해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30/10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법안 제13조제5항).¹¹⁰⁾ 다섯째, 종합유선방송의 경우, 일

109) 그러나 동 법안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일반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하는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MBC),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30/10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13조제1항 단서).

반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계열기업, 일간신문·통신사, 전송망사업자(각 특수관계자를 포함)는 그 경영과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전송망사업자(특수관계자를 포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기술개발·방송문화의 발전 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법안 제13조제6항, 제9항). 여섯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특수관계자를 포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지만,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인력·시설 또는 방송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법안 제13조제7항, 제8항). 일곱째, 특정이념 또는 사상을 구현하거나 지지·옹호하는 정당(정당법에 의한 지구당을 포함)·종교단체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종합편성 또는 보도·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일반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법안 제13조제10항). 여덟째, 여기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사업자의 이사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수는 이사총수의 1/3을 넘지 못한다(법안 제13조제11항, 제14조). 아홉째, 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지 못한다. 다만,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제외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일반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15/10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방송사업자는 외국의 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부터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법안 제15조). 그리고 외국정부,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110) 그러나 동 법안은 위성방송의 일반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하는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MBC),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30/10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13조제5항 단서).

있는 법인이 그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합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법인은 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을 할 수 없다(법안 제12조제1항제5호).

다음으로, 국민회의(안)은 방송의 소유 및 참여제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 1인(특수관계자를 포함)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30/10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법안 제8조제2항).¹¹¹⁾ 둘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이나 그 계열기업(특수관계자를 포함)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은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법안 제8조제3항). 셋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방송사업자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출자한 방송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는 상호 경영할 수 없고,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법안 제8조제4항). 넷째, 방송위원회가 방송기술개발·방송문화의 발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송망사업자(특수관계자를 포함)는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법안 제8조제5항). 다섯째, 종합유선방송사업자(특수관계자를 포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고,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법안 제8조제6항, 제8항). 여섯째, 방송채널사용사업자(특수관계자를 포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법안 제8조제7항). 일곱째, 특정이념 또는 사상을 구현하

111) 그러나 동 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하는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MBC),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종교단체에 의하여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그 적용상 예외임을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8조제2항 단서).

거나 지지·옹호하는 정당(정당법에 의한 지구당을 포함)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고, 여기에서의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안 제8조제9항, 제10항). 여덟째, 방송사업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없지만,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교육, 체육, 종교, 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법안 제14조). 아홉째, 외국의 정부나 단체, 외국인,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특히 그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15/10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 33/10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전송망사업을 할 수 없다(법안 제13조제1항, 제2항).

그리고 의원단일입법(안)은 방송의 소유 및 참여제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종교단체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법인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공중파방송국을 운영하는 방송법인의 지분총수의 15/10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법안 제6조제1항). 둘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하는 방송법인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 1인(특수관계자를 포함)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30/10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법안 제6조제2항). 셋째, 보도전문편성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 1인(특수관계자를 포함)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30/10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법안 제7조제1항). 넷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특수관계자를 포함)은 방송법인을 경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법안 제13조제1항). 다섯째,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과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은 방송법인을 경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법안 제13조제2항). 여섯째, 보도전문편성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 1인(특수관계자를 포함)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30/10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법안 제13조제3항). 일곱째, 종합유선방송국 운영자(특수관계자를 포함)는 다른 종합유선방송국을 3개 이상 경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법안 제13조제4항). 여덟째, 정당법에 의한 정당이나 정당인은 방송법인 또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고, 종교단체는 종교전파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특수방송과 전문편성방송 외에 방송법인이나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으며, 여기에서 특수관계자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소유권의 20/100이상을 행사하는 법인을 말한다(법안 제13조제5항, 제6항, 제7항). 아홉째, 외국정부나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은 방송법인 및 방송사업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방송법인 및 방송사업자는 외국의 교육, 체육, 종교, 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총수의 10/100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 또는 출자를 받을 수 없다(법안 제12조제1항제3호, 제14조).

이러한 법안들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의 두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예컨대, 대기업과 신문사·통신사의 방송시장참여문제, 외국자본의 국내방송시장참여문제이다.

첫째, 대기업과 신문사·통신사의 방송시장참여문제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반적인 소유제한과 관련하여 공보처(안)과 국민회의(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하여 동일하게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소유를 30/100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현행 방송관계법을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의원단일입법(안)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종교단체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법인을 제외하고는 공중파방송국(지상파방송국, 위성방송국)의 경우 15/100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종합유선방송국의 경우 30/100으로, 보도전문편성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 30/100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공중파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그 소유지분을 제한, 강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소유제한과 더불어 대기업과 신문사·통신사의 참여규제와 관련하여 각 법안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공보처(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은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일반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위성방송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일

반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의 종합편성 또는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제외하고는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위성방송사업자 일반에 대해서는 개인의 지분권제한을 위하여 당해 사업자(위성방송의 일반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30/10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이것은 지상파방송의 경우 대기업과 신문사·통신사의 참여가 금지되고, 위성방송의 경우 대기업과 신문사·통신사 모두 종합·보도전문편성에의 참여는 금지되지만, 비보도전문편성에의 참여가 그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30% 이내에서 허용되고, 종합유선방송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 자체에의 참여는 대기업과 신문사·통신사 모두 금지되지만, 종합유선방송의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의 참여는 비보도전문편성에 한하여 대기업이 허용되는 반면, 보도전문편성(30%이내 소유)·비보도전문편성에 신문사·통신사는 허용됨을 의미한다. 특히, 이것은 위성방송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에 대하여 위성방송의 종합편성과 보도전문편성을 제외한 비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일반방송사업과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신문사와 통신사에 대하여도 대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허용하고 있고, 동시에 위성방송사업자 일반은 당해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30/10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의 의도는 위성방송의 공공성 확보라는 목표와 위성방송의 경쟁력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나름대로 조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로 생각된다. 광범위한 수신자층에게 무차별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지상파방송의 경우에 이들의 참여를 전면 배제하고, 또한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경우에 그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참여를 배제하는 한편,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보도전문채널을 제외한 비보도전문채널의 경우에 채널에 따라 수신자층이 세분화되고, 다수의 채널이 경쟁적으로 운영되는 점에서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에 비하여 특정채널의 사회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해서는 참여를 허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의원단일입법(안)은 대기업과 신문사·통신사의 방송법인에 대한 겸영을 전면 금지하는 반면에 국민

회의(안)은 대기업과 신문사·통신사의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에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함과 동시에 비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과 전송망사업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상파방송과 달리 뉴미디어, 특히 위성방송사업의 경우에는 그 설비투자비용의 막대함과 그 이유의 단기 회수가능의 불투명성, 방송시장개방화에 따른 국내방송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자금력과 전문성을 갖춘 대기업과 신문사·통신사의 방송시장참여는 불가피하다.¹¹²⁾ 따라서 대기업 등의 방송시장참여를 부정하기 보다는 방송시장참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¹¹³⁾ 이러한 측면에서 공보처(안)과 국민회의(안)이 종합편성만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방송법과 달리 종합편성과 전문편성으로 세분화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 경우 비보도전문편성에 대한 대기업과 신문사·통신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다만,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의 경우에 대기업 등의 참여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 여기에는 다양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적인 언론재벌머독의 국내위성방송진출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국내 대기업과 신문사·통신사의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법적 형평성이 문제되기 때문이다.¹¹⁴⁾ 그리고 국가경제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과 기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신문사·통신사들의 방송시장진출에 따른 언론의 독점 등과 같은 폐해 또한 적지 않게 발생할 것이 예상됨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성방송의 사업자선정부터 본방송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자금과 기간이 소요되고, 그 동안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특히 기존 신문사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의 노하우를 최대한 살려 보도전문채널 등과 같은 위성방송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보도전문편성분야의 참여를 허용

112) 위성방송사업의 대기업·신문사·통신사 참여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홍균, 위성방송 법제연구, 세미나자료집 : 위성방송의 전망과 과제, 고려대학교 신문방송연구소 (1996.6.26), 28~35면”을 참조.

113) 위성방송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의 참여가 불가피함을 미국·일본 등의 외국사례들이 입증하고 있다(방석호, 방송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들의 재검토, 입법조사연구 통권 제240호(1996.8), 45면).

114) 유의선, 통합방송법과 방송구조조정, '98한국방송학회 제1차 쟁점과 토론 “새정부 방송정책 방향 : 종합평가와 제언”, 한국방송학회(1998.4.10), 30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통합방송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전문편성(보도분야 포함)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과 방송통신망사업, 프로그램공급사업에 대하여 대기업과 신문사·통신사의 참여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자본의 국내방송시장참여문제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보처(안)은 동 법안 제8조제6항에 의한 외국위성채널사용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위의 대기업과 신문사·통신사의 참여제한과 소유제한이 준용되도록 하고 있다(법안 제8조제7조). 또한 외국자본의 출자는 비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일반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15/10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회의(안)은 외국자본의 방송시장참여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반면에 15/100의 범위내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과 33/100의 범위내에서 전송망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의원단일입법(안)은 방송법인 및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외국의 교육, 체육, 종교, 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부터 당해 법인의 10/100의 범위내에서 출자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자본의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두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예컨대, 국내영상시장의 기반구축이 미흡한 상태에서 경쟁력이 강한 외국자본의 참여허용은 국내방송시장의 파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미디어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의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견해의 대립이 그것이다. 그러나 WTO·OECD협정 등에 의거하여 자본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한 현 상황에서 외국자본참여의 허용문제는 이제 그 허용기준치가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위성방송의 경우 외국자본참여의 허용기준을 기존 15%(안)에서 30%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¹¹⁵⁾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자본의 참여를 지상파방송사업에 대하여는 전면 금지하되, 뉴미디어 방송산업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성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방송통신망사업, 프로그램공급사업 등에 대하여는 통일적으로 30%의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15) 세계일보 1998.7.29., 21면.

(5) 衛星放送과 綜合有線放送의 相互關係

(가) SCN의 許容問題

SCN은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송망체계를 의미한다. 그 가운데 사용위성의 구분에 따라 통신위성(CS)을 이용하는 경우를 'Space Cable Network'로, 방송위성(BS)을 이용하는 경우를 'Satellite Cable Network'로 구분하기도 한다. 즉, SCN은 위성을 이용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¹¹⁶⁾ 이러한 방식을 가장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국가로는 종합유선방송이 일찍부터 발달한 미국을 예시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은 종래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전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우편 등의 방식으로 배급하여 왔으나 1972년 이후 다수의 위성이 발사됨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신속한 보급을 위하여 위성을 이용한 프로그램공급방식을 채택, 오늘날의 SCN이 실현되게 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SCN은 종합유선방송의 발전, 이와 비교하여 위성방송의 상대적 미발달, 수용자의 주거형태 등 다양한 방송환경의 변수속에서 탄생한 일종의 응용방송매체라고 할 것이다.¹¹⁷⁾

이러한 SCN의 허용문제와 관련해서는 두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균형적인 발전에 관한 문제이다. 즉, 위성방송을 종합유선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을 별개의 매체로 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초기 위성방송의 수신권확대, 종합유선방송의 프로그램공급원의 확충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고출력 또는 중출력의 위성방송이 가지는 매체기능의 약화, 위성방송 수신장비에 대한 개발·보급사업의 발전을 저해하여 산업적 효과의 저하, 방송매체의 독립성과 특성화의 저해라는 단점이 있다. 이것에 대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위성방송의 독립적 매체기능의 확보, 위성방송의 산업적 파급효과의 극대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위성방송의 수신권확보의 어려움

116) 이동규·김태은(신한종합연구소 미래산업팀), 21세기 텔레컴사회와 위성비즈니스, 다은, 1995, 81~82면.

117) 방석호, 미디어법학, 법문사, 1995, 259면.

에 따른 위성방송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찬반논란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초기 위성방송의 도입에 있어서는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이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 돌입하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설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상호 경쟁관계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당연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성방송의 도입시에는 SCN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것은 위성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신권확보를 통하여 수익성이 보장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기할 수 있고, 수신자의 입장에서는 디지털수신기 없이도 위성방송의 수신이 가능하므로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프로그램공급업자(PP)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SCN의 본래적인 개념은 그 구조상 프로그램공급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통하여 그들간의 전송로의 일종인 위성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그들간의 전송로의 일종인 위성을 통하여 방송프로그램의 공급·분배하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였다.¹¹⁸⁾ 이 경우 프로그램공급자의 행위는 현행 방송관계법상 통신행위, 특히 전기통신사업자로서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가통신설비의 이용행위로 이해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행 방송관계법은 전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무선국으로서의 방송국만이 방송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방송사업자의 개념과 같이 프로그램공급사업자를 이해함과 동시에 위성방송사업자와의 겸영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즉, 본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프로그램공급사업자는 기존의 프로그램공급업자와 달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사업에 대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규정되어 있으며,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통신망사업자의 개념을 신설하여 이들과 분리된, 즉 무선국을 소유하지 않고도 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 구도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이들과의 겸영을 통하여 통신이 아닌 방송으로서의 SCN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118) 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 선진방송발전정책 연구보고서(1994.12), 47~48면.

(나) SMATV의 許容問題

수신전용위성지구국¹¹⁹⁾과 위성방송을 포착하기 위한 중앙안테나로 구성된 SMATV(Satellite Master Antenna TV)는 외국의 경우 일찍부터 종합유선방송의 부족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로서 인정되어 왔지만, 현행 방송관계법상 그 성격에 있어서 종합유선방송국(SO)과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¹²⁰⁾ 왜냐하면,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상의 종합유선방송국은 종합유선방송을 편성·운행·송출하기 위한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공급업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SMATV의 허용은 비록 종합유선방송에 비하여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지역에 따른 프랜차이즈(지역사업권)와 채널수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즉각 시장진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가장 수익성이 있는 밀집지역을 사업지역화함으로써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치열한 경쟁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1994년의 방송법개정시안은 종합유선방송구역내에서 50가구 이상의 집합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위성방송공시청안테나의 설치를 금지하여 상대적으로 기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독점권을 보장하여 주도록 규정하였다(시안 제10조의5).¹²¹⁾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SMATV가 종합유선방송과 경쟁매체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상가구수가 200가구 정도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사실상 SMATV 자체의 이용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종합유선방송국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당수의 지역에서 SMATV의 시설철거라는 불합리성과 비경제성이 문제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¹²²⁾

이와 같이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이 연계된 지점에서 시장이 형성되는

119) 이것은 구체적으로 수신장치, 위성방송신호를 변조하기 위한 변조기, 공동주택에 인입된 종합유선방송의 신호와 혼합하기 위한 혼합기를 말한다(방석호, 미디어법학, 법문사, 1995, 265면).

120) 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 선진방송발전정책 연구보고서(1994.12), 46면.

121) 1995년 및 1996년, 두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출된 공보처의 방송법개정(안)에서는 이 규정들이 삭제되었다.

122) 김명중, 위성방송정책의 방향, 1995년 제1차 한국방송학회 정책포럼 "위성방송 정책과 쟁점", 한국방송학회(1995.3.10), 21면.

SMATV는 정부의 SMATV 정책방향에 따라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안된 각 법안들은 SMATV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위성을 수신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탄생되었고, 개별시청자에 대하여 직접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를 매개로 하는 공동수신을 의미하는 SMATV를 단순히 종합유선방송사업의 변형된 수신인 한 형태로 파악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자로 정의할 것인지가 문제로 된다. SMATV는 그 연혁을 고려할 때에 종합유선방송사업의 단순한 발전단계로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자관리체계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 상태에서 양자를 완전히 분리된 경쟁매체로 이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신자의 추가부담만 초래하고, 또한 위성방송의 미발달로 인하여 SMATV의 경쟁력도 없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의 만성적인 적자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잠정적이고, 과도기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단기적으로는 영리적인 SMATV의 운영을 금지하되, 단계적으로 자유경쟁체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123)

(6) 衛星放送과 著作權의 保護

위성방송은 그 수신범위가 다른 방송에 비하여 광범위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위성방송은 한 국가의 일정지역을 수신범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여러 지역, 더 나아가서는 여러 국가에 걸쳐 수신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위성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과 수신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이 대폭 증대하지만,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한 방송프로그램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전

123) 이러한 SMATV의 본격적인 허용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SMATV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의 대립·갈등관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유선방송사업에 대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우려가 있음에 주의를 요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일정한 프랜차이즈비용을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는 일정비율의 지역사업권료를 중앙정부에서 징수하지만, 지방자치체의 활성화경향과 더불어 그 비용징수권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미국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방석호, 미디어법학, 법문사, 1995, 270면).

파되기 때문에 위성방송 이외의 방송에 비하여 그 만큼 수입증대의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위성방송에 대한 저작권자는 자신의 수입 및 권리행사의 기회가 감소된 만큼 자신의 권리를 강력히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위성방송사업자 또한 위성방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상파방송 보다는 훨씬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방송에 대한 저작권접권자로서의 보호를 강력히 요구하게 된다.¹²⁴⁾ 그러나 위성방송은 그 전파의 송출범위가 국경을 초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와 특별한 협약 등이 없는 한, 송출국의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자 및 저작권접권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파월경에 따른 국제법상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성방송과 관련한 저작권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된다. 이러한 위성방송에 대한 저작권법¹²⁵⁾상의 저작권이나 저작권접권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위성방송은 저작권법상의 방송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위성방송이 저작권법상의 방송에 해당하여야만 그 저작권이나 저작권접권이 보호되기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재산권의 하나로서 방송권을 규정(동법 제18조)함과 동시에 '방송'을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등을 송신하는 것(차단되지 아니한 동일구역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송신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제8호). 이것은 방송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 등의 유선방송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방송을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공중'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불명확하다. 즉, '일반공중'을 불특정다수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특정다수인은 제외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위성방송에 있어서 계약 등을 통하여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문제로 될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상의 '일반공중'은 특정인도

124) 전정환·도두형, 방송저작물이용에 관한 법률관계연구(연구보고 95-18), 한국방송개발원(1995.12), 103~104면.

125)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대책 최종보고서(1997.12)"를 참조.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법문을 개정하여 명확히 할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같이 유선방송까지 방송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저작권법상의 방송 개념은 다른 입법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고려할 때에 위성방송이 무선통신의 송신으로서 저작권법상의 방송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위성방송에 있어서는 무선통신의 송신이 최종적으로 일반공중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기존의 지상파방송과 달리 특이하기 때문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위성방송을 일반공중이 수신안테나로 직접수신하는 경우, 위성방송을 지상의 지구국이나 유선송신사업자가 수신안테나로 수신한 다음 이를 일반공중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자의 전달과정은 저작권법상의 방송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이론이 없지만, 후자의 전달과정은 일반공중이 직접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지구국 또는 유선송신사업자가 수신하여 일반공중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이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목적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함(동법 제1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후자의 전달방식도 적극적으로 저작권법상의 방송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거나 입법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위성방송의 전달과정 모두를 저작권법상의 방송개념으로 이해하더라도 그 전달과정 중 어디까지를 방송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 즉, 위성방송은 기술적으로 업링크와 다운링크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위성방송은 두 전송과정중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어 방송의 개념으로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프랑스 등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업링크(up-link)를 저작권법상의 방송으로 규정하고, 다운링크(down-link)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위성이 우주공간에 존재하고, 우주공간이 어느 특정국가의 관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성으로부터의 송신행위를 개별 국가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바, 이에 대한 입법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위성방송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어느 국가의 법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위성방송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이한 법률이 적용되는 결과, 당사자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하여는 두가지의 견해로 구분되고 있다. 예컨대, 방송신호를 위성을

향하여 송출하는 국가의 법 또는 방송사업자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자는 견해와 방송은 일반공중에게 전달되고, 이러한 모든 전달과정이 방송을 구성하기 때문에 위성방송이 미치는 모든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자는 견해가 그것이다. 전자의 견해는 송신국주의로서 소위 업링크만을 저작권법상의 방송으로 보는 입장에 기초하고 있으며, 후자의 견해는 수신국주의로서 방송을 송출에서 수신에 이르는 전과정, 즉 업링크와 다운링크를 모두 방송으로 보는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송신국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베른조약에 기초하여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등이 수신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¹²⁶⁾ 송신국주의는 저작권자 등의 보호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송출국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일정한 권리가 부정되면, 설사 수신국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그 권리가 인정될지라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특히 송출국이 강제허락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등의 권리보호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송출국의 영토가 좁은 경우에는 저작자 등의 권리자는 상당히 낮은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수신국주의는 준거법의 결정에 있어서 저작권법상 일정한 원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준거법이 존재하지 않거나 복수의 준거법이 존재할 수 있고, 또한 자국에서 발생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타국의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영토주권의 원칙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된다.

이것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수신국주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되는 것이 '국경을 초월하는 TV에 관한 유럽협약'이다. 동 협약은 송신국의 의무와 관련하여 "각 송신국은 적절한 수단과 자국의 해당 기관을 통하여 협약 제3조의 내용에 따라 자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안에서 독립제작자나 기술적인 매개물을 통하여 송신된 모든 프로그램이 당협약의 조항에 따르도록 한다(동 협약 제5조제1항)"고 규정함과 동시에 위성송신국을 "위성지구국이 위치한 가맹국, 당협약의 가맹국이 아닌 국가에 지구국이 위치한 경우에는 주파수나 위성의 사용을 허가한 가맹국, 앞의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가 위치한 가맹국"으로 정의하고 있다(동 협약 제5조제2항 b). 아울러 동 협약

126) 방석호, 방송시장개방에 따른 관련법 검토 및 개선방안연구, 한국방송개발원(1996.12), 65면.

은 “당협약의 가맹국이 아닌 국가가 송신하는 프로그램을 제3조의 내용에 따라 어떤 가맹국이 자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독립제작사나 기술적인 매체를 통하여 재송신했을 경우에는 송신국역할을 하는 가맹국은 적절한 수단과 자국의 해당 기관을 통하여 당협약의 조항에 따르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협약 제5조제3항). 이것은 외국위성을 통하여 국내방송이 이루어질 경우에 송신국의 책임하에 방송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성방송의 전파월경이나 저작권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해결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더불어 이들 문제에 대한 적절한 입법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 結論 : 衛星放送法制的 立法方向

방송산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자본과 방송프로그램의 국제적인 유통, 위성방송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수십개에서 수백개의 위성채널이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적인 방송지형의 변화속에서 각 국가들은 자국의 위성방송을 국제화시대의 문화수출의 첨병으로 인식하여 각종의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위성방송을 포함한 통합방송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올해 초 정부 여당인 국민회의가 통합방송법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보여 왔으며, 그 결과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가 8월중으로 위성방송정책의 골간을 이루게 될 '위성방송정책방향(안)'을 새로이 조정·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담은 통합방송법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¹²⁷⁾

이러한 입법과정에서 본 연구보고서가 일조하기를 바라면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위성방송정책의 수립시 기본방향과 법적 쟁점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위성방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위성방송사업자는 기존의 지상파방송과는 달리 하드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여 방송편성권 및 통합마케팅기능을 가지는 운영사업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둘째, 위성방송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공급자의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즉, 종합편성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자유경쟁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성방송의 성패와 영상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여부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유통기반의 강화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성방송의 활

127) 세계일보 1998.7.29., 21면. 이 보도에 따르면, 채널배정과 관련하여서는 공영위성채널과 지상파·종합유선방송 재전송용채널 30~40개, 신규 위성방송채널 60~70개를 배정하고, 위성채널사업자의 경우에 대기업·신문사·통신사 및 외국인의 참여제한을 완화함과 동시에 신문사 등의 보도채널참여를 허용하고, 외국인의 참여지분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며, 외국위성방송채널의 국내진출에 대하여는 단기적으로 국내프로그램제작사의 외국프로그램제어를 완화하여 법정한도내에서 중계·편성하도록 하되, 장기적으로는 국가이익에 반하지 않는 외국위성방송채널을 국내방송채널사업자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제작자들이 자유롭게 위성방송에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프로그램유통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위성방송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이 연계할 수 있도록 SCN을 허용함과 동시에 SMATV 등도 점진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위성방송정책의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통합방송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방송법의 이념과 관련하여 방송의 공공성과 산업성이 함께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방송법의 이념을 "이 법은 방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방송의 자유 및 독립과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수신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방송법의 방송개념과 관련하여 국내관련법규와의 일관성의 유지, 통신·방송의 융합화에 대비한 경계영역서비스에의 적용상 유연성의 유지, 지상파방송·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을 포괄하는 통합방송법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저작권법상의 방송개념과의 일관성 유지, 통신·방송의 융합화에 대비한 대통령령에 위임한 유사방송개념의 신설, 지상파방송·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을 포괄하는 통합방송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방송'개념을 "방송이라 함은 영상(문자, 기호 및 정지화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음성·음향 등을 기획·제작 또는 편성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신자'라 한다)에게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 나. 종합유선방송 :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행하는 다채널방송, 다. 위성방송 :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 라. 유사방송 :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방송법의 방송사업 및 방송사업자의 구도와 관련하여 위성방송사업의 개방화 및 다양화를 보장하고, 프로그램공급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위성방송사업과 관련하여 하드부분의 사업자인 방송통신망사업자와 소프트부분의 사업자인 위성방송사업자로 구분하여 위성방송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프로그램공급사업자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영상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을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지상파방송 또는 유사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종합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조정·송출하기 위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종합유선방송 또는 유사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위성방송사업 : 방송통신망사업자와 인공위성의 중계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위성방송 또는 유사방송을 행하거나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 등을 행하는 사업('위성방송서비스사업'이라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위성방송 또는 유사방송을 행하는 사업('위성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 이하 같다), 라. 방송통신망사업 :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수신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무선 전송·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또는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위성방송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수신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거나 다른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통하여 전달되는 방송프로그램을 중계하는 사업, 마. 프로그램공급사업 : 방송프로그램을 기획·제작 또는 편성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방송사업자'를 "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전파법에 의하여 지상의 무선국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한 승인을 받은 자, 라. 방송통신망사업자 : 방송통신망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마. 프로그램공급사업자 : 프로그램공급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방송사업자의 '허가절차'와 관련해서는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

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
 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인공위
 성의 무선국(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을 관리·운영하는 자와 중
 계기 또는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방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과 동시에 이 경우에 방송위
 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외국인공위성의 무선국(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을 관리·운영하며 국내방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과 동시에 이 경우에도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
 부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방송통신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
 아야 하지만,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수신자에게 전송하기 위
 하여 유·무선 전송·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방송통신망사업자는 방송위원
 회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프로그램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러한 규정에 의한 추천·
 허가·승인 및 등록의 요건·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고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위성방송의 대기업과 신문사·통신사의 참여제한과 관련하여 위성방송
 의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선정에서 본방송까지 상당한 자금 및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한 통신시장의 개방화와 프로그램공급사업
 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편성을 제외한 전문편성을 위성방송사업자에게 허용함
 과 동시에 위성방송사업·방송통신망사업·프로그램공급사업에 대한 대기업과
 신문사·통신사의 참여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자본의 국내방송시
 장개방과 관련하여 IMF체제의 극복이라는 당면과제와 OECD협정 등에 의거
 하여 자본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한 현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을 제외하고는 외국
 자본의 참여지분을 일정부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지상파방송사업은
 전면 금지하고, 위성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방송통신망사업, 프로그램공
 급사업은 통일적으로 30%의 범위내에서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상호관계와 관련하여 SCN의 경우는 위
 성방송사업자에 있어서 수신권확보를 통한 수익성 보장,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있어서 방송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수신자에 있어서 정보욕구 충족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SMATV의 경우는 현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허용할 때에 실질적으로 수신자의 추가부담만 초래하고, 위성방송의 미발달로 인하여 SMATV의 경쟁력도 없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의 만성적인 적자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영리적인 SMATV의 운영을 허용하고, 장기적으로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위성방송과 저작권보호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상의 방송개념에 있어서 '일반공중'에 특정인 뿐만 아니라 지상의 지국국이나 유선송신사업자 등이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위성의 전송과정중 어디까지를 방송으로 볼 것인지 하는 내용도 포함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성방송의 준거법과 관련하여 국제적 노력과 더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입법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附 錄 : 衛 星 放 送 關 係 法 規 及 協 約

○ 衛 星 放 送 關 係 法 規¹²⁸⁾

- 직접위성방송서비스

(DBS : Direct Broadcast Satellite Service(1997.10.1, 47 C.F.R 100))

○ 衛 星 放 送 關 係 協 約¹²⁹⁾

- 국제직접위성방송을 위한 인공위성의 국가이용에 관한 규제원칙

(Principles Governing the Use by States of Artificial Earth Satellites for International 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1982.12.10, UN))

- 국경을 초월하는 TV에 관한 유럽협약

(European Convention on Transfrontier Television(1989.5.5, Council of Europe))

- '국경없는 텔레비전' 지령

('Television Without Frontiers' Directive(1989.10.3/1997.6.30, EC/EU))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경을 넘는 위성방송을 위한 지침

(Guidelines for Transnational Satellite Broadcasting in the Asia-Pacific Region(1994.11, ABU))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위성TV방송의 프로그램에 관한 지침

(Guideline on the Program Contents of International Satellite Television Broadcasting in the Asia-Pacific Region(1995.3, Asia-Pacific Meeting on International Satellite TV-Broadcasting))

128) 이 부분의 자료는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입수한 자료를 번역한 것임(<http://frwebgate2.access.gpo.gov>)

129) 이 부분의 자료는 "방송위원회, 위성방송규제에 관한 국제적 합의, 방송조사자료 18 (1997.11)"의 내용중 일부를 선정, 수정·보완한 것임.

직접위성방송서비스

(DBS : Direct Broadcast Satellite Service)
- FCC규정 Part 100 : 47 C.F.R 100(1997.10.1) -

Subpart A. 총 칙

100.1(근거와 목적)

- (a) 이 부(part)의 다음 규정은 무선송신을 규제하고 무선국 허가를 발급하는 권한을 연방통신위원회에 부여한 개정된 1934년 통신법 제3편(Title)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된다.
- (b) 이 부는 무선주파수스펙트럼이 잠정적인 직접위성방송서비스의 발전에 이용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잠정적인 직접위성방송시스템에 대하여 본 규정의 채택 전에는 이 임시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발급한다. 직접위성방송서비스는 12.2~12.7 GHz의 주파수대에서 운영된다.

100.3(정의)

직접위성방송서비스라 함은 우주국에 의하여 송신 또는 재송신되는 신호가 일반공중에게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직접위성방송서비스에 있어서 직접수신은 개별수신 및 공동수신을 포함한다.

Subpart B. 행정절차

100.11(자격)

다음의 경우에는 직접위성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국의 운영허가를 승인하거나 보유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 (a)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대표자
- (b)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대표자
- (c) 외국정부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d)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대표자,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대표자, 또는 외국정부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그 주식자본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등기상 소유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의결권을 가지는 법인
- (e)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대표자,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대표자, 또는 외국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그 주식자본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등기상 소유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의결권을 가지는 다른 법인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지배되는 법인에 대한 허가의 거부 또는 취소가 공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100.13(신청요건)

- (a) 잠정적인 직접위성방송시스템의 신청에는 제공될 서비스의 유형, 사용될 과학기술유형 기

타 모든 관련정보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은 구두로 행하여 질 수 있다.

- (b) 신청인은 특정 주파수와 궤도상 위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파수와 궤도상 위치는 위성방송서비스에 관한 1983년 제2지역무선통신주관청회의(1983 Region 2 Administrative Radio Conference for the Broadcasting-Satellite Service)가 종료될 때까지는 할당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통상 모든 주파수와 궤도상 위치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미할당 주파수와 궤도상 위치가 있는 한 주파수와 궤도상 위치, 이에 대한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도 반드시 비교청문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100.15(허가부여절차)

- (a) 잠정적인 직접위성방송시스템에 대한 신청은 45일 동안 공고되며, 그 기간 동안 이해당사자는 신청과 관련된 의견서와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 (b) 최초 신청과 관련시켜 고려되어야 할 제신청의 제출에 대하여도 45일의 마감기간(cut-off period)을 설정하여야 한다. 마감일(cut-off date) 전에 제출된 추가 신청은 최초 신청과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며, 주파수와 궤도상 위치의 할당시에도 최초 신청과 함께 고려된다. 신청이 특정 주파수 또는 궤도상 위치요청을 포함한 경우, 그러한 요청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때에도 그러한 마감일(cut-off date)이 고려되어야 한다.
- (c) 잠정적인 직접위성방송시스템의 신청에 대하여는 공개의견제시기간(public comment period)과 위원심사(staff review)를 거친 후 신청된 시스템에 대한 허가부여가 공익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위원회가 결정하여야 한다.

100.17(허가기간)

- (a) 이 부가 적용되는 비방송시설에 대한 허가발급기간은 10년이다. 이 부가 적용되는 방송시설에 대한 허가발급기간은 5년이다.
- (b) (유보)

100.19(상당한 주의요건)

- (a) 직접위성방송의 허가를 발급받은 모든 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직접위성방송시스템의 건설에 임하여야 한다. 건설허가를 부여받은 자는 그 건설허가의 부여로부터 1년 이내에 위성방송국의 건설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위성방송국은 건설허가가 부여된 때로부터 6년 이내에 운영되어야 한다.
- (b) 이 조의 (a)항에 규정된 요건 이외에 1996년 1월 19일 후 신규 또는 추가로 직접위성방송의 건설허가를 부여받은 모든 자는 건설허가가 부여된 때로부터 4년 이내에 직접위성방송시스템에 제1위성의 건설을 완료하여야 한다. 직접위성방송시스템의 모든 위성방송국은 건설허가가 부여된 때로부터 6년 이내에 운영되어야 한다.
- (c) 직접위성방송의 건설허가취득자(permittees) 및 허가취득자(licensees)는 위원회가 각

각의 경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적용될 수 있는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진행하여야 한다. 건설허가의 지배권에 대한 이전이 이러한 최종기한의 연장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Subpart C. 기술요건

100.21(기술요건)

위성방송서비스에 관한 1983년 지역무선주통신관청회의 이전의 잠정적인 직접위성방송시스템은 1977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3지역의 11.7~12.2 GHz와 제1지역의 11.7~12.5 GHz 주파수대에 있어서의 위성방송시스템의 기획을 위한 세계무선통신주관청회의의 최종의 정서 부칙 제8조와 제9조에 포함된 공동의 할당기준과 기술특성에 따라 운행되어야 한다. 다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최종의정서에 규정된 것과는 다른 기술특성을 사용하는 시스템은 최종의정서 부칙 제9조에 따라 결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운영시스템 또는 계획된 시스템에 대한 방해를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 운행될 수 있다.

Subpart D. 운영요건

100.51(평등한 고용기회)

- (a) 일반정책 : 고용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는 모든 유자격자에게 방송사업자로서의 허가가 발급되는 직접위성방송국의 모든 허가 또는 건설허가취득자에게 주어지며, 어떤 자도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가 또는 성별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 (b) 평등한 고용기회 프로그램 : 각 방송국은 방송국의 고용정책과 고용관행의 모든 면에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실행에 대한 적극적이며 계속적인 프로그램을 수립·추진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조건에 따라 방송국은
 - (1) 평등한 고용기회정책의 적극적인 적용과 활발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각 관리단계에서의 책임을 규정하고, 관리·감독업무를 심사·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2) 피고용인과 승인된 피고용인조직에 적극적인 평등한 고용기회정책과 프로그램을 통지하고 그들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 (3)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가 또는 성별과 상관없이 자격있는 지원자에게 방송국의 평등한 고용기회정책과 프로그램 및 고용필요성을 통보하여야 하며, 계속적으로 그들의 채용협조를 권유해야 한다.
 - (4) 방송국의 인사정책과 관행 및 근로조건으로부터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가 또는 성별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편견이나 차별을 배제하는 계속적인 캠페인(campaign)을 실시하여야 한다.
 - (5) 직무구조와 고용관행에 대한 계속적인 심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방송국에서의 모든 조직단위·업무·책무에 충분히 참여하는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인 채용·훈련·직무설계 기타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 (c) 새로운 시설에 대한 건설허가의 신청인·그러한 방송국의 허가 또는 건설허가의 승인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의 신청인·그러한 허가 또는 건설허가를 보유하는 실체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의 신청인(형식적 또는 비자발적 양도 또는 이전을 제외함)과 허가갱신(renewal of license)의 신청인은 아메리카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 아시아인과 태평양군도의 주민, 라틴 아메리카계 태생이 아닌 흑인, 라틴 아메리카계 주민 그리고 여성에 대하여 평등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자 입안된 프로그램 또는 그 프로그램의 수정안을 FCC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프로그램의 작성지침은 서식 396과 396A에 규정되어 있다. 5명 미만의 상근 피고용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프로그램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소수자집단 구성원이 신청인의 노동자채용지역에서 노동력의 총 5% 미만인 경우, 그러한 소수자집단 구성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제출될 필요가 없다. 제출요구를 면제받은 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그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d) 5명 이상의 상근 피고용인을 고용한 허가 또는 건설허가취득자는 FCC 서식 395에 따라 매년 5월 31일 또는 그 전에 연간고용보고서를 FCC에 제출하여야 한다.
- (e) 이러한 규칙 내의 다른 EEO(평등한 고용기회) 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 채널을 초과하는 영상프로그램을 일반에게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이 부에 따라 운영되는 소유 또는 임대한 직접위성방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만약 자신이 보급하는 영상프로그램에 대하여(이 장 76부의 Subpart E에 정의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장 76부의 Subpart E에 규정된 평등한 고용기회요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100.53(지리적인 서비스요건)

- (a) 1996년 1월 19일 현재 직접위성방송의 건설허가 또는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 (1) 현재의 그 허가들이 만료되기 전에 1개 이상의 궤도상 위치로부터 알래스카와 하와이까지 직접위성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 (2) 148 deg. W.L., 157 deg. W.L., 166 deg. W.L. 그리고 175 deg. W.L.의 궤도상 위치에 있는 서부직접위성방송의 주파수 및 채널의 할당을 포기하여야 한다.
- (b) 1996년 1월 19일 후에 직접위성방송의 허가들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궤도상 위치로부터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실행가능한 경우 알래스카와 하와이까지 직접위성방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Subpart E. 직접위성방송의 경쟁입찰절차

100.71(경쟁입찰대상 직접위성방송)

직접위성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호 배타적인 최초 신청은 경쟁입찰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장(chapter) 1부(part)의 소부(subpart) Q에 규정된 일반 경쟁입찰절차가 적용된다.

100.72(직접위성방송 건설허가의 경쟁입찰방식)

- (a) 직접위성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호 배타적인 최초 신청들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의 경쟁입찰방식을 사용한다.
- (1) 연속단일단계 또는 동시단일단계 문서입찰경매
 - (2) 연속 구두경매
 - (3) 봉인입찰과 구두경매 결합방식
 - (4) 연속다단계 전자경매
 - (5) 동시다단계 경매
- (b) 무선통신국(the Wireless Telecommunications Bureau)은 채택할 절차를 고안·실험할 수 있다. 무선통신국은 특정 경매에 사용될 경쟁입찰방식을 경매 전에 공고의 형식으로 통지한다.
- (c) 무선통신국은 결합입찰방식을 택할 수 있으며, 그 방식은 개별 건설허가에 대한 입찰 이외에 입찰자가 결합된 복수의 건설허가에 일괄 입찰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위원회는 결합입찰이 높은 입찰가격으로 선언되기 위하여 결합입찰가격이 개별 입찰가격의 총액을 소정의 금액 만큼 초과하여야 함을 요구할 수 있다. 결합입찰은 어떠한 유형의 경매방식에도 사용될 수 있다.
- (d) 무선통신국은 유효한 건설허가가 종료될 때까지 2 이상의 대체가능한 건설허가의 입찰을 결합시키고 최고입찰가격을 제시한 입찰자에게 건설허가를 부여하는 단일단계 결합경매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어떠한 유형의 경매에도 사용될 수 있다.

100.73(경쟁입찰메카니즘)

- (a) 순서(sequencing) : 연속경매에 있어서 무선통신국은 일반적으로 직접위성방송의 건설허가를 그 추정가격의 순서로 경매하며 최고가격의 건설허가가 처음으로 경매된다. 무선통신국은 직접위성방송 건설허가가 경매되는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b) 분류(grouping) : 무선통신국이 경매 전에 공고에 의하여 다른 대안적 경매방식을 통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궤도위치에 사용가능한 모든 직접위성방송채널은 일괄하여 경매된다. 무선통신국은 동시다단계 경쟁입찰방식 또는 결합입찰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어떠한 건설허가가 동시 경매 또는 결합 경매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 (c) 입찰증액과 동일입찰가(bid increments and tie bids) : 무선통신국은 경매 전 또는 경매 중 공고에 의하여 최저입찰증액을 달러 또는 백분율로 확정,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 무선통신국은 경매 중에 최고입찰증액을 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무선통신국은 공고에 의하여 건설허가에 대한 추정입찰개시가격 또는 최저입찰개시가격을 정할 수 있다. 동일입찰가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위원회에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입찰가격이 높은 입찰자로 결정된다.

- (d) 종료규칙(stopping rules) : 무선통신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경매를 종결시키기 위하여 다단계 경매 전 또는 경매 중에 종료규칙을 정할 수 있다.
- (e) 활동규칙(activity rules); 무선통신국은 최소한의 입찰활동을 요구하는 활동규칙을 정할 수 있다. 무선통신국이 동시다단계 경매 또는 연속다단계 전자경매에 관하여 활동규칙을 정하는 경우, 입찰자는 경매 중 자동적으로 그 규칙의 일정한 면제를 승인받는다.

100.74(철회, 불이행 및 자격상실에 대한 변상금)

- (a) 위원회가 제100.72조에 의하여 연속다단계 전자경매 또는 동시다단계 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무선통신국은 경매 진행중에 상위의 입찰가격을 철회하거나, 기한 내에 납입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격을 상실한 입찰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다.
- (b) 그러한 경매의 진행중에 상위의 입찰가격을 철회한 입찰자에게는 그 건설허가가 위원회에 의하여 다음 번 경매에 부쳐질 때 입찰총액과 낙찰총액 간의 차액과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한다. 다음 번 낙찰가격이 철회된 입찰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철회변상금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변상금은 철회한 입찰자가 위원회에 공탁한 선납입금 또는 계약금에서 공제된다.
- (c)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한 입찰자가 그러한 경매의 종료 후 납입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불이행 입찰자는 다음 번 낙찰가격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이외에 이 조의 (b)항의 변상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음 번 낙찰가격이 그 불이행 입찰자의 입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3%의 가산금은 그 불이행 입찰자의 입찰총액에 근거하여 산정될 것이다. 이 액수는 그 불이행 또는 자격상실 입찰자가 위원회에 공탁한 선납입금 또는 계약금에서 공제된다.
- (d) 위원회가 연속다단계 전자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무선통신국은 입찰을 철회한 입찰자가 철회된 건설허가의 경매에 계속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원회가 어떠한 다른 방식의 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무선통신국은 입찰을 철회한 입찰자가 동일한 경매에 부쳐진 동일한 건설허가 또는 다른 건설허가의 입찰에 계속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 (e) 위원회가 이 조의 (a)항, (b)항, (c)항 그리고 (d)항에 규정된 방식 이외의 경매방식을 실시하는 경우, 무선통신국은 입찰철회, 납입불이행 또는 자격상실의 경우에 납입될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납입액은 상기에 명기된 납입액을 초과할 수 없다.

100.75(입찰신청서 : FCC서식 175 그리고 175-S 단서식(short-form))

직접위성방송 건설허가의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신청인은 이 장의 제1.2105조의 규정에 따라 FCC서식 175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선통신국은 직접위성방송 건설허가의 획득가능성과 그 건설허가를 얻기 위한 경매일을 통지하는 공고를 발한다. 이 공고는 직접위성방송의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그 경매에 참가할 자격을 가지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또한 신청의 완료에 필요한 정보 및 공탁되어야 할 선납입금,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할 장소 등의 다른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00.76(선납입금과 계약금의 공탁)

- (a) 직접위성방송 경매의 입찰자는 그 액수가 경매 전에 공고에 의하여 통지되는 선납입금이 이 장의 제1.2106조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 (b) 직접위성방송 경매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총 공탁금이 낙찰가격의 최고 20%까지 되기에 충분한 액수로 계약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100.77(장서식(long-form)의 신청서)

낙찰자는 공고에 의하여 낙찰자라는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100.13조, 제100.21조와 제100.51조에 규정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이용가능한 스펙트럼의 범위에 이미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범위에 맞추고자 하는 현재까지의 노력과 장래의 계획을 설명한 서명된 설명서를 그와 같이 통지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제100.13조와 관련 공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단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신청인들간에 상호 배타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락인만이 직접위성방송 건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다.

100.78(허가 부여·거부, 불이행 및 자격상실에 대한 변상금)

- (a) 낙찰자는 건설허가의 부여가 될 예정이라는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가격의 잔액을 일시불로 납입하여야 한다.
- (b) 경매진행 중 입찰을 철회하거나, 기한 내에 납입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격을 상실한 입찰자는 제100.74조에 규정된 납입의무를 지게 된다.

100.79(담합금지)

- (a) 입찰자는 관련이 있는 컨소시엄 약정, 합작관계, 파트너십(partnership)관계,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경쟁입찰과정에 참여한 다른 계약이나 양해각서를 설정한 당사자의 신원을 단서식의 신청서에서 밝혀야 한다. 또한 입찰자는 자신의 입찰금액, 입찰전략 또는 그가 입찰하고자 하거나 입찰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특정 재산과 관련하여 그와 같이 밝힌 당사자 이외의 다른 당사자와 어떠한 종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계약, 협정 또는 약정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음을 단서식의 신청서에서 보증하여야 한다.
- (b) (1) 이 조의 (b)항 (2)목, (b)항 (3)목과 (b)항 (4)목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단서식의 신청서 제출 후, 모든 신청인은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한 입찰자가 계약금을 공탁할 때까지는 입찰자의 단서식의 신청서에서 밝힌 입찰컨소시엄약정 또는 다른 합작입찰약정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신청인과 입찰가격 또는 입찰전략의 실질에 관하여 어떤 방식으로든지 협력·협동·논의·공개하거나 낙찰합의에 관하여 토의하거나 교섭하는 것이 금지된다.
(2) 신청인은 경매 전 또는 경매 중 언제라도 컨소시엄의 구성 또는 소유권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단서식의 신청서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변경이 신청인의 지배상

의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또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소유권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동일한 또는 중복되는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건설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변경은 신청의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 단서식의 신청서 제출 후, 신청인은 건설허가를 얻기 위하여 공동으로 입찰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그 협정의 상대방은 동일한 또는 중복되는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건설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4) 단서식의 신청서 제출 후, 단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비지배적 귀속가능한 권익의 보유자는 동일한 또는 중복되는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건설허가를 얻고자 다른 신청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그와 합작입찰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i) 귀속가능한 권익의 보유자는 위원회에 자신이 귀속가능한 권익을 보유하거나 컨소시엄 또는 합작입찰협정을 체결하였고, 또한 동일한 또는 중복되는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건설허가를 신청한 2인 이상의 다른 신청인의 입찰가격 또는 입찰전략에 관하여 어느 당사자와 의사소통이 없었고,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할 것

(ii) 협정이 신청인의 지배상의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5) 신청인은 소유권의 변경이나 컨소시엄 또는 합작입찰협정의 당사자의 지위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단서식의 신청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c) 낙찰자는 입찰 종료 전에 경쟁입찰과정과 관련하여 체결하였던 컨소시엄입찰, 합작관계, 파트너십관계, 또는 다른 계약이나 협정에 관련된 기간·조건·상대방에 관한 상세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협정은 이 조의 (a)항과 (b)항에 따라 단서식의 신청서 제출 전에 체결되어야 한다.

100.80(양도공개)

경쟁입찰을 통하여 직접위성방송의 허가를 취득하고 최초 허가발급으로부터 6년 이내에 그 허가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에 대한 FCC의 동의신청서를 첨부하여 합동매매계약서, 선택합의서, 관리합의서, 또는 허가양도에 대하여 수령된 전체 대가를 공개하는 기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되는 자료에는 금전상의 매입가격 뿐만 아니라 선물대가, 우발적 대가, 현물대가, 기타의 대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국제직접위성방송을 위한 인공위성의 국가이용에 관한 규제원칙

(Principles Governing the Use by States of Artificial Earth Satellites
for International 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1982.12.10, UN))

총회는

국제직접위성방송을 위한 인공위성의 국가이용에 관한 규제원칙의 필요성과 국가간 협정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1972년 11월 9일의 결의안 2916(XXVII)을 상기한다.

1973년 12월 18일의 결의안 3182(XXVIII), 1974년 11월 12일의 3234(XXIX), 1975년 11월 18일의 3388(XXX), 1976년 11월 8일의 31/8, 1977년 12월 20일의 32/196, 1978년 11월 10일의 33/16, 1979년 12월 5일의 34/66, 1980년 11월 3일의 35/14, 그리고 제31차 회의에서 국제 직접위성방송을 위한 인공위성의 국가이용에 관한 규제원칙의 초안 채택을 고려하기로 결정한 1981년 11월 18일의 36/35를 상기한다.

위에서 언급한 결의안에서 도출된 지령에 따른 평화적인 우주공간이용위원회와 이에 부속된 법률 소위원회의 노력에 주목한다.

직접위성방송은 몇 차례 시험 실시되었고, 몇몇 국가에서는 현재 다수의 직접위성방송이 실시 중이며, 가까운 미래에 상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국제직접위성방송의 실시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국제직접위성방송을 위한 규제원칙의 수립은 이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UN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진척시킬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총회는 본 결의안의 부속서로서 공표된 국제직접위성방송을 위한 인공위성의 국가이용에 관한 규제원칙을 채택한다.

부속서 : 국제직접위성방송을 위한 인공위성의 국가이용에 관한 규제원칙

A. 목적과 취지

1. 국제직접위성방송분야의 활동은 관련 UN문건에 보장된 모든 사람들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아들이며 전할 수 있는 권리 뿐만 아니라 불간섭 원칙을 포함한 국가주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 국제직접위성방송분야의 활동은 문화와 과학 분야에서 정보와 지식의 자유로운 보급과 상호교환을 촉진시키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교육·사회·경제적 발전을 도와주며, 모든 민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정치·문화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오락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국제직접위성방송분야의 활동은 국제적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와 민족간 상호이해의 증진 및 우호관계와 협력의 강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B. 국제법의 적용

4. 국제직접위성방송분야의 활동은 국제법에 따라야 한다. 여기에는 UN헌장, 1967년 1월 27일의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의 탐험과 이용의 국가활동원칙에 관한 조약, 국제전기통신협약과 이에 부속된 무선통신규약의 관련 조항, 그리고 국가간 우호관계와 협력 및 인권에 관한 국제문건의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다.

C. 권리와 이익

5. 모든 국가는 국제직접위성방송분야에서 활동할 권리와 자국 관할권하의 개인이나 단체가 수행할 활동을 허가하는 권리를 동등하게 보유한다. 모든 국가와 민족은 국제직접위성방송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한 이를 얻어야 한다. 모든 관련 당사국이 상호합의한 조건에 따라 모든 국가는 차별없이 이 분야의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D. 국제협력

6. 국제직접위성방송분야의 활동은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이를 장려하여야 한다. 국제협력은 협상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직접위성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E. 평화적인 분쟁해결

7. 본 규제원칙에 포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국제적 분쟁은 UN헌장의 규정에 따라 평화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분쟁 당사국들의 협의로 마련된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F. 국가의 책임

8. 각 국가는 자국이 실시하거나 자국의 관할권하에서 실시된 국제직접위성방송분야의 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책임,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본 문건에 명시된 규제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국제적인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정부간 국제기구가 국제직접위성방송을 실시할 경우, 해당 기구와 참여하는 국가들이 이 규제원칙 제8조에 언급된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G. 협의할 의무와 권리

10. 국제직접위성방송서비스내의 모든 송신국이나 수신국은 동일한 서비스내의 다른 송신국이나 수신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이들 국가와 국제직접위성방송분야의 활동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때 이들 국가가 동일한 주제로 다른 국가와 협의하는 경우, 이를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H. 저작권과 인접권

11. 각 국가는 국제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함이 없이 이해당사국간이나 이들의 관할권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당 합법단체간의 협정을 통해서 저작권과 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쌍방간 또는 다자간에 걸쳐 협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력시 자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직접위성방송을 이용하는 개발도상국의 이익은 특별히 배려되어야 한다.

I. 국제연합에의 통지

12. 국제직접위성방송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이를 허가하는 국가들은 우주공간의 평화적 탐험과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활동의 성격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UN 사무총장에게 알려야 한다. 통지를 받은 사무총장은 이 내용을 즉시 일반공중과 국제 과학계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J. 국가간 협의와 협정

13. 국제직접위성방송서비스를 실시하거나 이를 허가하고자 하는 국가는 지체없이 수신국 또는 수신할 의사가 있는 국가에 통지하고, 이들 국가와 즉시 협의에 들어간다.
14. 국제직접위성방송서비스는 이 규제원칙 제13조의 조건이 충족된 이후,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관련 문건에 부합하고 이 규제원칙에 따라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기초할 때에만 가능하다.
15. 불가피한 위성신호의 전파월경의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관련 문건을 배타적으로 적용한다.

국경을 초월하는 TV에 관한 유럽협약 (European Convention on Transfrontier Television (1989.5.5, Council of Europe))

유럽평의회 회원국과 그 밖의 유럽문화협약 가맹국은 다음과 같이 조인한다.

유럽평의회는 회원국 공동의 유산인 이상과 원칙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회원국간의 화합을 도모함을 목표로 한다.

모든 인류의 존엄성, 인류의 동등한 가치가 이 원칙의 기본요소를 이루어야 한다.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수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제10조에 규정된 표현과 정보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근본원리이자 민주사회의 성장 및 모든 인류의 발전을 위한 기본조건이 되도록 한다.

방송정책의 주요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보와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 및 방송사업자의 독립성에 관한 원칙을 수호할 의무를 재확인한다.

모든 민주적 단체 및 정당의 다원성과 기회균등이 보장받는 상황에서 문화발전과 자유로운 의견형성을 위해서 방송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정보와 통신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출처가 어디든지 정보와 사상을 표현하고 추구하며, 받아들이고, 전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함을 확인한다.

일반공중이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점차 증가시킴으로써 유럽의 유산을 풍부하게 하고, 시청각 창작물을 발전시킨다.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유통을 장려하여 문화적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정치·교육·문화적 분야에서 일반공중의 기대에 부응한다.

유럽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광범위한 규정 체계가 필요함을 인식한다.

결의문 제2조와 매스미디어 정책에 관한 제1회 유럽각료회의 선언문을 유념한다.

TV광고의 기본원칙과 매스미디어에서의 남녀평등,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위성이용 및 유럽에서의 시청각물 제작 증진에 관한 현행 유럽평의회 권고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원칙을 정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과 취지

당협약은 송신되는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당협약의 취지는 가맹국간에 국경을 초월하는 TV프로그램의 송신과 재송신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당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a. '송신'은 일반 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TV프로그램을 코드화하거나 코드화되지 아니한 형태로 지상의 송신기나 케이블 또는 위성을 이용하여 최초로 송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개인의 요구로 이루어진 통신서비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b. '재송신'은 이용되는 기술적인 매개물에 관계없이 일반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방송사가 송신한 완성된 TV프로그램에 어떤 변화를 가하지 아니하고 수신과 동시에 송신하거나 이러한 TV프로그램중 중요한 부분을 수신과 동시에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 c. '방송사업자'는 일반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TV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송신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미 완성된 프로그램에 어떤 변화를 가하지 아니하고 송신하도록 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 d. '프로그램'은 전항(前項)의 역할을 하는 방송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제작물을 의미한다.
- e. '유럽의 시청각 제작물'은 유럽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제작하거나 공동제작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 f. '광고'는 상품의 판매나 구매, 임대를 촉진하고, 어떤 주장이나 사상을 제시하거나 이외에 광고주가 바라는 효과를 야기하기 위하여 일반공중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광고주에게 광고비에 합당한 대가나 이와 유사한 보상으로 송신시간이 주어진다.
- g. '스폰서쉽'은 방송활동이나 시청각물의 제작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성명, 상표 또는 자신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목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프로그램의 재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적용범위

당협약은 가맹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케이블이나 지상의 송신기 또는 위성을 이용하여 독립제작사나 기술적인 매개물을 통하여 송신 또는 재송신되어 1개국 이상의 다른 가맹국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제4조 수신과 재송신의 자유

가맹국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수호를 위한 협약 제10조에 따라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리고 수신과 송신의 자유를 보장하며 자국의 영토에서 당협약의 조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재

송신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5조 송신국의 의무

1. 각 송신국은 적절한 수단과 자국의 해당 기관을 통하여 제3조의 내용에 따라 자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독립제작사나 기술적인 매개물을 통하여 송신된 모든 프로그램이 당협약의 조항에 따르도록 한다.
2. 당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국가를 송신국으로 한다.
 - a. 지상 송신의 경우, 최초의 송출이 이루어진 가맹국
 - b. 위성 송신의 경우,
 - i) 위성 지구국이 위치한 가맹국
 - ii) 당협약의 가맹국이 아닌 국가에 지구국이 위치한 경우에는 주파수나 위성의 사용을 허가한 가맹국
 - iii) i), ii)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가 위치한 가맹국
3. 당협약의 가맹국이 아닌 국가가 송신한 프로그램을 제3조의 내용에 따라 어떤 가맹국이 자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독립제작사나 기술적인 매개물을 통하여 재송신했을 경우, 송신국 역할을 하는 가맹국은 적절한 수단과 자국의 해당 기관을 통하여 당협약의 조항에 따르도록 한다.

제6조 정보에 관한 규정

1. 방송사업자의 의무규정은 각 가맹국의 해당 관청에 의하여 발부된 허가사항 또는 해당 관청과 체결했거나 그밖의 다른 적법한 조치를 통하여 체결한 계약에 명백하고 충분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2. 방송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전송국의 해당 관청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정보에는 최소한 방송사업자의 명칭이나 관할지역, 소재지 및 지위, 법률상의 대표자 성명, 자본의 구성, 방송사업자가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성격, 취지 및 재정유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장 프로그램 규정

제7조 방송사업자에 관한 의무규정

1. 모든 프로그램은 방송과 내용에 관한 한, 인간의 존엄성과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특별히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의 프로그램은 금지한다.
 - a. 외설적인 프로그램, 특히 포르노물
 - b. 매우 극단적인 폭력물 또는 인종적 반감을 자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
2. 어린이나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이들이 시청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대에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방송사업자는 사실과 사건에 관한 뉴스를 공정하게 보도하여 자유로운 의견형성을 촉진한다.

제8조 반론권

1. 각 송신국은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이 국적이나 거주지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제3조의 내용에 따라 자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독립제작사나 기술적인 매개물을 통하여 송신 또는 재송신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반론권을 행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법적 또는 행정적 구제책을 강구할 기회를 갖도록 한다. 특히 반론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시기와 그 밖의 사항을 조정하도록 한다. 반론권이나 이에 상응하는 법적 또는 행정적 구제책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와 방식을 확실히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명칭이 적절한 방식으로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프로그램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9조 주요 사건에 대한 일반공중의 접근

가맹국은 제3조의 내용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공익과 관련된 사건을 송신하거나 재송신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여 1개국 이상의 가맹국 일반공중이 TV를 통하여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일반공중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문화적인 목적

1. 각 송신국은 방송사업자들로 하여금 뉴스, 스포츠, 게임, 광고 및 문자다중방송에 할당된 시간을 제외한 송신시간의 대부분을 유럽의 제작물 방송을 위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실행가능하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이를 보장한다. 이러한 시간은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시청자에 대한 정보, 교육, 문화 및 오락에 관한 책임을 고려한 것으로 적절한 기준에 근거하여 점진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2. 전항의 적용시 수신국과 송신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문제에 관한 자문을 구할 목적으로 어느 한 쪽의 요구에 따라 상설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을 제26조의 중재절차에 회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가맹국은 특히 시청각물 제작능력이 미흡하거나 소수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방송사업자간에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유럽의 방송제작 활동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수단과 절차를 공동으로 모색할 책임이 있다.
4. 가맹국은 당협약의 기초를 이루는 협동과 상호협력의 정신에 입각해서 제3조의 내용에 따라 자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독립제작사나 기술적인 매개물을 통하여 송신 또는 재송신된 프로그램이 언론의 다원성과 영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이에 따라 영화판권 소유자와 방송사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화는 영화관에서 최초로 개봉된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TV에서 방송할 수 없다. 그러나 방송사업자와 공동으로 제작한 작품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제3장 광고

제11조 일반기준

1. 모든 광고는 공정하고 정직하여야 한다.
2. 광고는 소비자의 이익을 오도하거나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용한 광고에서는 이들의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피하여야 하고, 어린이들의 민감한 감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광고주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편집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광고시간

1. 총 광고시간은 하루 방송시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스포츠 광고량이 1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 비율은 시청자에게 상품의 판매, 구매, 임대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직접 제시하는 형태의 광고를 포함하여 20%까지 증가할 수 있다.
2. 1시간중 스포츠 광고량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시청자에게 상품의 판매, 임대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직접 제시하는 형태의 광고는 하루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광고의 형식과 표현방식

1. 광고는 분명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시각적 또는 청각적으로 다른 프로그램과는 뚜렷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광고는 블랙으로 전송된다.
2. 잠재의식광고는 금지한다.
3. 특히 프로그램 내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여 주어 광고효과를 내는 부당한 광고는 금지한다.
4.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고정적으로 진행하는 사람들의 영상이나 음성을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광고의 삽입

1. 광고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삽입된다. 다음 제2항 내지 제5항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광고는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그 가치 및 권리소유자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사이에 삽입할 수 있다.
2. 서로 독립된 부분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나 휴식시간이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 및 행사·공연 프로그램에서 광고는 오직 이 부분들 사이나 휴식시간에만 삽입할 수 있다.
3. 시리즈물, 연속프로그램, 가벼운 오락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을 제외한 장편영화나 텔레비전 영화와 같은 시청각 제작물의 방송시간이 45분 이상일 경우, 광고는 45분마다 1회 삽입할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이 45분의 배수보다 적어도 20분이

초과할 경우, 광고가 삽입되는 횟수는 늘어날 수 있다.

4.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프로그램에 광고가 삽입될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서 한 광고가 나온 후 다음 광고가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20분이 경과하여야 한다.
5. 종교의식 방송중에 광고는 금지된다.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종교프로그램 및 어린이프로그램의 총 방송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 광고는 금지된다. 만약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이 30분 이상일 때에는 본조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5조 특정제품에 대한 광고

1. 담배광고는 금지한다.
2. 모든 종류의 알코올 음료광고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 a.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광고에서 알코올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미성년자처럼 보여서는 아니된다.
 - b. 알코올 소비를 육체적 행동 또는 운전과 연결시켜서는 아니된다.
 - c. 알코올이 치료제 역할을 한다거나 흥분제, 진정제 또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 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d. 무절제한 알코올 소비를 부추기거나 금주나 절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e. 음료의 알코올 함유량을 지나치게 강조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전송국에서 처방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의약품 및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는 금지한다.
4. 모든 의약품 및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는 분명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검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광고는 개인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제16조 특별히 하나의 가맹국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1. 경쟁시 왜곡된 사실을 방송하거나 하나의 가맹국의 TV시스템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특히 송신국 이외에 하나의 가맹국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경우, 대상 가맹국의 TV광고규정을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a. 관련 규정에서 하나의 가맹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독립제작사나 기술적인 매개물을 통하여 전송된 광고와 상대 가맹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독립제작사나 기술적인 매개물을 통하여 전송된 광고간에 차등을 두는 경우
 - b. 관련 가맹국들이 이 분야에서 쌍무 협정이나 다자간 협정을 체결했을 경우

제4장 스폰서십

제17조 일반기준

1. 단일 프로그램이나 시리즈물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스폰서가 있을 경우, 이를 프로그램

- 의 시작이나 끝부분에 적절한 크레디트를 부여하여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2. 스폰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프로그램에 관하여 방송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의무나 편집상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편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스폰서가 있는 프로그램 내에서는 스폰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특별히 홍보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구매, 임대를 부추겨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스폰서십 금지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가 금지된 제품의 제조나 판매, 서비스의 공급이 주요 업무인 자연인이나 법인은 프로그램의 스폰서가 될 수 없다.
2.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은 스폰서를 금지한다.

제5장 상호협력

제19조 가맹국간의 협력

1. 가맹국은 당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a. 가맹국은 비준, 수락, 승인, 가맹 등을 위임할 경우, 유럽평의회 사무국장과 연락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관청을 지정하고, 그 명칭과 주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 b. 1개 이상의 관청을 지정한 가맹국은 연락시 각 해당 관청의 권한을 호(號)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가맹국이 지정한 관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당협약의 제6조제2항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한다.
 - b. 다른 가맹국이 지정한 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당협약이 다루는 분야의 정보를 국내법과 관습법에 따라 제공한다.
 - c. 필요한 경우 또는 당협약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의 효율성을 현저하게 높일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른 가맹국들이 지정한 관청과 협조한다.
 - d. 당협약을 적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른 가맹국이 지정한 관청이 지적하면 이를 고려한다.

제6장 상설위원회

제20조 상설위원회

1. 당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가맹국은 상설위원회에 각 1명 이상의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다. 각 대표마다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유럽경제공동체(EEC)는 당협약에 가입한 회원국의 수만큼 투표권을

- 갖게 된다. 다만, 당협약에 가입한 회원국이 자국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유럽경제공동체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는 유럽경제공동체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당협약의 가맹국이 아니면서 제29조제1항에 언급된 국가는 참관인자격으로 상설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4. 상설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상설위원회는 회의에 참관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자체 발안이나 관련단체의 요청에 따라, 당협약에 포함되는 분야에서 전문 자격을 갖춘 국외단체나 국내단체, 정부단체나 비정부단체를 초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가나 단체를 초청하는 문제는 상설위원회 회원중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5. 상설위원회는 유럽평의회 사무국장이 소집한다. 첫 회의는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그 이후에는 1/3 이상의 가맹국이 동의하거나, 유럽평의회의 각료회의가 요청하거나,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럽평의회 사무국장의 발안이 있거나, 제21조 c호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개국 이상의 가맹국이 요구할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6. 상설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정족수는 가맹국의 과반수이다.
 7. 제4항과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설위원회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참석한 회원중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8. 당협약의 규정에 따라 상설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절차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 상설위원회의 기능

상설위원회는 당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상설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a. 협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맹국에게 권고한다.
- b.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된 수정안을 검토한다.
- c. 1개국 이상의 가맹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를 검토한다.
- d.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e. 제29조제1항에 언급되지 아니한 국가가 당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각료회의에 이들 국가를 추천한다.

제22조 상설위원회의 보고서

매 회의가 끝난 후, 상설위원회는 토론내용과 채택된 결정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가맹국과 유럽평의회 각료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개 정

제23조 개 정

1. 모든 가맹국은 당협약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개정안을 제안하면 유럽평의회 사무국장에게 통보되고, 사무국장은 이를 유럽평의회 회원국, 그 외의 유럽문화협약 가맹국, 유럽경제공동체 그리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당협약에 가입했거나 가입하도록 요청받은 모든 비회원국에게 알려야 한다. 유럽평의회 사무국장은 개정안 제안서에 관한 통보를 받은 다음 적어도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상설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상설위원회는 제안된 모든 개정안을 검토한 후, 상설위원회 회원중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채택된 원안을 승인받기 위하여 각료회의에 제출한다.
4. 모든 개정안은 사무국장이 모든 가맹국으로부터 수락 통지를 받은 후 30일이 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8장 협약위반

제24조 협약위반

1. 가맹국은 당협약의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 전송국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두 당사국은 제19조, 제25조 내지 제26조 규정에 기초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만약 협약위반사실이 중요한 공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의 제1문,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과 관련된 명백하고 심각한 것이거나 통보후에도 2주간 위반행위가 계속된다면, 수신국은 위반한 프로그램의 재송신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3. 그 밖의 다른 협약위반의 경우, 만약 위반행위가 계속된다면 수신국은 제4항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통보 후 8개월간 위반한 프로그램의 재송신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4.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재송신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없다.

제9장 분쟁의 해결

제25조 조 정

1. 당협약 적용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국들은 이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당사국중 어느 한 쪽도 반대하지 않는다면, 상설위원회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적당한 시기에 당사국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전항의 규정하에 상설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편의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26조 중재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들이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측의 합의하에 당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된 중재절차에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만약 조정절차를 개시하자는 첫 번째 요청후 6개월 내에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국중 어느 한 쪽의 요구로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2. 모든 가맹국은 당협약의 부속서에 실린 중재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동일한 의무를 수용하는 다른 가맹국에 대하여 사실상 강제적인 것이며, 특별한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인정함을 선언할 수 있다.

제10장 기타 국제협정 및 가맹국의 국내법

제27조 기타 국제협정 및 합의

1. 당협약의 가맹국임과 동시에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인 국가에는 유럽경제공동체 규칙을 적용하고, 특정한 관련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럽경제공동체 규칙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협약의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2. 당협약은 가맹국이 국제협정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국제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쌍무협정의 경우, 당협약은 이러한 협정의 결과로 생겼거나 다른 가맹국의 권리향유와 의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가맹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할 수 없다.

제28조 당협약과 가맹국 국내법의 관계

당협약은 가맹국이 제3조의 내용에 따라 자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독립제작사나 기술적인 매개물을 통하여 송신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당협약보다 강력하고 세부적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제11장 종결규정

제29조 서명과 효력발생

1. 당협약은 유럽평의회 회원국과 그 밖의 유럽문화협약 가맹국, 그리고 유럽경제공동체의 서명으로 제정된다. 당협약은 비준, 수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 수락, 승인은 유럽평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된다.
2. 당협약은 적어도 5개국의 유럽평의회 회원국을 포함한 7개국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도록 동의를 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돌아오는 첫번째 달의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어느 국가든지 서명할 때 또는 그 국가와 관련된 당협약의 내용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언제라도 당협약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겠다고 공표할 수 있다.
4. 협약이 체결되도록 동의를 표시한 제1항에 언급된 국가나 유럽경제공동체에 대해서 당협약은 비준, 수락, 승인을 위임한 날부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돌아오는 첫번째 달의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0조 비회원국의 가입

1. 당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 유럽평의회 각료회의는 협약 당사국에 문의를 거친 다음 유럽평의회 규약 제20조 d의 규정에 따른 과반수의 동의 또는 각료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협약 당사국 대표자들의 만장일치를 통해서 어떤 국가라도 당협약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다.
2. 가입하는 국가에 대해서 당협약은 유럽평의회 사무국장에게 가맹을 위임한 날부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돌아오는 첫번째 달의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1조 영토에 대한 협약의 적용

1. 모든 국가는 서명이나 비준, 수락, 승인, 가맹을 위임할 때, 당협약을 적용할 영토나 지역을 명시할 수 있다.
2. 모든 국가는 차후에라도 유럽평의회 사무국장에게 통지서를 보냄으로써 통지서 명시한 다른 영토까지 당협약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영토에 대해서 당협약은 사무국장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돌아오는 첫번째 달의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제작된 통지서는 사무국장에게 통보문을 보내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사무국장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돌아오는 첫번째 달의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2조 유보조항

1. 서명할 때 또는 비준, 수락, 승인, 가맹을 위임할 때 다음과 같은 유보조항을 둔다.
 - a. 모든 국가는 당협약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알코올 음료광고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자국의 영토에서 재송신하는 것을 국내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제한한다고 통지할 수 있다.
 - b. 영국은 상업방송위원회가 자국의 영토에서 지상의 매개물을 통해 방송한 시가, 파이프 담배광고와 관련해서 당협약 제15조제1항에 명시된 담배광고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유보조항은 없다.
2. 전항에 따른 유보조항은 거부할 수 없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보조항을 마련한 협약 당사국은 유럽평의회 사무국장에게 통보문

을 보내 유보조항의 전체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사무국장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당협약의 규정에 대하여 유보조항을 마련한 가맹국은 다른 가맹국으로 하여금 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유보조항이 일부에 적용되거나 조건부라면, 다른 가맹국이 수락한 경우에 한하여 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 협약의 폐기

1. 모든 가맹국은 언제든지 유럽평의회 사무국장에게 통보문을 보내 당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사무국장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돌아오는 첫번째 달의 1일에 협약은 무효화된다.

제34조 통 보

유럽평의회 사무국장은 유럽평의회 회원국, 유럽문화협약 가맹국, 유럽경제공동체, 그리고 당협약에 가입했거나 가입하도록 요청받았던 모든 국가에 다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a. 모든 서명
- b. 모든 비준, 수락, 승인, 가맹의 위임
- c. 제29조,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당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날짜
- d.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모든 보고서
- e. 당협약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결의문, 통지서, 통보문, 통신문

당협약은 하기 서명인의 입회하에 정식으로 공인되어 조인되었다.

당협약은 1989년 5월 5일,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로 조인되었으며, 이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사본 한 부는 유럽평의회 문서국에 보관하여야 한다. 유럽평의회 사무국장은 인증된 사본을 유럽평의회 각 회원국, 유럽문화협약 가맹국, 유럽경제공동체, 그리고 당협약에 가입하도록 요청받은 모든 국가로 보내야 한다.

부속서 : 중재

1. 가맹국이 중재를 요구하려면 유럽평의회 사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시에는 분쟁 상대국 및 분쟁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무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당협약에 가입한 모든 가맹국에게 알려야 한다.
2.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과 가맹국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를 요구한 경우, 이 사실을 해당 회원국과 유럽경제공동체 모두에게 알려야 하며, 이 양측은 공동으로 중재요청 접수후 1개월 이내에 회원국과 유럽경제공동체중 어느 한쪽이 분쟁의 당사자가 될 것인지 또는 양측 모두가 분쟁 당사자가 될 것인지를 사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상술한 기한내에 이와 같은 통보가 없을 경우, 중재심판의 규약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해당 회원국과 유럽공동체는 하나로 간주되어 공동으로 분쟁의 당사자가 된다. 해당 회원국과 유럽경제공동체가 공동으로 분쟁의 당사자라고 주장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본 항에 나오는 사례의 경우, 제4항제1문에 명시된 1개월이라는 기한은 2개월로 연장된다.
3. 중재심판은 3인이 진행한다. 분쟁 당사국은 각각 1인의 중재자를 지명한다. 이와 같이 지명된 중재자 2인은 의견을 모아 심판소장이 될 세 번째 중재자를 지명한다. 이 세 번째 중재자는 분쟁 당사국의 어느 한쪽의 국적을 가지거나, 어느 한쪽의 영토에 거주하거나, 어느 한쪽에 고용되어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에 의존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유럽평의회 사무국장이 중재요청을 알린 후 1개월 내에 분쟁 당사국중 어느 한쪽이 중재자를 지명하지 못했을 경우, 추가로 주어진 1개월 내에 상대국의 요구로 유럽인권재판소 소장이 이를 지명한다. 만약 소장이 결정을 내릴 수 없거나 소장이 분쟁 당사국 어느 한쪽의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부소장이나 분쟁 당사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최고 연장자인 판사가 지명한다. 두번째 중재자를 지명한 후 1개월 내에 중재심판소장이 지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5. 공석이 생겨 이를 보충할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6. 2개국 이상의 가맹국은 합의를 통하여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중재자를 공동으로 지명한다.
7. 분쟁 당사국과 상설위원회는 중재심판의 효과적인 진행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8. 중재심판소는 자체적으로 절차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회원국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중재심판소가 내린 판정은 확정적이고 구속력이 있다.
9. 중재심판소가 내린 판정을 유럽평의회 사무국장에게 통보하고, 사무국장은 이를 당협약의 모든 가맹국에게 알려야 한다.
10. 분쟁의 각 당사국은 각자 지명한 중재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즉, 중재에 소요되는 비용 뿐만 아니라 상대국 중재자에게 소요되는 비용도 공평하게 분담하여야 한다.

‘국경없는 텔레비전’ 지령

(‘Television Without Frontiers’ Directive (1989.10.3/1997.6.30, EC/EU))

1989년 10월 3일 유럽공동체 각료이사회 지령(89/552/EEC) : TV방송활동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법률, 명령, 행정처분으로 제정한 규정의 조정

유럽공동체(EC)의 각료이사회는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제정한 조약, 특히 제57조제2항과 제66조에 유념한다. 그리고 유럽의회와 협력하며 집행위원회의 제안과 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에 유념한다.

1. 조약에 명시되어 있듯이 EC의 목표는 유럽 민족간의 보다 긴밀한 관계확립, EC 소속 국가간의 유대강화, 유럽을 구분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공동노력을 통하여 회원국의 경제 및 사회적 발전보장, 각 민족의 생활조건의 지속적인 향상, 평화와 자유의 보호와 강화 등을 포함한다.
2. EC조약은 회원국간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하고 공동시장내의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를 포함하여 공동시장의 설립을 규정한다.
3. 다양한 기술을 통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송신되는 방송은 EC의 목표를 이행하는 방법이 된다. 국내시장을 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및 배급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 보장하고 TV방송이 수행하는 공익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쟁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유럽평의회는 국경을 초월하는 TV에 관한 유럽협약을 채택했다.
5. EC조약은 독립제작사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규정의 조정을 위한 지령을 마련한다.
6. TV방송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EC조약의 내용에 따른다.
7. EC조약은 지불의 대가로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방송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정하여 방송의 문화적인 또는 기타 다른 내용에 근거하여 제한하거나 방송의 수신 대상인 시청자 이외에 EC내에 위치한 회원국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8. 이와 같이 TV프로그램의 방송과 배급에 적용되는 권리는 일반원칙으로서 EC규약에 특별히 명시된 사항인 바, 모든 회원국이 비준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수호를 위한 협약 제10조제1항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TV프로그램의 방송과 배급에 관한 지령은 상기 조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이는 상기 조항의 제2항과 EC조약 제56조제1항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9. TV방송사업자와 케이블 운영업자의 활동에 관하여 회원국이 마련한 법률, 명령, 행정조치에는 몇몇 상이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EC내에서 방송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거나 공동시장내의 경쟁을 침해할 수도 있다.
10. EC내의 방송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같은 요인들은 EC조약하에서 철폐되어야 한다.
11. 이러한 제한요인들을 철폐할 경우에는 적용가능한 법률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

- 의 조정은 관련 전문활동과 EC내의 정보와 사상의 자유로운 이동을 활성화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12. 그 결과 모든 방송은 방송을 송출하는 회원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
 13. 본지령은 방송 송신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칙을 정한다. 따라서 본지령은 허가제도, 판리인증, 과세를 포함한 재정 및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회원국과 해당 기관의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회원국의 독자적인 문화개발과 EC내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14. 공동시장에서는 EC내에서 제작되고 수신되는 모든 방송, 특히 다른 회원국에서의 수신을 목표로 하는 방송의 경우 송출하는 회원국에서 일반공중이 수신하는 방송에 적용되는 법률과 본지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송출하는 회원국에서 방송이 본지령에 의하여 조정된 국내법을 준수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수신하는 회원국에서 동일한 근거로 2차적인 통제를 하지 않고도 방송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 그러나 수신하는 회원국은 예외적으로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 TV방송의 재송신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16. 회원국은 TV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이동과 교류를 저해하거나 다원성, 방송되는 정보와 전체적인 정보부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특권적인 지위를 조장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17. TV방송규칙에 특별히 한정된 본지령은 특히 소비자 보호, 공정한 사업거래와 경쟁에 관한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현행 또는 추후의 EC활동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8.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더 용이하게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19. EC의 모든 TV프로그램이 유럽의 시청자물 제작을 장려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요구조건은 위에 언급한 기업에서의 제작, 독립제작 및 배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조건은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미 제안된 방안이나 추후의 다른 방안들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0. 그러므로 회원국은 국내시장을 개방하는 공동규칙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실행가능하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모든 회원국의 TV프로그램에서 유럽제작물을 다수의 비율로 확보함으로써 필요한 투자를 회복하기 위해 TV제작물에 대한 충분한 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동규칙과 목표의 이행여부를 점검받기 위하여 회원국은 본지령에서 유럽제작물과 독립제작물에 할당된 비율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율을 산출할 경우,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적절한 경우에 특히 수년간의 진행상황, 프로그램편성에서 초방 방송물의 분량, 신규 TV방송사업자의 특별한 상황 및 시청자물 제작능력이 빈약하거나 소수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특별한 상황 등을 고려한 의견이 첨부된 이 보고서를 다른 회원국들에게 보내야 한다.
 21.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럽제작물'의 개념을 정의할 때에는 EC규약에 따른 제3조제1항과 본지령의 목표를 고려하여 회원국이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TV방송사업자에 관하여 더욱 상세한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2. 특히 시청각물 제작능력이 빈약하거나 소수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유럽의 시청각물 제작과 배급을 활성화하고 발달시키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채택할 목적으로 EC규약에 따라 적절한 수단과 절차를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다. 유럽의 시청각물 제작을 발달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EC규약에 따르는 한 가능하다.
23. 실행가능한 경우, 방송의 일정비율을 방송사업자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독립제작사에게 위임하면 TV제작의 새로운 원천, 특히 중소제작사의 창작욕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치는 문화관련 직종과 이 분야 종사자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판로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회원국이 독립제작사의 개념을 정의할 때에는 이러한 목표에 유념하여 중소제작사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TV방송사와 프로그램을 공동제작하고 있는 자회사가 재정에 참여하도록 허가한다.
24. 회원국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영화관에서의 작품 최초 상영일과 TV에서의 최초 방송일 사이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장한다.
25. 특정 언어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기 위하여 회원국은 특히 언어 기준에 근거하여 더욱 상세하고 엄격한 규칙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들은 EC규약에 따라야 하고, 특히 다른 회원국에서 송출한 방송의 재송신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26. TV시청자로서의 소비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 TV광고는 최소한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야 하고, 회원국은 자국 관할권하의 TV방송사업자에 대해 더욱 상세하고 엄격한 규칙을 정하거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른 조건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27. 전적으로 자국의 영토만을 대상으로 하여 1개국 이상의 회원국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신할 수 없는 방송에 관한 EC규약에 대하여, 회원국은 이런 특수한 방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광고의 삽입에 대한 조건과 광고의 분량에 대한 제한규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8. 담배나 그 밖의 담배관련 제품의 TV광고를 금지한다.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제품을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담배제품 또는 이의 제조나 판매를 주로 하는 기업의 상표나 상징 또는 기타 두드러진 특징들을 사용하여 광고에 대한 금지조치를 피하고자 하는 간접적인 광고도 포함된다.
29. 또한 방송사업자를 자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에 두고 있는 회원국에서 처방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의약품과 의료행위에 대한 모든 TV광고를 금지하고, 알코올제품에 대한 TV광고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의 제정이 필요하다.
30. 프로그램 재정면에서 스폰서십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31. 무엇보다도 프로그램과 TV광고에서 미성년자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성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칙의 도입이 필요하다.
32. TV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에서 사실과 사건을 공정하게 제시하여야 하고, 또한 TV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으로 인해 자신의 법익을 침해당한 사람들이 반론권이나 이에 상응하는 구제책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특별한 의무를 준수하는 일이 중요하다.

1997년 6월 30일 유럽연합의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지령(97/36/EC) : TV방송활동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법률, 명령, 행정처분으로 제정한 규정의 조정에 관한 각료이사회 지령(89/552/EEC)의 개정

유럽연합(EU)의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는 EC가 제정한 조약, 특히 제57조제2항과 제66조에 유념한다.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제안과 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에 유념한다. 그리고 1997년 4월 16일 조정위원회가 승인한 공동안을 고려하여 조약의 제189b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 (1) 각료이사회 지령 89/552/EEC는 내부 시장의 TV방송에 대한 법적 체계를 구성한다.
- (2) 지령 89/552/EEC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지령을 채택한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지령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의회, 각료이사회 및 경제사회위원회에 제출하고, 필요할 경우 TV방송분야의 발전에 맞추어 지령을 보완한 추가 제안서를 마련한다.
- (3) 지령 89/552/EEC의 적용과 이에 대한 보고서로 인해 본지령하의 회원국에 대한 개념 정의와 이들의 의무를 분명히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4) 1994년 7월 19일 '유럽의 정보사회로 가는 길: 실행계획'이란 제목의 보도지에서, 집행위원회는 송신방법에 관계없이 시청각 프로그램의 특수한 성격, 특히 문화적,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서 EC내에서 시청각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호하고 신기술로 인해 가능해진 발전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시청각 서비스의 내용에 적용할 규제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5) 각료이사회는 1994년 12월 18일에 열린 회의에서 이 실행계획을 환영했고, 유럽 시청각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 (6) 집행위원회는 시청각 서비스와 정보 서비스 분야에서 미성년자와 인간의 존엄성 보호에 관한 녹서를 제출했고, 이러한 신규 분야의 문화적인 면을 개발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 녹서를 제출할 책임을 맡았다.
- (7) 신규 시청각 서비스에 관한 입법체계는 시청각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지령의 주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 (8) 회원국은 정보에 관한 기본원칙의 위반이나 자유로운 이동과 경쟁에 대한 상이한 규정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하여 TV방송에 필적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9) 1994년 12월 9일과 10일 에센에서 개최된 유럽평의회 정상회의에서는 집행위원회에 차기 회의전까지 지령 89/552/EEC을 개정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 (10) 지령 89/552/EEC의 적용후 특별히 시청각 분야에 적용될 관할권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U법원의 판례를 고려해 볼 때 설립준칙은 특정 회원국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주요기준이 된다.
- (11) 1991년 7월 25일 팩토르탐 소송의 판결에서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설립 개념에

는 무한정한 기간동안 고정 시설물을 통한 실제경제활동이 포함된다.

- (12) TV방송사의 설립은 본부의 위치, 통상적으로 프로그램 정책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장소, 일반공중에게 방송될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장소, 그리고 TV방송활동에 필요한 인력의 상당 부분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 등과 같은 일련의 실질적인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 (13) 일련의 실질적인 기준 마련은 본지령이 다루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한 회원국이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철저한 절차를 통해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례를 고려하고 관할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52조의 내용과 회원국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최종 기준으로 EC를 설정한 조약에 따라 설립 기준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4) 다른 회원국에 위치해 있으나 전체 방송활동이나 대부분의 방송이 자국의 영토를 대상으로 하는 TV방송사에 대하여 만약 자국에 방송사를 설립할 경우에 적용받게 될 법률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회원국에 설립했다면, 회원국은 해당 방송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법원은 계속 주장해 왔다.
- (15) EU조약 제F(2)조에는 EU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수호를 위한 유럽협약에 의하여 EC 규약의 일반원칙으로 보장된 기본권을 준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TV방송의 수신제한 또는 재송신의 일시정지를 목표로 하는 모든 조치는 본지령으로 개정될 지령 89/552/EEC 제2a조에 따라 이러한 일반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 (16)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EC 전체에 본지령으로 개정될 지령 89/552/EEC의 규정을 효과적으로 적용한다.
- (17) 다른 회원국을 포함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제3국은 국내법에 따라 본지령으로 개정될 지령 89/552/EEC의 적용에서 비롯되는 국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TV방송사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국의 해당 사법기관이나 다른 기관보다 앞서 자국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 (18) 회원국은 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중이 TV방송을 통하여 월드컵축구경기나 유럽축구선수권대회와 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국내외 사건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자국 관할권하의 방송사업자들이 주요 사건에 대하여 독점방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규제하는데 목표를 두면서 EC규약에 부합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 (19)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불확실성과 시장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TV방송의 자유로운 이동과 일반공중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국가조치를 회피하지 못하게 할 필요성을 조정하기 위하여 EC규약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20) 특히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국 이외에 다른 회원국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사건에 대한 독점방영권을 구입한 방송사업자가 이를 행사함에 대한 규정을 본지령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방영

- 권 구입을 막기 위하여 이 규정을 본지령이 공포된 후 체결된 계약과 본규정의 실시후에 발생한 사건에 적용한다. 그리고 본지령의 공포보다 앞서 계약이 갱신되었을 경우,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한다.
- (21) 본지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즉 EU나 사건이 일어난 회원국에서 일반공중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사건이며 법적으로 사건에 대한 권리를 매각할 자격이 있는 주체가 미리 편성한 사건이어야 한다.
- (22) 본지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료TV'란 인가료 또는 케이블TV 기본시청료와 같이 각 회원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방송기금의 형태를 포함해서 어떤 대가없이 일반공중이 무료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공영 또는 상업방송을 의미한다.
- (23) 회원국은 제3국에서 송출되거나 본지령으로 개정될 지령 89/552/EEC 제2조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방송에 대하여 EC규약과 EC의 국제적 의무에 부합할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다.
- (24) 유럽제작물 진흥에 관한 국가간 법률의 차이에서 비롯된 장애를 없애기 위하여 본지령으로 개정될 지령 89/552/EEC는 이러한 법률을 조화시키는데 목표를 둔 규정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러한 규정에는 경쟁의 조건을 조정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 (25) EC창설조약 제128조제4항에서는 조약의 다른 규정에 따라 EC의 활동에 있어서 문화적인 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 (26) 집행위원회가 1994년 4월 7일 채택한 'EU의 시청각정책에서 유럽의 프로그램산업 강화전략'에 관한 녹서에서는 특히 시청각 분야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유럽제작물 진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청각 분야의 양성, 개발 및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MEDIA II 프로그램은 유럽제작물 발전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집행위원회는 보증기금과 같은 EC의 장치를 통해서도 유럽제작물의 제작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27)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자, 프로듀서, 작가 및 그 밖의 전문가로 하여금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유럽영화 제작을 목표로 하여 더욱 상세한 구상안과 전략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 (28) 위의 사안과 더불어 프로그램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령 89/552/EEC 제4조제3항에 따라 1994년 3월 3일과 1996년 7월 15일에 위원회가 채택한 지령 89/552/EEC 제4조와 제5조의 적용에 관한 통신문에서는 유럽제작물 진흥방안을 통해 프로그램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는 있으나 TV방송 분야의 발달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29) 회원국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언어로만 방송되는 채널은 제4조와 제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회원국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언어로 송신시간의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 시간을 방송한 경우, 이 시간 동안만 제4조와 제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30) 유럽제작물의 비율은 경제 현실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혁

신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 (31) EC는 유럽제작물의 제작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의 시청각물 제작능력과 EU의 소수언어를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독립제작사를 활성화시킨다. 회원국은 '독립제작사'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제작사의 소유자, 동일한 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프로그램의 분량 및 2차적 권리의 소유자 등과 같은 기준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 (32) 영화관 영화작품 TV에서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주로 이해 당사자들 또는 관련 전문가들간의 합의로 정해진다.
- (33) 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광고는 지령 92/28/EEC 규정을 적용받는다.
- (34) 방송사업자의 자사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에서 직접 응용하여 부수적으로 만든 제작물에 대한 안내 또는 무료로 방송되는 공공발표문과 자선호소문에 할당된 송신시간은 광고나 TV쇼핑에 할당된 1일 최대 송신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35) 경쟁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는 관련 프로그램에 부수적이며, 그 프로그램에서 직접 파생되어 만들어졌다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제작물에 대한 안내로 제한하여 적용한다. 부수적으로 만든 제작물이란 특별히 시청자들이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이 프로그램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작물을 의미한다.
- (36) TV쇼핑과 경영자에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활동 및 EC내의 상품과 서비스의 실제 판매의 개발을 위하여 그러한 방송의 형태와 내용을 규제하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송신시간에 대한 규칙을 수정하고 심도있게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37) 전적으로 TV쇼핑만을 방송하지 아니한 채널에 대하여 관련 규정의 이행을 점검하는 해당 국가기관은 TV쇼핑 스파트, 스파트 광고 및 그 밖의 다른 형태의 광고 송신시간과 TV쇼핑 송신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TV쇼핑은 적어도 처음과 끝 부분에서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수단을 통하여 다른 방송들과는 뚜렷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
- (38) 본지령으로 개정될 지령 89/552/EEC는 뉴스, 스포츠, 영화, 다큐멘터리, 드라마와 같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고 오로지 TV쇼핑이나 자사홍보만을 하는 채널에 적용된다. 이는 본지령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 밖의 EC 방송채널에서 그러한 채널의 방송내용을 침해하지 않기 위함이다.
- (39) 자사홍보 활동은 방송사업자가 자사의 제작물, 서비스, 프로그램, 채널 등을 선전하는 특수한 광고 형태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프로그램에서 발췌하여 만든 예고편은 프로그램으로 간주한다. 자사홍보는 새롭고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현상이므로 이에 관한 규정은 앞으로 본지령을 검토할 때 특별히 검토되어야 한다.
- (40) 미성년자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성장을 보호할 규칙을 명시하여야 한다. 완전히 방송 금지를 받아야 하는 프로그램과 적절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함으로써 방송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뚜렷이 구별함으로써 공익에 대한 회원국과 EC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41) 본지령의 미성년자보호와 공공질서에 관한 어느 규정에도 TV방송을 사전에 통제하여

문제시되는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고 명시할 필요는 없다.

(42)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해당기관과 연계하여 미성년자의 시청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나 보호자의 관리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추가조치의 장단점을 조사한다. 이 조사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부모나 보호자가 특정 프로그램을 여과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새로운 유형의 TV
 - 적절한 등급제도의 제정
 - 가족의 TV시청방침 마련과 그 밖의 교육적이고 기민한 조치에 대한 장려
 - 방송사업자, 프로듀서, 교육자, 미디어 전문가, 관련 단체 등과 같은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 뿐만 아니라 유럽과 그 밖의 지역에서 이 분야에 관하여 얻은 경험
- 이는 필요하다면 제26조에 정해진 최종시한 전에 법적 조치 또는 그 밖의 조치에 관하여 적절히 제안하기 위함이다.

(43) 처방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의약품과 의료행위의 제조나 판매를 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TV프로그램을 스폰서할 수 있도록 지령 89/552/EEC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러한 스폰서십은 처방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의약품과 의료행위에 대한 TV광고의 금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44) 지령 89/552/EEC와 본지령은 EC내에서 TV방송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다. 회원국은 본지령으로 조정된 분야에서 자국 관할권하의 방송사업자에게 더욱 상세하고 엄격한 규칙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에는 특히 언어정책의 목표, 정보, 교육, 문화 및 오락 제공자라는 TV의 역할수행에서 공익의 보호, 정보산업과 미디어에서의 다원성 보장, 특권적인 지위의 남용, 그리고 합병, 계약, 취득, 또는 이와 유사한 이니셔티브를 통한 특권적인 지위의 확립이나 강화를 막기 위한 경쟁의 보호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은 EC규약에 부합하여야 한다.

(45) 회원국은 자국 방송기구의 체계내에서 특히 유럽제작물에 상당한 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포함한 방송기구의 공익의 임무를 명시하여 이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유럽 시청각물 지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46) EU조약 제B조에는 EU가 자체적으로 정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유럽공동체에서 얻은 경험'을 완전하게 보존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본지령을 채택한다.

제1장 용어의 정의

제1조

본지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a) 'TV방송'은 일반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TV프로그램을 코드화하거나 코드화되지 아니한 형태로 위성을 포함해 케이블 또는 전파송신 매체를 이용하여 최초로 송출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일반공중에게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방송사간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이동도 포함된다. 그러나 텔레카피, 전자정보뱅크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처럼 개인의 요구로 정보나 다른 메시지를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b) '방송사업자'는 (a)의 내용에 따라 편집상의 책임을 지고 TV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송신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송신하도록 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 (c) 'TV광고'는 광고비의 대가나 이와 유사한 보상으로 방송되는 것 또는 공기업이나 사기업이 자사 홍보를 목적으로 무역, 사업, 기술 또는 직업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 권리, 의무를 포함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불한 광고비의 대가로 방송되는 것을 의미한다.
- (d) '편법광고'는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에 제품생산자나 서비스공급업자의 제품이나 서비스, 이름, 상표, 활동 등을 말이나 그림으로 표현하여 광고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일반공중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광고비나 이와 유사한 보상으로 이와 같은 표현을 내보냈을 경우, 이는 의도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 (e) '스폰서십'은 TV방송활동이나 시청각물 제작에 관여하지 아니한 공기업이나 사기업이 자신의 이름, 상표, 이미지, 활동, 제품 등을 알릴 목적으로 TV프로그램의 재정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f) 'TV쇼핑'은 광고비의 대가로 부동산이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이를 직접 제시하는 방송을 의미한다.

제2장 총 칙

제2조

1. 회원국은 자국 관할권하의 방송사업자들이 전송한 모든 TV방송이 다른 회원국에서 일반공중의 수신을 목표로 하는 방송에 적용되는 법체계를 준수하도록 한다.
2. 본지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을 회원국 관할권하의 방송사업자로 한다.
 - 제3항에 해당되는 회원국에 위치한 방송사업자
 - 제4항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
3. 본지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회원국에 위치한 것으로 본다.
 - (a) 방송사업자의 본부가 위치해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편집상의 결정을 내리는 회원국
 - (b) 방송사업자의 본부는 한 회원국에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편집상의 결정은 다른 회원국에서 하는 경우, TV방송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의 상당부분이 근무하고 있는 회원국. 만약 TV방송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의 상당부분이 방송사업자의 본부가 위치한 회원국과

프로그램 편집결정을 내리는 회원국 두 곳에 각각 유사한 비율로 근무를 하고 있을 경우, 본부가 있는 회원국, 만약 앞의 두 회원국 어디에서도 TV방송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의 상당부분이 근무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 그 해당 회원국의 법체계에 따라 처음 방송을 시작한 회원국, 다만, 방송사업자가 해당 회원국 경제와 안정적이며 효과적인 연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c) 방송사업자의 본부는 한 회원국에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은 제3국에서 하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 TV방송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의 상당부분이 근무하고 있는 회원국
- 4.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방송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회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것으로 본다.
 - (a) 방송사업자에게 주파수사용을 허가한 회원국
 - (b) 방송사업자에게 주파수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자국의 위성을 사용하게 하는 회원국
 - (c) 방송사업자에게 주파수나 자국의 위성을 사용하게 허가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자국의 위성 지구국을 사용하게 하는 회원국
- 5.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어느 회원국이 관할권을 갖는가 하는 문제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52조의 내용과 EC조약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위치한 회원국으로 본다.
- 6. 본지령은 오로지 제3국의 수신만을 목표로 하여 1개국 이상의 회원국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신할 수 없는 방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a조

- 1. 회원국은 본지령을 준수하는 경우에 수신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국의 영토에서 다른 회원국의 TV방송의 재송신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2.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잠정적으로 제1항을 유보할 수 있다.
 - (a)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신되는 TV방송이 명백하고 심각하게 제22조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제22a조를 위반했을 경우
 - (b) 방송사업자가 지난 12개월동안 적어도 두차례에 걸쳐 (a)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 (c) 관련 회원국이 방송사업자와 집행위원회에 위반사실과 자국이 취할 조치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도 그러한 위반사실이 재차 발생한 경우
 - (d) 방송을 송신한 회원국과 집행위원회의 협의에서 (c)에 규정된 통보후 15일 이내에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위반사실이 계속될 경우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취할 조치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그 조치가 EC규약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적합하지 못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회원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를 포기하여야 한다.
- 3. 제2항은 관련 방송사업자를 자국의 관할권하에 두고 있는 회원국이 문제시되는 위반사실에 대해서 절차나 구제책, 제재조치를 적용하는 일에 장애를 미쳐서는 아니된다.

제3조

1. 회원국은 자국 관할권하의 TV방송사업자가 본지령이 미치는 분야에서 더 강력하고 상세한 규칙을 따르도록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자국의 법체계내에서 자국 관할권하의 TV방송사업자들이 본지령의 규정을 효율적으로 따르도록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이를 보장한다.
3.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을 포함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제3국이 자국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사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에 문의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a조

1. 각 회원국은 EC규약에 따라 한 회원국의 관할권하의 방송사업자들이 자국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사건을 독점적으로 방송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무료방송에서 생방송과 녹화방송 등을 통해 보도되는 사건을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한다. 조치를 마련한 경우, 사건관련 회원국은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국내의 사건들을 지정하여 목록을 작성한다. 이는 적절한 시간내에 명료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회원국은 또한 이러한 사건들을 전체나 일부를 생방송할지, 아니면 필요 또는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경우 전체나 일부를 녹화방송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취했거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경우 이를 즉시 집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후 3개월 이내에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조치가 EC규약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다른 회원국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제23a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들이 취한 조치를 즉시 EC공보에 실어야 하고, 적어도 1년에 한번씩 회원국들이 취한 조치를 모은 목록을 발간하여야 한다.
3. 회원국은 본지령이 공포된 다음 자국 관할권하의 TV방송사업자들이 구매한 독점권을 행사하여 사건관련 회원국이 제1항에 따라 무료방송에서 전체나 일부를 생방송할지 아니면 필요 또는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경우 전체나 일부를 녹화방송할지 지정한 사건을 그 회원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자국의 법률 체계내에서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이를 보장한다.

제3장 TV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의 촉진

제4조

1. 회원국은 방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제6조의 내용에 따라 뉴스, 스포츠, 게임, 광고, 문자다중방송, TV쇼핑 등에 할당된 시간을 제외한 송신시간의 대부분을 유럽제작물 방송을 위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실행가능하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이를 보장한다. 이러한 비율은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정보, 교육, 문화 및 오락에 관한 책임을 고려한 것으로 적절한 기준

에 근거하여 점진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비율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라도, 관련 회원국의 1988년 평균치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경우 1988년 평균치를 1990년 평균치로 대신한다.
3. 1991년 10월 3일부터 회원국은 2년에 한번씩 집행위원회에 본항과 제5항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특히 관련 회원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내의 모든 TV프로그램이 본조와 제5조에 명시된 비율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통계표와 정해진 비율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그 원인 및 그 비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다른 회원국들과 유럽의회에 적절한 경우 의견이 첨부된 보고서를 보낸다. 집행위원회는 EC조약의 규정에 따라 본조와 제5조를 적용하도록 한다. 집행위원회는 의견에서 특히 수년간의 진행상황,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의 초방 방송물의 역할, 신규 TV방송사업자의 특별한 상황 및 시청각물 제작능력이 빈약하거나 소수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특별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각료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수정제안서를 첨부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본조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본지령의 채택후 5년까지를 적정기간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집행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제3항에 따라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특히 EC시장의 발전과 국제적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회원국은 방송사업자들로 하여금 뉴스, 스포츠, 게임, 광고, 문자다중방송, TV쇼핑 등에 할당된 시간을 제외한 송신시간중 최소한 10% 또는 회원국의 재량으로 프로그램 예산중 최소한 10%를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유럽제작물을 위해 확보할 수 있도록 실행가능하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이를 보장한다. 이러한 비율은 방송사업자의 정보, 교육, 문화 및 오락에 관한 책임을 고려한 것으로 적절한 기준에 근거하여 점진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최근의 제작물, 즉 제작한지 5년 이내에 송신된 제작물에 적정비율을 할당하여야 한다.

제6조

1. 본항의 내용에 따라, 다음을 '유럽제작물'로 한다.
 - (a) 회원국에서 제작한 제작물
 - (b) 유럽평의회가 제정한 국경을 초월하는 TV에 관한 유럽협약에 가입한 유럽의 제3국에서 제작하고 제2항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제작물
 - (c) 그 밖의 유럽의 제3국에서 제작하고 제3항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제작물(b)와 (c)의 규정은 관련 제3국에서 차별조치의 대상이 아닌 회원국이 제작한 제작물에 조건부로 적용된다.
2. 제1항의 (a)와 (b)에 언급된 제작물이 다음의 세 조건중 하나에 적합할 경우, 제1항의 (a)와 (b)에 언급된 1개국 이상의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만든 것을 의미한다.

- (a) 제작물은 제1항의 (a)와 (b)에 언급된 1개국 이상의 국가에 위치한 1인 이상의 제작자가 만든다.
 - (b) 제작물의 제작은 제1항의 (a)와 (b)에 언급된 1개국 이상의 국가에 위치한 1인 이상의 제작자가 감독하고 실제로 관리한다.
 - (c) 제1항의 (a)와 (b)에 언급된 1개국 이상의 국가의 공동제작자들이 전체 공동제작 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이들 국가에 위치하지 아니한 1인 이상의 제작자가 공동 제작을 관리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c)에 언급된 제작물이 1개국 이상의 유럽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을 경우, 이 제작물은 EC가 시청각 분야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1개국 이상의 유럽 제3국에 위치한 제작자가 독점적으로 제작했거나 1개국 이상의 회원국에 위치한 제작자와 공동제작한 것이다.
 4. 제1항의 내용에 부합하는 유럽제작물은 아니지만 회원국과 제3국간에 체결한 공동제작 쌍무협정의 체계내에서 만들어진 제작물일 경우, EC의 공동제작자가 전체 제작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위치한 1인 이상의 제작자가 제작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는 유럽제작물로 간주한다.
 5. 제1항과 제4항의 내용에 부합하는 유럽제작물은 아니지만 1개국 이상의 회원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만든 제작물일 경우, 전체 제작 비용중 EC 공동제작자들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정도를 유럽제작물로 간주한다.

제7조

회원국은 자국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방송사업자가 영화판권 소유자와 합의한 기간 이외에는 영화작품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8조 (생략)

제9조

본장의 규정은 지역 시청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국가 방송망에 속하지 아니한 TV방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장 TV광고, 스폰서십 및 TV쇼핑

제10조

1. TV광고와 TV쇼핑은 누구나 분명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시각적 또는 청각적으로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과 뚜렷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2. 분리광고와 TV쇼핑 스팟트는 예외에 속한다.
3. 잠재의식에 작용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광고 및 TV쇼핑은 금지한다.

4. 편법광고와 편법TV쇼핑은 금지한다.

제11조

1. 광고와 TV쇼핑 스파트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삽입한다. 또한 제2항 내지 제5항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프로그램의 자연스러운 중단부분 및 지속시간,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그 가치 및 권리소유자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광고와 TV쇼핑 스파트를 프로그램 중간에 삽입할 수 있다.
2. 서로 독립된 부분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나 휴식시간이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하게 구성된 행사나 공연 프로그램에서 광고와 TV쇼핑 스파트는 오직 이 부분들 사이나 휴식시간 중에만 삽입할 수 있다.
3. 시리즈물, 연재물, 가벼운 오락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을 제외한 장편영화나 텔레비전 영화와 같은 시청각 제작물의 방송시간이 45분 이상일 경우, 광고와 TV쇼핑 스파트는 45분마다 1회 삽입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이 45분의 배수보다 적어도 20분이 초과할 경우, 광고와 TV쇼핑 스파트가 삽입되는 횟수는 늘어날 수 있다.
4.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프로그램에 광고나 TV쇼핑 스파트가 삽입될 경우, 그 프로그램에서 한 광고가 나온 후 다음 광고가 나올때까지 적어도 20분이 경과하여야 한다.
5. 종교의식을 방송할 경우, 광고와 TV쇼핑은 금지된다.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종교프로그램 및 어린이프로그램의 총 방송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 광고나 TV쇼핑은 금지된다. 만약 이러한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이 30분 이상일 때에는 본조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2조

TV광고와 TV쇼핑의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 (a)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내용
- (b) 인종, 성, 국적에 대한 차별을 담고 있는 내용
- (c)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신념을 공격하는 내용
- (d) 건강이나 안전에 해가 되는 행동을 부추기는 내용
- (e) 환경보호에 해가 되는 행동을 부추기는 내용

제13조

시가나 그 밖의 담배관련 제품에 관한 모든 형태의 TV광고와 TV쇼핑은 금지한다.

제14조

1. 방송사업자를 자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에 두고 있는 회원국에서 처방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의약품 및 의료행위에 대한 TV광고는 금지한다.
2. 의료행위에 대한 TV쇼핑 뿐만 아니라 의약품관련 법률, 명령, 행정처분으로 제정된 규정

과 유사한 각료이사회 1965년 1월 26일 지령(65/65/EEC)의 내용에 따라 시장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TV쇼핑은 금지한다.

제15조

알코올음료에 대한 TV광고와 TV쇼핑은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 (a) 특별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알코올음료를 마시는 미성년자를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b) 알코올을 육체적 행동 또는 운전과 연결시켜서도 아니된다.
- (c) 사회적 성공이나 성적인 흥분에 알코올이 도움이 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d) 알코올이 치료제 역할을 한다거나 흥분제, 진정제 또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e) 무절제한 알코올 소비를 부추기거나 금주나 절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f) 높은 알코올 함유량을 음료의 장점으로 강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1. TV광고는 미성년자에게 도덕적 또는 육체적으로 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하여 TV광고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 (a) 미성년자의 미숙함이나 쉽게 믿어버리는 속성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직접적으로 권해서는 아니된다.
 - (b) 미성년자가 부모나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여 광고중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직접적으로 부추겨서는 아니된다.
 - (c) 미성년자가 부모나 교사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신뢰감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d) 위험한 상황에 처한 미성년자를 무분별하게 보여주어서는 아니된다.
2. TV쇼핑은 제1항의 조건에 따라야 하며, 또한 미성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또는 임대 계약을 하도록 권해서도 아니된다.

제17조

1. 스폰서를 받은 TV프로그램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a) 스폰서는 어떤 경우에도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사업자의 의무나 편집상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정도로 자신이 스폰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편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b) 프로그램이 스폰서를 받았을 경우,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 또는 시작과 끝중 한 부분에 스폰서의 이름과 로고 또는 이중 하나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 (c) 스폰서를 받은 프로그램에서 스폰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특별히 홍보하여 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임대를 부추겨서는 아니된다.

2. 시가나 그 밖의 담배관련 제품의 제조나 판매를 주로 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TV프로그램을 스폰서할 수 없다.
3. 의약품의 제조, 판매 및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스폰서한 TV프로그램에서는 이들의 명칭이나 이미지를 선전할 수 있으나 방송사업자를 자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에 두고 있는 회원국에서 처방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의약품이나 의료행위를 선전할 수는 없다.
4.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은 스폰서를 금지한다.

제18조

1. 제18a조의 내용에 따라 TV쇼핑을 제외한 TV쇼핑 스팩트, 스팩트 광고 및 그 밖의 다른 형태의 광고 방송시간은 1일 방송시간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스팩트 광고의 방송시간은 하루 방송시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2. 1시간중 스팩트 광고와 TV쇼핑 스팩트는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본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은 광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방송사업자가 자사의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에서 직접 응용하여 부수적으로 만든 제작물에 관하여 내보내는 안내
 - 무료로 방송되는 공공발표문과 자선호소문

제18a조

1. 전적으로 TV쇼핑만을 하지 아니한 채널에서 방송하는 TV쇼핑에서는 적어도 15분동안 광고를 삽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TV쇼핑의 하루 최대 방송횟수는 8회이다. 1일 총 방송시간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TV쇼핑은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수단을 통하여 다른 방송들과 뚜렷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제19조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 제6장 및 제6a장을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TV쇼핑 전문채널에 적용한다. 이 채널에서 방송되는 광고는 제18조제1항에 정해진 1일 제한시간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9a조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6a장 및 제7장을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전적으로 자사홍보만을 하는 채널에 적용한다. 이 채널에서 방송되는 다른 형태의 광고는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야 한다. 본규정은 특히 제26조에 따라 재검토된다.

제20조

회원국은 제3조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EC규약을 참작하여 자국의 영토만을 대상으로 하여 1개국 이상의 다른 회원국 국민들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신이 불가능한 방송에 대하여

제11조제2항 내지 제5항 이외의 조건들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5장 미성년자 보호와 공공질서

제22조

1. 회원국은 자국 관할권하의 방송사업자들이 특히 포르노물이나 불필요한 폭력장면이 포함된 프로그램과 같이 미성년자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방송시간대의 조정이나 다른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방송지역에 거주하는 미성년자가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방송을 보거나 들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이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모든 프로그램에도 확대 적용된다.
3. 이러한 프로그램이 코드화되지 아니한 형태로 방송될 경우, 회원국은 프로그램 방송전에 음성으로 경고방송을 하거나 방송시간동안 시각적인 표시를 내보내야 한다.

제22a조

회원국은 인종, 성, 종교, 국적 등에 근거하여 반감을 자극하는 방송을 금지한다.

제22b조

1. 제26조에 규정된 보고서에서 집행위원회는 본장의 적용에 관하여 특별히 중요성을 부여한다.
2. 집행위원회는 본지령이 공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회원국의 해당 기관과 연계하여 미성년자가 시청할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나 보호자의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의 장단점을 조사하도록 한다. 이 조사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부모나 보호자가 특정 프로그램을 여과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새로운 유형의 TV
 - 적절한 등급제도의 제정
 - 가족의 TV시청방침 마련과 그 밖의 교육적이고 기민한 조치에 대한 장려
 - 방송사업자, 프로듀서, 교육자, 미디어 전문가, 관련 단체 등과 같은 이해 당사자의 견해 뿐만 아니라 유럽과 그 밖의 지역에서 이 분야에 관하여 얻은 경험

제6장 반론권

제23조

1. 회원국이 자국의 민법, 행정법, 형법하에서 채택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TV프로그램에 사실이 잘못 보도됨으로써 자신의 적법한 이익, 특히 명성이나 명예가 침해되었을 경우, 국적에 관계없이 반론권이나 이에 상응하는 구제책을 갖게 된다. 회원국은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 반론권이나 이에 상응하는 구제책을 실제적으로 행사

-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반론은 요구사항을 구체화한 후 적정시간내에, 그리고 이 요구를 받은 방송에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2. 반론권이나 이에 상응하는 구제책은 회원국 관할권하의 모든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3. 회원국은 반론권이나 이에 상응하는 구제책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특히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다른 회원국에 거주하거나 위치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 반론권이나 이에 상응하는 구제책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한다.
 4. 제1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정당하지 않거나, 처벌받을 만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거나, 방송사업자가 민사소송에 연루될 수 있거나, 공중 규범을 위반한 반론일 경우에는 반론권이나 이에 상응하는 구제책에 대한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5. 반론권이나 이에 상응하는 구제책의 행사에 관한 분쟁을 심사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에 마련하여야 한다.

제6a장 교섭위원회

제23a조

1. 집행위원회의 후원으로 교섭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교섭위원회는 회원국 해당 관청의 대표자들로 구성한다. 집행위원회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발안이나 회원국 대표단의 요구로 회의를 개최한다.
2. 교섭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본지령, 특히 제2조의 적용시 발생하는 실질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의견의 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대한 정기적인 심의를 통하여 본지령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도록 돕는다.
 - (b) 자체적으로 발안한 의견이나 회원국이 본지령의 규정을 적용하는 문제에 관하여 집행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요청받았을 때 이를 전달한다.
 - (c) 제4조제3항에 따라 회원국이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와 이 문제에 대한 방법론, 제25a조에 언급된 독자적 연구에 대한 참고사항, 이러한 연구 제출물에 대한 평가 및 연구 자체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포럼을 개최한다.
 - (d) 집행위원회가 방송기관의 대표자, 프로듀서, 소비자, 제조업자, 서비스업자, 노동조합 및 아이디어 제공단체와 함께 개최한 정기 심의회에서 나온 결과물을 토론한다.
 - (e) 기술분야의 개발과 아울러 집행위원회의 시청각 정책을 고려한 TV방송에 대한 규제활동의 상황과 진전상황에 대하여 회원국과 집행위원회간의 정보교환을 활성화한다.
 - (f) 의견교환이 유용한 부문에서 거둔 성과를 검토한다.

제7장 종결규정

제24조

본지령이 조정하지 아니한 분야에서는 본지령이 텔레커뮤니케이션 또는 방송에 관한 여러 현행 협약에 근거한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5조

1. 회원국은 1991년 10월 3일까지 본지령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법률, 명령 및 행정처분을 실행한다. 그리고 이를 곧 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2. 회원국은 본지령이 다루는 분야에서 채택한 국내 법률의 주요 규정을 집행위원회에 알린다.

제25a조

제4조제4항에 규정된 추가 검토는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EC와 국가차원에서 공동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치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독자적 연구를 참작하도록 한다.

제26조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2년에 한번씩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 각료이사회 및 경제사회위원회에 개정된 본지령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요시 특히 최근의 기술개발을 고려하여 TV방송분야의 발전에 맞추어 본지령을 보완한 추가제안서를 마련한다.

제27조

1. 회원국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본지령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법률, 명령 및 행정처분을 실행한다. 그리고 이를 곧 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회원국은 이와 같은 조치를 채택할 경우, 본지령에 관한 참고조항을 이 조치에 포함시키거나 공식적으로 공표할 때 참고조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참고조항을 만드는 방법은 회원국이 결정한다.
2. 회원국은 본지령이 다루는 분야에서 채택한 국내 법률의 주요 규정을 집행위원회에 알린다.

제28조

본지령은 EC공보에 공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9조

본지령을 모든 회원국에 전송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경을 넘는 위성방송을 위한 지침

(Guidelines for Transnational Satellite Broadcasting in the Asia-Pacific Region(1994.11, ABU))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많은 위성TV방송이 실시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유럽과 미국의 프로그램을 방송해 왔으나 지역 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방송과 자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방송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방송사업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국가간 뉴스와 프로그램의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가져오며 시청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줄 것이다. 이로 인하여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이 촉진되고 시청자 주권과 국가간 이해가 증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가치관이나 풍습, 문화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사실 어떤 지역에서는 위성TV를 문화 침략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방송연맹(Asia-Pacific Broadcasting Union: ABU)에서는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위성 방송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일련의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통칙

아시아지역으로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방송사업자는 이 지역의 가치관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유념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치관과 문화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수용가능한 프로그램과 배제할 프로그램을 정확히 정의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방송사업자는 관련국과 그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전통적 가치관에 대하여 가능한 한, 많이 알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종교

이 지역의 다양성은 또한 종교의 다양성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종교문제는 주의해서 세심하게 다루어야 한다. 특정 종교를 비난하거나 신앙심을 문제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특정 국가에서 종교적이거나 사교적인 열의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민족의 다양성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많은 민족이 있으며,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다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사업자는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여 특정 민족이나 국민을 경멸하는 말이나 표현을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성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는 성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매우 점잖고 품위있게 다루어야 한다. 외설적이거나 무례한 언어와 마찬가지로 남녀의 나체에 관해서도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범죄와 폭력

1. 범죄행위를 호감있게 혹은 매력적으로 묘사하거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를 묵과하도록 조장하는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2. 마약은 이 지역 전체에서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식으로든 마약의 사용이나 거래를 용인하거나 이를 호감있게 또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노골적으로 잔인한 행위를 묘사하거나 지나치게 폭력적인 장면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은 주의해서 다루어야 하며, 특별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만화나 기타 프로그램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뉴스

뉴스는 정확해야 하며,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게 사실을 보도하여야 한다.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를 다룰 때는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여야 한다.

법률적 고려사항

이 지역 국가들의 미디어관련 법률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광고

위의 지침은 일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광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국내 미디어에서 광고의 제한조건을 따라야 하는 제품을 다룰 때는 주의하여야 한다.

과장된 주장을 하거나 미신을 이용한 광고는 피해야 한다.

발음

지명, 성명, 사건명을 잘못 발음할 경우 해당 지역 사람들의 감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발음하도록 주의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위성TV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지침

(Guideline on the Program Contents of International Satellite Television Broadcasting in the Asia-Pacific Region(1995.3, Asia-Pacific Meeting on International Satellite TV-Broadcasting))

본지침은 최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새로운 국제위성TV방송의 발전에 부응하여 1995년 3월 도쿄에서 마련되었다. 이 새로운 방송의 서비스 지역과 채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본지침은 각 지역의 다양한 사회·정치·문화·전통적 가치를 고려하여 국제 위성TV방송의 발전과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장 총 칙

1-1. 지침의 목표

본지침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위성TV방송을 수신하는 나라의 사회·정치·문화·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방송을 통한 정보교류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본지침은 문건 본문에 명시된 지시사항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광범위한 체계로 해석되어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본지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국제위성TV방송'은 방송위성이나 통신위성과 같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화상이나 소리를 송신하는 방송서비스를 의미한다.

'송신국'은 관련 국제위성TV방송의 지구국이 위치한 국가를 의미한다.

'수신국'은 관련 국제위성TV방송을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물리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1-3. 송신국의 의무

송신국은 최선을 다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일반원칙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국제위성TV방송은 최선을 다해 본지침의 제2장에 명시된 일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타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송신되는 국제위성TV방송도 제2장에 명시된 일반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1-5.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의 원칙

국제위성TV방송은 민족간의 상호인식과 상호이해를 증진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원칙을 항상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6. 국제위성TV방송 수신에 관한 국가규제

국가주권을 인정하여 본지침은 수신국의 법령 제정권을 존중한다.

1-7. 지적재산권

국제위성TV방송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1-8. 정부간 협의

송신국에서 수신국으로 보내는 방송이 본지침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간주할 경우, 수신국은 본지침을 확실히 준수해 줄 것을 송신국에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송신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 그와 같은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제2장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일반기준

2-1. 수신국의 주권과 국가안보 및 민감한 사안 보호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위성TV방송을 공급하는 방송사업자(이하 관련 방송사업자)는 수신국의 주권과 국가안보 및 민감한 사안을 보호하여야 한다.

2-2. 수신지역의 사회·정치·문화·전통적 가치관 존중

관련 방송사업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사회·정치·문화·전통적 가치관을 존중하여야 한다.

2-3. 다양한 의견과 민족성 존중

관련 방송사업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민족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4. 종교 존중

관련 방송사업자는 종교문제를 주의하여 세심하게 다루어야 한다.

2-5. 비도덕적인 소재나 과도한 폭력물 금지

비도덕적인 내용을 소재로 하거나 근거없이 과도한 폭력장면을 담은 프로그램은 방송을 금지한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품위를 손상시키는 성문제는 피한다.

- 외설적인 언어의 사용을 피한다.
- 범죄행위를 매력적으로 묘사하거나 이를 묵과하는 내용 또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조장하는 내용은 금지한다.
- 마약의 사용을 용인하거나 이를 거래하는 장면을 담은 프로그램 또는 그러한 행위를 매력적으로 묘사하는 프로그램은 금지한다.
- 지나치게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 프로그램은 금지한다.

2-6. 어린이 보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주의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은 본장 2-5에 명시된 제한조건들을 유념하여 어린이의 순진함, 미숙함, 쉽게 믿어버리는 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7. 뉴스

뉴스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편파적이지 않아야 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송신되는 프로그램은 반론권이나 이에 상응하는 구제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2-8.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기준

관련 방송사업자는 본지침의 일반원칙에 맞추어 프로그램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행정법제분석 98-2
衛星放送法제의 課題와 立法方向

1998년 7월 25일 印刷

1998년 7월 30일 發行

發行人 徐 承 完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東 亞 商 社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 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a0190호

값 7,500 원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89-8323-077-0 93360

